관리 번호	자연재난-1

「풍수해(태풍·호우·대설)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22. 4.

Blue 관심

Yellow 주의

Orange 경계

Red 심각

여수광양항만공사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 및「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풍수해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및「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근거, 풍수해(태풍, 호우 및 대설) 재난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우리 공사가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재난이 발생하면 가급적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적절히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 제·개정 이력 】

일 자 (승인)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유	담당자	협의기관
’13.01.29.	· 제정	· 풍수해·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매뉴얼 제정	이석훈	국토해양부
’13.12.02.	·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및 국내외 자연재해 피해사례 추가 등	· 해양수산부 실무매뉴얼 개정내용 반영 등	이석훈	해양수산부
’14.06.20.	· 용어정의, 위기경보수분 및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비상연락망 정비 등	· 해양수산부 실무매뉴얼 개정내용 반영 등	이병홍	해양수산부
’14.11.11.	· 언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및 풍수해 국민행동요령 반영, 선박대피협의회 명단 변경 등	· 해양수산부 실무매뉴얼 개정내용 반영 등	이병홍	해양수산부
’15.05.19.	· 정부부처 명칭변경, 위기관리 종합체계도 및 언론홍보 매뉴얼 현행화, 선박대피협의회 명단 변경 등	· 해양수산부 실무매뉴얼 개정내용 반영 등	고영찬	해양수산부
’16.12.16.	· 재난유형별 관리번호 및 제·개정 이력 추가, 용어 및 문구수정,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 국민안전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계획 및 해양수산부 실무매뉴얼 개정내용 반영 등	이병홍	해양수산부
’17.10.17.	·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 및 연락망 현행화	· 정부조직 개편사항 등을 반영한 재정비	고영찬	해양수산부
’18.02.21.	· 언론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내용 수정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해양수산부 실무매뉴얼 개정 및 비상연락망 변경	우긍제	해양수산부
’18.04.09.	· 재난방송관련 위기상황 전파체계 및 해양분야 재난대비 행동요령 등	· 해양수산부 및 행정안전부 보완요구사항 조치	우긍제	해양수산부
’18.11.06.	· 호우특보 발표기준 및 위기관리체계 명칭 변경, 비상연락망 현행화	· 해양수산부 실무매뉴얼 개정내용 반영 등	우긍제	해양수산부
’19.04.11.	·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재난방송관련 위기상황 전파체계 및 국민행동요령 등	· 우리 공사 조직개편 등을 반영한 재정비 · 해양수산부 실무매뉴얼 개정내용 반영 등	고훈정 이슬아	해양수산부
‘19.06.28.	· 선박대피협의회 운영표준(안) 반영 등	· 해양수산부 실무매뉴얼 개정내용 반영	김종우 이슬아	해양수산부
‘19.09.30.	·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우리 공사 조직개편 등을 반영한 재정비	박정철 황수범	해양수산부
‘20.03.06.	· 비상연락망 현행화	· 비상연락망 현행화	박정철 황수범	해양수산부
‘20.05.27.	· 유관기관 명칭 변경, 표준문안 변경,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 해양수산부 실무매뉴얼 개정내용 반영 등	박정철 황수범 장영진	해양수산부
‘20.06.11.	· 위기 경보수준, 정기보고시간, 비상연락망 현행화	· 해양수산부 조건부 승인에 따른 보완사항 반영	박정철 황수범 장영진	해양수산부
‘20.12.30.	· 조직도 현행화 및 부록(안전취약계층)추가	· 조직도 현행화	황수범 장영진	해양수산부
‘21.04.19.	· 조직도 현행화	· 조직도 현행화	황수범 장영진	해양수산부

일 자 (승인)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유	담당자	협의기관
‘22.01.28.	· 어선의 출항 통제 관련사항 삭제, 기관 명칭 변경,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 해양수산부 실무매뉴얼 개정내용 반영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나승주 장영진	해양수산부
‘22.04.06.	· 조직도 현행화	· 조직도 현행화	나승주 한재혁	해양수산부

- 목 차 -

Ⅰ. 일반사항 ····· 1

1. 목 적 ····· 2

2. 적용범위 ····· 2

3. 관련 법규 ····· 2

4. 용어 정의 ····· 4

Ⅱ. 위기유형과 관리체계 ····· 6

1. 위기 유형 ····· 7
2. 전개 양상 ····· 8
3. 위기관리 체계 ····· 10
가. 종합체계도 ····· 10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 11
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위기관리 체계 ····· 13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 17

1. 목 표 ····· 18

2. 방침 ····· 18

3.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 / 고려 요소 ····· 19
가. 위기대응 지침 ····· 19
나. 위기 판단 / 고려 요소 ····· 20

4. 위기징후 감시 ····· 21
가. 위기징후 목록 ····· 21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 ····· 21

5. 위기 평가 ····· 23

6.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 24
가. 위기경보 수준 ····· 24
나. 위기경보 절차 ····· 26

7. 비상근무체계(여수광양항만공사) ····· 28
가. 구성원별 임무 ····· 28
나. 정부기구 비상단계별 근무편성 기준 ····· 28

Ⅳ. 위기관리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태풍 · 호우 · 대설) ··· 30

1.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내용 및 절차 ····· 31
가. 예방대책 ····· 31
나. 대비대책 ····· 34
다. 대응대책 ····· 44
라. 복구대책 ····· 45

Ⅴ.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 47

1. 태풍 내습 ····· 48
가. 상황 ····· 48
나. 조치사항 ····· 49

2. 집중호우 발생 ····· 53
가. 상황 ····· 53
나. 조치사항 및 절차 ····· 55

3. 대설 발생 ····· 59
가. 상황 ····· 59
나. 조치사항 ····· 60

Ⅵ. 기관대응수칙 ····· 64

1.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 66
2. 해양수산부 풍수해 대응 프로세스 ····· 67
3. 여수광양항만공사 풍수해 대응 주요 프로세스 ····· 68
4. 여수광양항만공사 풍수해 대응 주요 협업기능 ····· 69
5. 관계기관 주요 임무 ····· 70

Ⅶ. 부록 ····· 71

1. 과거 피해사례 ····· 72
2. 재난방송 관련 위기상황 전파체계 ····· 76
3. 영상회의 시스템 ····· 82
4. 기상특보 발표기준 ····· 84
5. C/C별 작업허용 풍속기준 ····· 85
6. 풍수해 대비 단계별 체크리스트 ····· 86

7. 언론홍보 위기관리 커뮤니테이션 매뉴얼 ····· 92
8.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 공관 상황 전달 체계 ····· 113
9. 국민행동요령-(태풍・호우・대설) ····· 115
10. 해양분야 재난대비 대응요령 ····· 142
11. 비상대응 관련 각종 서식 ····· 150
12. 여수, 광양항 피박지 현황도 ····· 154
13.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비상연락체계 ····· 155
14. 비상연락망 ····· 156
15. 선박대피 협의회 위원 명단 ····· 160
16. 관계기관 및 어업단체 비상연락망 ····· 161
17. 기상정보 수집관련 홈페이지 ····· 165
18. 중앙수습지원단의 표준편제와 임무 ····· 166
19. PORT-MIS 매뉴얼(재박선박현황 파악) ····· 166
20. 지방청 선박대피협의회 운영표준(안) ····· 167
21. 재난현장 대피시 안전취약계층 특성별 대피 고려사항 ···· 175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 및「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풍수해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해양수산부「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근거, 풍수해(태풍, 호우 및 대설) 재난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 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재난이 발생하면 가급적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적절히 경보 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Ⅰ. 일반사항

I. 일반사항

1. 목적

이 매뉴얼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및 「풍수해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풍수해(태풍·호우·대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근거로 태풍, 호우 및 대설로 인한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및 대응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자 함.

2. 적용 범위

가. 대상

태풍, 호우, 대설 재난안전 위기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되는 본부 각 부서,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나. 상황

태풍, 호우, 대설로 인해 선박, 시설물 등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 태풍・풍랑 등에 따른 해일을 제외한 폭풍・천문조・저기압 등에 따른 해일은 「**조수재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른다.

3. 관련 법규

가.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 행정안전부「풍수해 재난」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해양수산부「풍수해 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나.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항만법, 해운법, 어촌어항법, 수산업법, 어선법, 어선안전조업법 등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 기상법

○ 재해구호법

다. 관련 규정, 지침 등

○ 예보업무규정(기상청 훈령)

○ 방재기상운영규정(기상청 훈령)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 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4. 용어 정의

구 분	내 용
국가위기	국가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위기관리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재난관리 책임기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의2)에 따라 해양수산 관련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선급
유관기관	해당 재난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실무기관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및 단체
위 기 경 보 수 준	① 관심(Blue) :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호우·대설이 발생한 상태 ② 주의(Yellow) : 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③ 경계(Orange) : 징후 활동이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 ④ 심각(Red) : 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위기발생이 확실한 상태
재 난 관 리 단 계	① 예방 :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대비 :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③ 대응 : 위기 발생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 발생 또는 위기의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④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

구 분		내 용
비상상황		○ 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가 있어 일상적 대응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나 특별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 ○ 진행양상과 대처내용에 따라 결과수습형, 완만진행형, 순간증폭형으로 구분
결과수습형		○ 위기상황 자체가 이미 대규모 피해로 발생한 유형
완만진행형		○ 상황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심각성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유형
순간증폭형		○ 발생 초기에는 저강도 수준이었으나,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급변하면서 중대 재난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유형
태 풍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인 것
기상특보	태풍주의보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경보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 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	3시간 강우량이 6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	3시간 강우량이 9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이상 예상될 때
	대설주의보	24시간 신적설이 5㎝이상 예상될 때
	대설경보	24시간 신적설이 20㎝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이상 예상될 때

Ⅱ. 위기 유형과 관리 체계

Ⅱ. 위기 유형과 관리 체계

1. 위기 유형

유 형	형 태	비 고
태 풍 강 풍	o 벼 등 농작물 쓰러짐, 사과 등 과일 낙과 o 비닐 하우스 등 농업시설 파손	농림축산 식 품 부
	o 도로, 하천 등 주요 시설물 파괴 o 항공기·철도·지하철 운행중단	국토교통부 (지자체)
	o 댐 관련 주요 시설물 파괴	환경부 (지자체)
	o 선박의 직·간접 피해 o 항만·어항시설 및 공사현장 피해 o 연안지역 침식피해 및 해상 교통두절 등 o 수산양식시설(생물) 및 어망·어구 등 피해	해양수산부
	o 대규모 정전사태	산업통상 자 원 부
호 우	o 농경지 유실·매몰, 저수지 등 수리시설 파손 o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침수 및 파손 o 벼 등 농작물 침수, 가축 폐사	농림축산 식품부
	o 어항기능 약화 : 항내 토사 매몰	해양수산부
	o 침수, 범람, 산사태(토석류 포함), 시설물 파괴 o 교통두절 - 인원 및 물자 수송 곤란 o 항공기·철도·지하철 운행중단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o 하수도, 댐 관련 범람·침수, 시설물 파괴	환경부 (지자체)
	o 대규모 정전사태	산업통상 자 원 부
폭풍 해일	o 방조제 등 파손, 농작물 염해 피해	농림축산 식 품 부
	o 수산양식시설(생물) 및 어망·어구 등 피해 o 어항시설 피해 o 침수, 범람에 의한 해양수산시설물 피해 o 선박의 직·간접 피해 : 침몰·파손, 기름 유출에 의한 피해 o 항만시설 피해 등	해양수산부
대설	o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 파손	농림축산 식품부
	o 수산 증·양식시설 및 어망·어구 등 피해	해양수산부

2. 전개 양상

가. 태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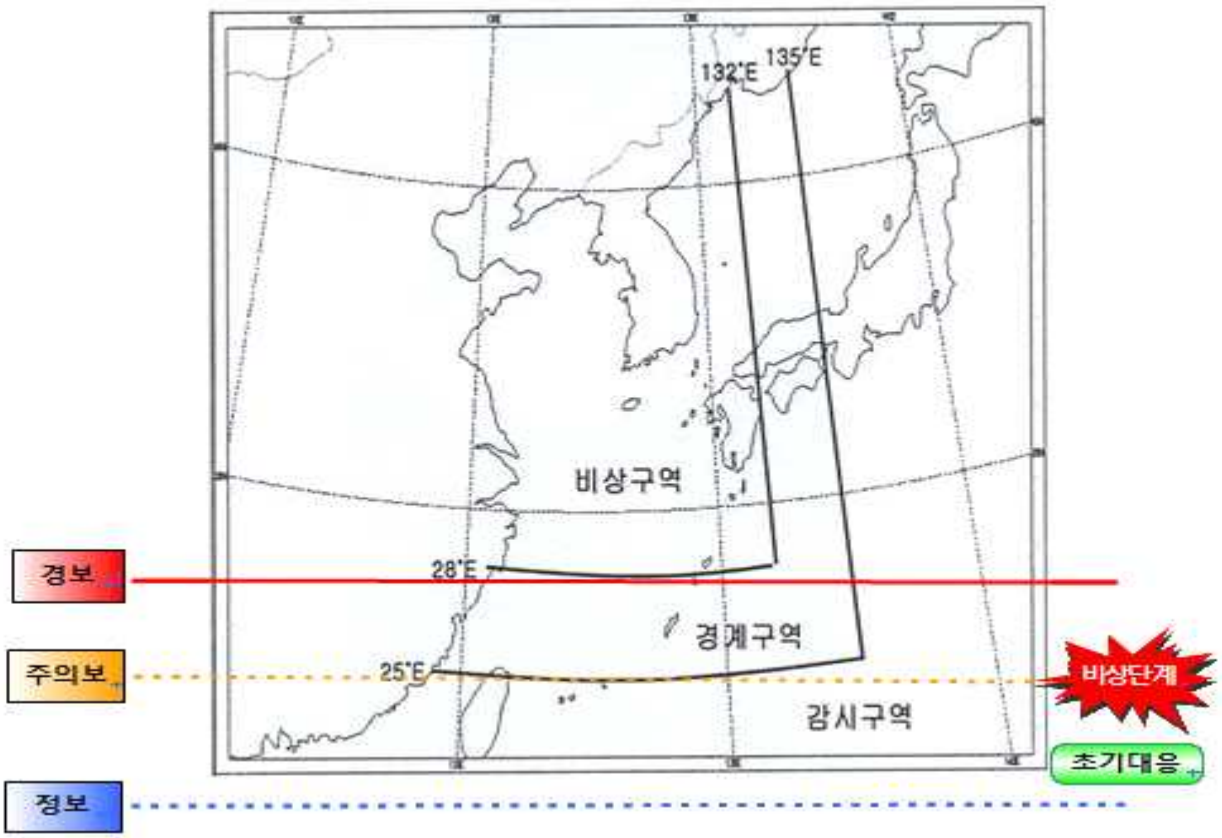

단 계 별	기상상황	태풍위치	태풍구역
준비단계	태풍정보	~25 N, 135 E~	감시구역
	태풍주의보	25.0 N, 135.0 E	경계구역
비상단계	태풍경보	28.0 N, 132.0 E	비상구역

나. 호우 및 대설

태풍과 달리 호우 및 대설은 전국적 또는 국지적으로 발생/소멸되는 전개양상을 가지고 있어 기상특보 발표기준(주의보/경보)을 통해 재난전개양상을 주시해야 함

종류	주의보	경보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mm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3시간 강우량이 90mm이상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 다만, 산지는 24시간 30cm이상

3. 위기관리 체계

가. 종합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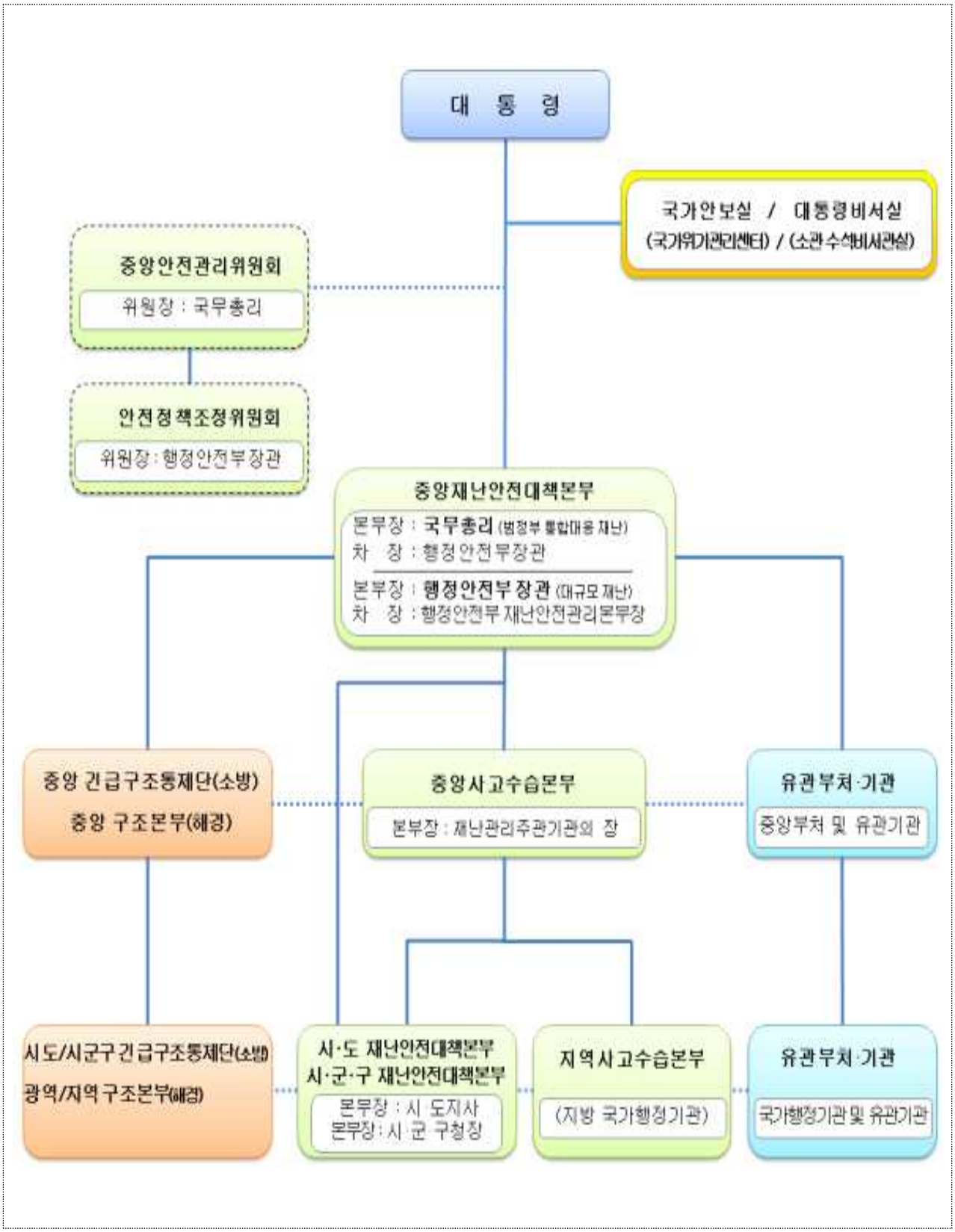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구 분	임무 및 역할
국 가 안 보 실 (국가위기관리센터)	○ 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상황 총괄·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 통 령 비 서 실 (소관 비서관실)	○ 재난 분야별 정책 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
중 앙 안 전 관 리 위 원 회	○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
중 앙 재 난 안 전 대 책 본 부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 ○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 ○ 재난분야 재난징후 목록 및 상황정보 종합·관리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건의 ○ 재난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 ○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필요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운영을 권고할 수 있음 ○ 주관기관 요청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수습지원단 파견 조치 등(중대본 미 구성 시 행안부장관이 파견) ○ 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협업, 지원 및 총괄.조정 등
수 습 지 원 단	○ 지역대책본부장 등 재난 발생지역의 책임자에 대하여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권고 또는 조언 ○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 발생의 원인, 행정적·재정적 조치사항 및 진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

구 분	임무 및 역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장)	○ 지역재난상황 총괄 및 사고수습체계 구축 ○ 재난현장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 지원본부 설치·운영(시·군·구 부단체장) ○ 지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과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및 업무협조 요청 ○ 생활안정지원, 응급복구, 의료·교통, 물자지원 등(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 ○ 지역사고수습본부와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사고수습 ○ 재난 수습 총괄 조정 및 언론 대응 ○ 피해상황 조사 및 종합상황 관리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안전취약계층 대책 포함) ○ 재난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지휘 ○ 피해민 지원 대책 강구 등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소방청장)	○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긴급구조 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 담당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 기관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담당
중앙구조본부 (해양경찰청장)	○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수난구호 협력기관과 수난 구호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 조정과 지휘·통제 ○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 등
광역구조본부 (지방해양경찰청장)	○ 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 협력기관과 수난 구호 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 조정과 수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 ○ 관할 해역의 수난구호활동과 관련하여 타국 구조조정센터(RCC)간 국제적인 협력 등
지역구조본부 (해양경찰서장)	○ 관할 해역 내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 활동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 및 권한을 가지고 수색구조세력의 효율적 운영 ○ 해상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조대 편성 및 운영 ○ 해상 응급환자 처치 및 의료기관 긴급이송을 위한 구급대 편성·운영

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위기관리 체계

(1)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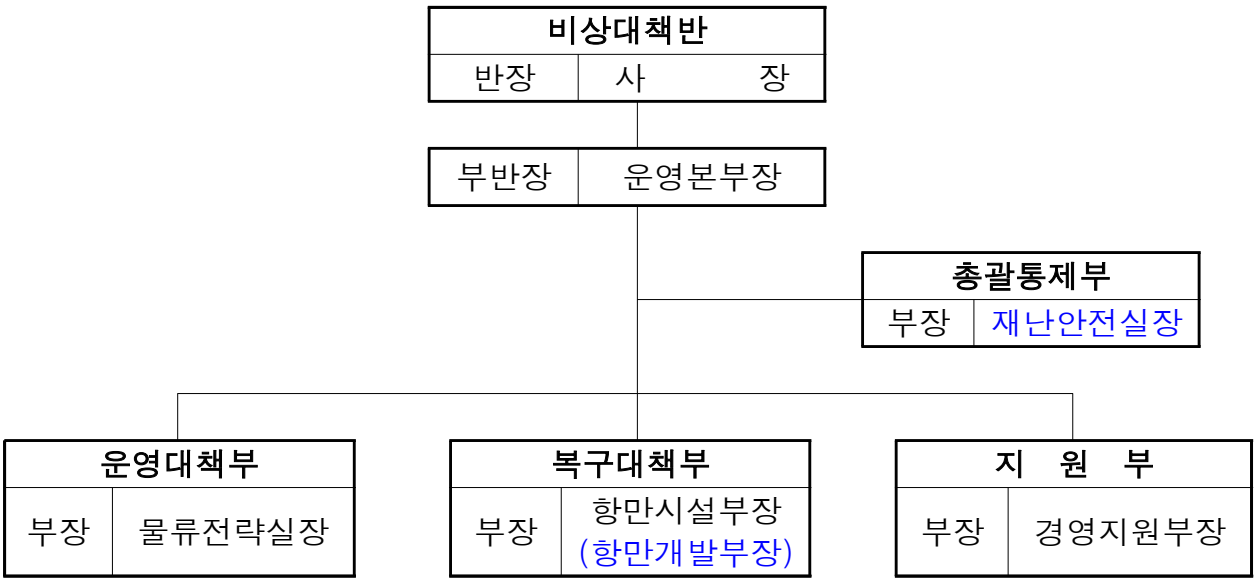

1) 여수지사는 자체적으로 실시
2) 평시 복구대책부장은 항만시설부장으로 하되 시설물의 피해유형(기능시설 및 부두)에 따라 항만개발부장 겸직 가능

(2) 구성 및 기능

○ 구 성

-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반은 총괄통제부와 3개의 실무반(운영대책부, 복구대책부, 지원부)으로 구성
  - · 총괄통제부 : 재난안전실
  - · 운영대책부 : 물류전략실, 물류단지부, 여수지사
  - · 복구대책부 : 항만시설부, 항만개발부, 뉴딜사업실, 마케팅부, 신성장사업실
  - · 지 원 부 : 경영지원부, 기획조정실, 재무회계부, ESG경영실, 해양관광활성화추진단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요청 시 공사 직원 파견근무 실시

○ 기 능

- 재난 상황 및 수습 관리 총괄·조정
-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터미널 운영사 및 유관기관장에게 제반조치 요청 등

(3) 비상대책반 주요임무

구 분	담 당 업 무
반장 부반장	❍ 비상대책반 운영 총괄
총괄통제부	❍ 종합상황 파악 및 사고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 총괄 ❍ 재난업무에 대한 대응체계 확립, 근무요령, 근무반 편성 ❍ 각 반별 추진상황 취합 및 각종 정보(기상정보 등) 정리 ❍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 보고사항 및 협조사항 조치 ❍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항만시설 재난예방 및 재난상황 파악 보고 및 긴급조치 ❍ 비상대책반 운영 시 통신장비(전화기, 팩스 등) 정상 작동여부 확인 및 관계기관(여수청 등)과 연락체계 유지 ❍ 평시 자연재난 예방업무 총괄
운영대책부	❍ 항만운영시설(여객터미널 포함) 및 화물, 항내 재박선박의 재난예방 ❍ 선박대피협의회 참석 및 선박 피항 조치, 재박선박(어선포함) 현장 확인 ※ 운영대책부의 경우 재박선박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PORT-MIS 사용 가능한 반원으로 편성(붙임자료 15. PORT-MIS 매뉴얼 참조) ❍ 접안 선박의 하역작업 중단조치 및 고박작업 지시 ❍ 운영시설 및 장비 안전점검 확인 ❍ 취약시설 점검강화 및 피해조사 지원 ❍ 운영사 등 항만관련업체 상황전파 및 상황파악, 긴급조치
복구대책부	❍ 부두시설 및 공사 중인 시설에 대한 재난 예방 ❍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시공 중인 건설현장 안전점검 확인 ❍ 종합변전소 운영 및 비상전원 확보 ❍ 피해조사 및 복구대책 수립 ❍ 운영대책부 현장 확인 시 업무지원 ❍ 시공사 등 공사 관련 업체 상황전파 및 상황파악, 긴급조치
지 원 부	❍ 문서수발, 재난복구예산 및 물품 등 지원 ❍ 각 실무반 상황전파 및 기강확립 ❍ 선사 및 언론 동향파악 보고, 보도자료 배포 ❍ 운영대책부 및 복구대책부로 인력 등 업무지원 ❍ 기타 서무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책반 비상근무체계 및 운영

□ 비상근무체계

구 분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비상대책반	- 상황관리	- 비상대책반 설치 및 운영 준비	○ 비상대책반 설치 및 운영 - 총괄통제부, 운영대책부, 복구대책부, 지원부 운영	
비상근무	- 총괄통제부 상황전파	- 예비 상황근무자 명단 작성 - 각 실무반 1명 유선대기	- 총괄통제부 2명 - 운영대책부 2명 - 복구대책부 1명 - 지 원 부 1명	- 총괄통제부 2명 - 운영대책부 2명 - 복구대책부 2명 - 지 원 부 2명
근무시간	- 평시근무	- 24시간 유선대기	- 당일 08:30부터 ~ 익일 09:00까지	

□ 비상근무 운영

○ 근무시간

- 평일 : 발령 시(당일 08:30)부터 ~ 익일 09:00까지
- 휴일 : 발령 시(당일 08:30)부터 ~ 당일 21:00까지 / (당일 21:00)부터 ~ 익일 09:00까지 (2교대)

○ 근무방법

- 근무자는 1층 비상대책반(재난안전센터)에 정위치 근무

→ 비상근무자는 비상근무 시 익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며, 휴일 비상근무 시 휴일근무시간 인정 및 휴무로 반영

ex) 금요일 근무(당일 08:30 ~ 익일 09:00)시 대체휴무(1일) 반영
토요일 근무(당일 08:30 ~ 익일 09:00)시 대체휴무(2일) 반영
일요일 근무(당일 08:30 ~ 익일 09:00)시 익일 휴무 및 대체휴무(1일) 반영
* 근무 후 ERP(근무상황부) '(비상근무)대체휴무' 승인 후 시행

- 24시간 근무 후 익일 휴무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비상근무자 편성 시 총괄통제부, 실무반 구성(임무 병행 등)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음.
- 실무반은 근무요원 변경 시 사전에 근무변경 명단을 작성하여 총괄통제부에 제출 하여야 함.

○ 근무 내용

- 상황접수 및 전파
- 현장순찰 결과 파악(주간 13시, 야간 22시 1일 2회 실시)

  ※ 현장순찰시간은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 실시

- 호우 및 태풍 정기보고 (1일 5회 / 04:30, 09:00, 15:00, 18:00, 21:00)

  ※ 작성 기준시간 : 중대본 발표시간 1시간 30분 전 해수부로 보고

- 실무반의 반장이 보고사항 취합 후 총괄통제부장에 보고 후 종합보고
- 재난 상황판 정리
- 근무교대

  · 전임 근무자와 교대근무자는 30분간 합동근무 및 업무 인수인계

  · 피해상황 및 피해통계(선박, 항만시설), 응급복구 조치사항

(5) 상황보고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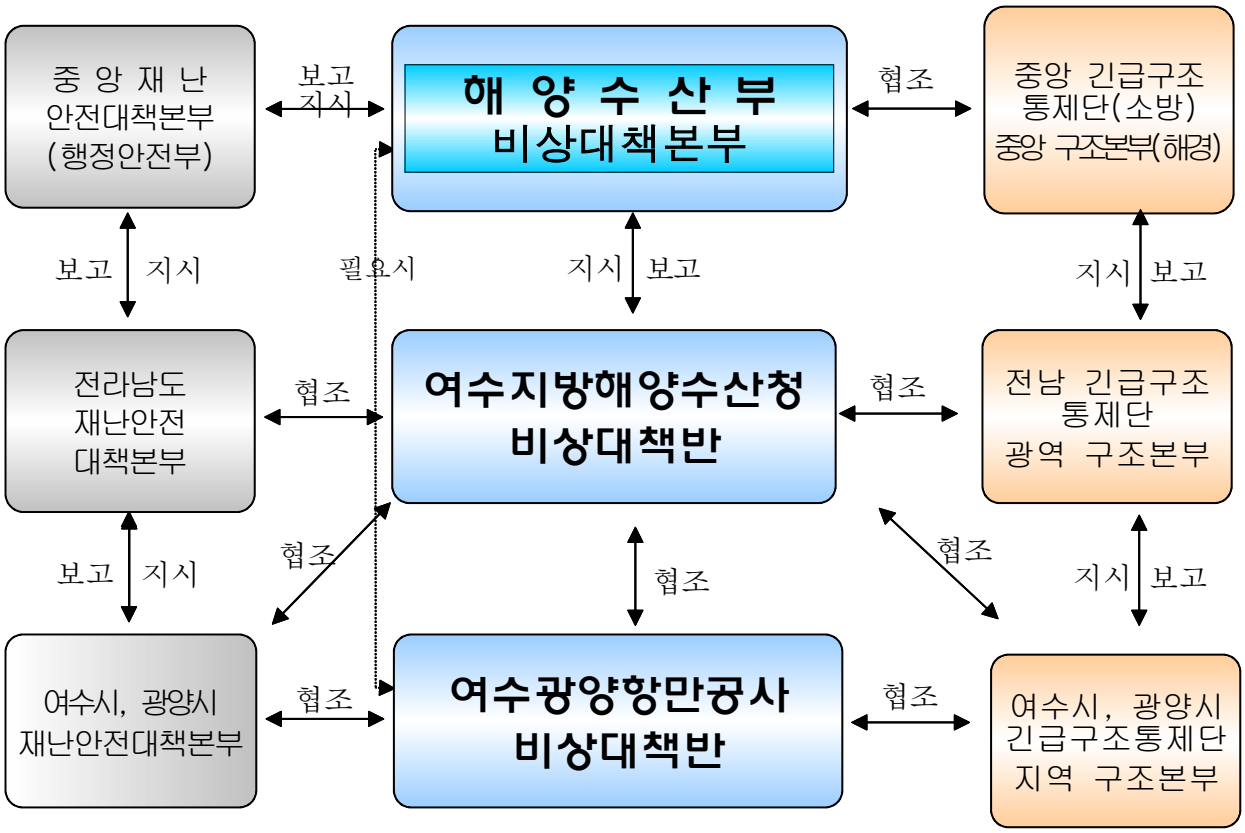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표

태풍·호우·대설 피해 경감을 위한 예방 및 대비 태세를 사전에 구축하고 태풍 등 재난발생 시 초기 응급대책 및 긴급지원체계의 신속한 가동을 통하여 피해 최소화

2. 방침

단 계		대응방침
대응단계	초동조치	• 상황파악 및 전파, 적기수습을 위한 신속보고 • 필요시 필수 상황조치요원 소집(총괄통제부) •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 등 유기적인 협조·지원
	대응조치	• 비상대책반 설치·운영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 YGPA 비상대책반 설치 • 비상대책반 각 기능반별 임무수행
처리단계		• 재난사고 현장상황 수습·처리 지원 • 필요 시 재난사고 현장에 재난합동조사반 설치 지원 - 여수광양항 시설물에 대한 복구 계획 수립
사후처리단계		• 재난피해별 복구 예산반영/배정/집행

○ 초동조치 : 태풍 및 호우/대설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이 예상될 때, 최초로 상황을 접수한 상황실 또는 해사안전관리과 및 시설별 소관부서에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조치를 하는 단계

○ 대응조치 : 태풍 및 호우/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지역 또는 전

국적으로 태풍 및 호우/대설피해가 예상되거나 경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때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이 설치되어 적극적으로 풍수해 피해에 대응하는 단계

○ 처리단계 : 사고현장상황을 수습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제반절차

○ 사후처리단계 : 피해에 대한 연속적인 복구를 실시하는 단계

3.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 / 고려요소

가. 위기대응 지침

(1) 풍수해 재난발생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자동 실행

(2) 풍수해(태풍)특보 발표에 따른 신속한 사전 대응조치 실시

○ 수방자재·구호물자의 점검 및 기동력 확보

○ 피해 및 사전조치사항 보고

○ 재해위험지역 예찰강화

○ 피해상황 보고

○ 항만시설·장비 및 항만공사장 점검

○ 여객선 등 선박 입·출항 통제 및 선박대피 조치

○ 항만하역 조기완료 및 항만 내 보관화물 반출 유도

○ 사전조치 및 응급복구상황 보고

○ 기상상황 등을 검토하여 여객선 안전운항 확보

○ 해양항만 시설 점검 등 안전조치

○ 소형선박 육상인양, 결박 등 안전조치 강화

나. 위기 판단 / 고려 요소

(1) 태풍

○ 태풍의 진로, 중심기압, 크기, 강도, 및 동반되는 풍속, 강수량

○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권

○ 태풍의 영향권 내에 위치한 항만

(2) 호우

○ 호우의 강우강도, 강수 지역의 분포, 국지 · 게릴라성 호우

○ 호우피해 예상지역의 여건, 확대가능성, 파급효과 등

○ 호우피해 예상지역의 항만

(3) 대설

○ 대설의 강도, 강수 지역의 분포, 국지·게릴라성 호우

○ 대설피해 예상지역의 여건, 확대가능성, 파급효과 등

○ 대설피해 예상지역의 항만

4. 위기징후 감시

가. 위기징후 목록

위기형태	위기징후 목록	감시수단	감시방법	위기경보	조 치
1. 태풍 한반도 내습	1.1. 빈발시기 도래 (5.15~10.15)	ㅇ기상예보	ㅇ기상예보 모니터링	관심	대책기간 운영, 모니터링 강화
	1.2. 태풍예비특보 또는 특보 발표 시	ㅇ기상예보	ㅇ기상예보 모니터링	주의~심각	대비태세 점검, 총력 대응
2. 국지적 집중 호우로 침수, 범람 발생	1.1. 빈발시기 도래 (5.15~10.15)	ㅇ기상예보	ㅇ기상예보 모니터링	관심	대책기간 운영, 모니터링 강화
	1.2. 호우예비특보 또는 특보 발표 시	ㅇ기상예보	ㅇ기상예보 모니터링	주의~심각	대비태세 점검, 총력 대응
3. 대설로 주민 고립, 교통 두절 발생	1.1. 빈발시기 도래 (11.15~다음해 3.15)	ㅇ기상예보	ㅇ기상예보 모니터링	관심	대책기간 운영, 모니터링 강화
	1.2. 대설예비특보 또는 특보 발표 시	ㅇ기상예보	ㅇ기상예보 모니터링	주의~심각	대비태세 점검, 총력 대응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

(1) 근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20조(징후감시체계 운용)

-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 위기징후 활동 상태를 지속 감시하고, 징후포착 시 징후정보 수집활동 강화

(2) 감시체계 및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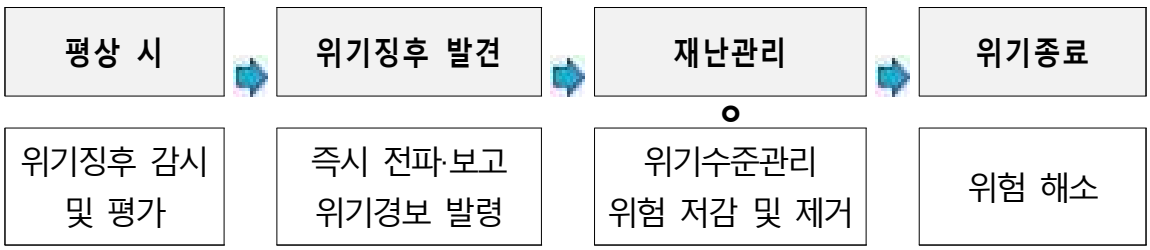

- 기상청은 기상예보, 방재기상정보시스템 등 모니터링 및 위기징후 포착 시 관계기관 신속 전파, 공유

- 소관 재난유형별 관련기관(부서)의 위기징후 감시 및 평가 종합·관리

<위기징후 감시제도 운용>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주관기관 (해수부 포함)		유관기관 (지방청 등)
○ 징후목록작성 지침 운용 · 목록 종합 관리 ○ 징후감시활동 방향 제시 · 중점감시 대상, 감시방법 등 ○ 징후감시활동 보고, 전파 · 재난상황관리 등에 활용	→ 지침 방향 제시 ← 감시 결과 목록 제출	○ 징후목록 작성 및 관리 · 새로운 징후 목록 발굴, 징후목록 최신성 유지 ○ 위기징후 감시 · 특이징후 집중 감시 ○ 주기적 징후 분석 · 평가	→ ← 징후 정보 상호 교류	○ 징후감시 ○ 위기징후에 따라 소관분야 위기관리

5. 위기 평가

가. 근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제21조(위기평가)

나. 구성 :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주관), 자연재난대응과장,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기상청 예보관 등

※ 해수부는 필요시 자체위기평가회의(상황판단회의) 개최

다. 역할 : 수집된 상황정보를 종합하여 위기수준을 평가하고, 위기경보 발령, 변경 및 해제

라. 운영 : 대면회의(회의실 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를 통해 위기수준을 평가하나 시간이 급박할 경우에는 유선, 영상회의 등의 방법을 통해 실시

< 관계기관 합동 위기평가 영상회의 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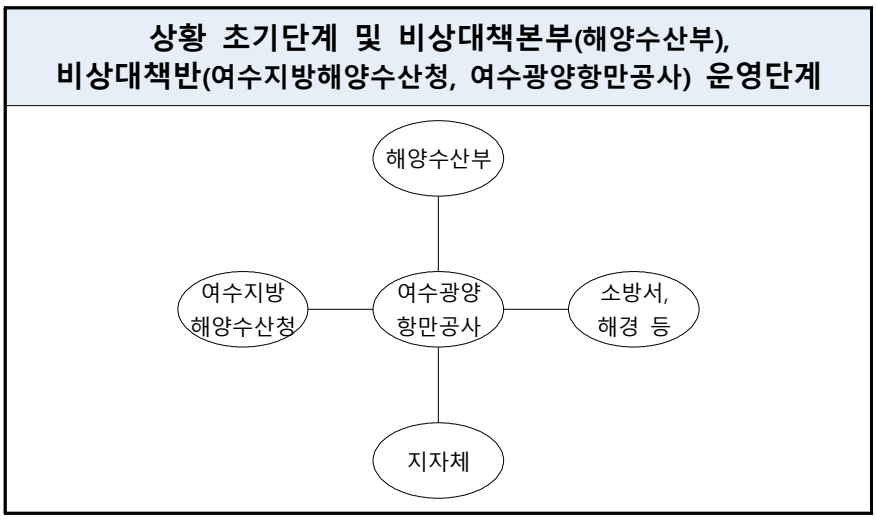

6.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

가. 위기경보 수준

◦ (행안부) 태풍 경보에 따라 비상대응조직 단계별 편성·운영

종 류	판 단 기 준	주요활동	행안부 비상단계
관심 (Blue)	◦ 태풍 빈발 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 ◦ 호우·대설 빈발 시기	징후 감시활동	초기대응 단계
주의 (Yellow)	◦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호우 예비특보 또는 호우주의보가 발표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대설 예비특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고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협조체계 가동	중대본 비상1단계
경계 (Orange)	◦ 태풍주의보가 발표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대비계획 점검	중대본 비상2단계
심각 (Red)	◦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 할 때 ◦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 할 때 ◦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 할 때	즉각 대응 태세 돌입	중대본 비상3단계

※ 태풍, 호우재난 위기경보는 상황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발령 가능

※ 단, 위 발령기준은 재난에 대한 경보 발령을 위한 기준 제시이며, 실제 경보발령은 상황의 전개속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결정함

○ (해수부 본부) 북상 태풍 이동경로에 따라 비상대응조직 단계별 편성·운영(행안부 중대본 체제와 연계)

※ 해수부는 상황판단회의(자체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대응단계 설정

구분	비상대비반 (반장:해사안전국장)	⇒	비상대책반 (반장:기획조정실장)	⇒	비상대책본부 (본부장:장관님)
운영기점	북위 22도 (대만 남단)	⇒	북위 25도 (대만 북단)	⇒	북위 28도 (오키나와 북단)
근무편성	해사안전국	⇒	5개 실시반, 1팀 (각 실국)	⇒	5개 실시반, 1팀 (각 실국)
주요임무	·비상근무태세 점검 ·비상연락체계 유지 ·매뉴얼 등 행동요령 정비		·상황판단회의 개최 ·어선대피 등 운영점검 ·소관시설 점검 관리		·상황점검회의 개최 ·항만폐쇄 등 운영점검 ·취약시설 점검 관리

○ (소속기관) 태풍 경로·영향권에 따라 대비1단계, 대비2단계, 대비3단계, 대응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근무인원 확대 및 대비태세 강화

구분	대비1단계	⇒	대비2단계	⇒	대비3단계	⇒	대응단계
운영기점	북위 22도	⇒	북위 25도	⇒	북위 28도	⇒	태풍 내습 시
근무편성	총괄부서	⇒	태풍 각 실시반	⇒	태풍 각 실시반	⇒	태풍 각 실시반 및 전 직원 비상대기
주요임무	·비상근무체계 점검 ·재난관리자원 점검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소관시설 현장점검 ·항만 비상운영 준비 ·재박선박 상황관리		·취약시설 집중점검 ·항만 비상운영 가동 ·선박대피협의회 참석		·피해상황 조사·보고 ·응급복구대책 시행 ·유관기관 지원요청

※ 소속기관 상황 및 태풍 경로·영향권에 따라 본부와 협의 후 탄력적으로 근무 편성 가능

나. 위기경보 절차

(1) 행정안전부는 기상청의 기상정보(태풍·호우정보)를 바탕으로 태풍·호우 위기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경보 발령

※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시작과 동시에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태풍·호우 위기경보 "관심" 수준 유지(별도 통보 없음)

(2) 위기 평가는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 시간, 파급 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3) 주관기관은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Red)경보 발령·해제 시에는 국가안보실·소관비서관실·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4) 행정안전부는 위기경보 발령 시 국가안보실, 관련기관에 신속히 통보

(5) 중수본부장은 위기단계 임무와 역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중수본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음

(6) 유관기관(기상청 등)은 적절한 경보 발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 징후와 관련된 자료(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제공

(7) 풍수해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주관기관은 소관 시설·업무 및 법령과 관련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활동을 주관하여 수행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위기경보 발령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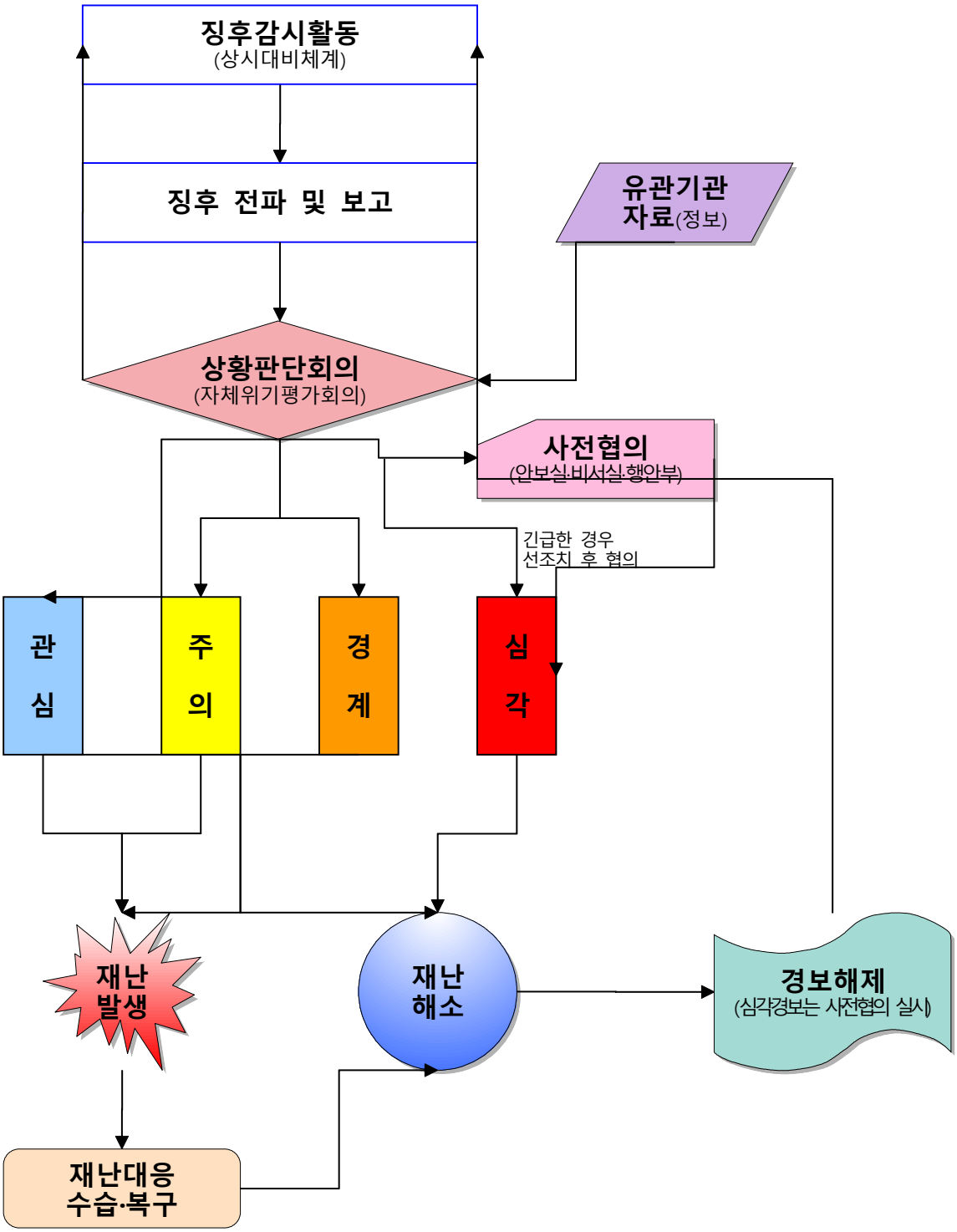
징후감시활동
(상시대비체계)
징후 전파 및 보고
유관기관
자료(정보)
상황판단회의
(자체위기평가회의)
사전협의
(안보실·비서실·행안부)
긴급한 경우
선조치 후 협의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재난
발생
재난
해소
경보해제
(심각경보는 사전협의 실시)
재난대응
수습·복구

7. 비상근무체계(여수광양항만공사)

가. 구성원별 임무

구 분	주 요 임 무
비상대책반장(사장)	▸ YGPA 비상대책반 업무 총괄
총괄통제부장 (재난안전실장) *운영본부장 : 전사 대응 필요 시	▸ 비상대책반장 보좌 및 비상 시 직무 대행, 재난 관련 업무 전반의 총괄
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 인력지원 및 언론홍보 등
운영대책부장 (물류전략실장)	▸ 부두 운영현황 점검 및 협조체계 지원
복구대책부장 (항만시설부장, 항만개발부장)	▸ 항만시설 피해 최소화 및 복구 지원

나. 정부기구 비상단계별 근무편성 기준

구분		근무기준	근무편성	근무인원
행정안전부	초기 대응	• **호우주의보 3개 시·도 이하**에 발표 • **태풍정보 발표** • 대설**주의보 3개 시·도 이하**에 발표	• 보고서 작성반(2명) - 재난상황관리팀/2명(상황실 2) • 정보수집반(7명) - 행정지원 및 분석팀/2명(자연재난대응과 2) - 중앙행정기관 지원팀/2명(기상청 1, 경찰청 1) - 유관기관 지원팀/3명 (국립공원 1, 수자원공사 1, 한수원 1)	9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 **호우주의보 4개 시·도 이상**에 발표 • **호우경보 3개 시·도 이상**에 발표 • **대설주의보 4개 시·도 이상**에 발표 • **대설경보 3개 시·도 이상**에 발표 • **태풍 예비특보 발표**	• 실무반장 1명(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 상황총괄반(17명) -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팀/7명 (상황실 2, 기상청 1, 경찰청 1, 국립공원 1, 수자원공사 1, 한수원 1) - 상황보고서 작성팀/8명(재난안전관리본부 8) -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팀/2명 (자연재난대응과 2) • 12개 협업기능반(α명)	18+α명

구분		근무기준	근무편성	근무인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 **호우(대설)경보 4개 시·도 이상**에 발표 • **태풍주의보·경보** 발표 시 •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실무반장 1명(재난관리실 과장) • 상황총괄반(18명) -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팀/7명 (상황실 2, 기상청 1, 경찰청 1, 국립공원 1, 수자원공사 1, 한수원 1) - 상황보고서 작성팀/8명(재난안전관리본부 8) -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팀/3명 (자연재난대응과 3) • 12개 협업기능반(α명)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명)	19+α+β명
	3단계	• **호우(대설)경보 4개 시·도 이상**에 발표 및 해당 시·도에 **3일 이상 호우 전망** 시 •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전국적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 실무반장 1명(재난관리실 과장) • 상황총괄반(28명) -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팀/7명 (상황실 2, 기상청 1, 경찰청 1, 국립공원 1, 수자원공사 1, 한수원 1) - 상황보고서 작성팀/16명(재난안전관리본부 16) -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팀/5명 (자연재난대응과 5) • 12개 협업기능반(α명)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명)	29+α+β명

① **중앙대책본부장**·중앙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상황실장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상상황, 재난규모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 시간·인원, 비상단계 등을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② 비상근무 해제는 비상근무 단계 발령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하위단계로 조정·운영한다.

③ **도서지역**(서해5도, 흑산도·홍도, 거문도·초도, 추자도를 말한다), **산지**(제주도산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경북북동산지를 말한다) 및 **먼바다**에 **발표**되는 **기상특보**는 풍수해 비상단계 기준이 되는 **기상특보**에서 **제외**한다.

④ **도(道)**는 **3개 이상의 시·군**에 **호우특보** 또는 **대설특보**가 **발표된 경우**에 **특보가 발표**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3개 이상의 지역**(제주도북부, 제주도서부, 제주도남부, 제주도동부를 말한다)에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에 특보가 발표된 것으로 한다.

Ⅳ.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태풍 · 호우 · 대설)

Ⅳ. 위기관리 단계별 조치사항[태풍 · 호우 · 대설]

1.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내용 및 절차

가. 예방대책

(1) 공통

○ 방재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추진 시 풍수해(태풍, 호우, 대설)로 부터 여수광양항의 항만시설 및 선박의 안전한 보호조치를 위한 대책 우선적 고려

○ 풍수해(태풍, 호우, 대설) 취약시설물 점검 · 정비 등 예방대책 수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관계재난관리책임기관 · 긴급구조기관 · 긴급구조지원기관 등과 협조체제 구축

○ 풍수해(태풍, 호우, 대설) 예측 및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

○ 풍수해(태풍, 호우, 대설) 대비 교육 · 훈련 및 홍보

(2) 항만시설

(가) 풍수해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점검 · 정비 강화

○ 풍수해 취약시설의 점검 · 정비

- 풍수해 취약시설(안벽, 호안, 비상전력, 배수관로, 항만도로 등) 항만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수시 점검
- 재난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 및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위해 책임자 지정 등 관리강화
- 관리대상 시설물 점검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점검

· 정기안전점검 : 안전등급에 따라 차등 실시(해빙기, 우기, 동절기)

· 정밀안전점검 : 안전등급에 따라 차등 실시

· 긴급안전점검 : 관리주체 필요 시 또는 관계행정기관장 요청 시

·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실시하고 1종 시설물은 안전등급에 따라 차등 실시

· 성능평가 : 5년에 1회 이상 실시

○ 항만시설 공사장 등 관리

- 공사착수 시 현장별 수방단 편성 운영, 우기 및 태풍·해일기 대비 일제 점검 등 실시

- 호안 등 외곽시설은 가급적 태풍·해일 시기 이전에 완공 또는 완성 단면으로 시공되도록 공정계획 수립 시행

- 특정관리대상사업의 지정·관리 및 정비

- 혹서기, 혹한기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이행 및 관리

- 대규모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공사장별 관리카드 작성, 공사관리관, 시공회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관리 책임자 복수지정 등 특별관리

○ 기존 항만시설물의 안전조치

-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전상 취약 및 손상된 시설물은 유지보수계획 수립 시행

- 하역시설

· Rail형 장비

: 작업풍속(16m/s 또는 20m/s이상으로 설계·제작된 장비의 경우 해당 작업풍속) 초과 시는 작업을 중단하고, 크레인을 계류장 위치로 이동 후 stowage pin cup과 tie-down 등을 지상과 견고하게 결속하고, 크레인의 앞뒤 바퀴에 고정침목을 설치

· Tire형 또는 기타장비

: 작업풍속(16m/s 또는 20m/s이상으로 설계·제작된 장비의 경우 해당 작업풍속) 초과시는 크레인을 지정(안전한)장소로 이동 후 받침목 고정 등

의 고정 장치로 결속

· 폭풍 등 기상특보 해제 후에는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사용

(나) 항만시설 사용자(운영사 등)들의 안전관리상태 점검

○ 운영건물 등 임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상태 점검

- 배수로(지붕, 측구 등) 청소, 고장·파손된 창호, 셔터, OHD도어 등 수리

○ 기상특보 상황에 따른 하역시설 · 장비별 안전대책 점검

○ 기상특보 상황에 따른 화물의 안전대책 및 반출계획 점검

○ 항만시설장비 피해 경감대책 수립 · 추진

- 기상악화 시 각종 하역장비별 피해경감대책 수립 및 점검실시

- 기상특보 상황별 하역시설 · 장비별 안전대책 강구

○ 항만운영시설 피해방지대책 추진

- 임항창고,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 각종 항만운영시설 지속적인 기능 유지관리 실시

(다) 화물보호 대책 강구

○ 창고 및 야적장에 장치되어 있는 화물 중 후방수송이 가능한 화물에 대한 반출계획 사전수립

○ 해상유출 가능성 있는 원목 등 화물에 대한 고박 대책

○ 컨테이너 화물 안전대책 등

○ 항만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 노후시설 개보수 등

(라)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 정보체계 구축

○ 재난안전담당자의 재난대비능력 향상과 긴급구조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행정안전부(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중앙소방학교 또는 전남소방본부)에서 실시하는 재난관리 및 긴급구조 교육 이수

○ 자료의 보전

- 태풍·해일 발생 시 각종 자료의 보전(지적, 건물, 지하매설물, 측량도면 등) 및 자료보관체계 정비

- 시설물 관리자는 원활한 복구를 위해 미리 중요한 소관시설의 구조도, 기초지반상황 등의 자료정비 및 피해방지

나. 대비대책

(1) 관 심 (준비단계, Blue)

(가) 상황판단기준

단계	상 황
관심 (Blue)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호우·대설이 발생한 상태

(나) 조치사항

○ 기상상황 관측 및 예측

-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상상황 주시 등 징후 감시활동

- 태풍발생 시 태풍의 진행방향, 호우·대설 발생 시 호우·대설 상황 파악

- 평시체제 운영(상황관리체제 유지) : 당직과 연계한 상황관리 → 해양수산부 비상근무 발령 시 즉시 총괄통제부로 연락

- 필요 시 각 반에 기상정보 전파

○ 비상대책반 설치 사전 준비(재난대비 사전 준비활동)

○ 여름철, 겨울철 재난대책 사전준비

- 비상연락, 유관기관 협조, 비상근무 체계 등 정비
- 재난대응 매뉴얼 보완 정비
- 재난우려 시설물, 대규모 공사장 등에 대한 예찰 강화 및 피해예방 대책 점검

(다) 상황반별 현장조치 사항

① 총괄통제부

○ 주요 추진활동

▷ 재난 대비·대응태세 구축

○ 태풍 내습 전 방재조직 및 비상연락망 정비

▷ 재난발생 시 신속한 수습을 위한 체제 정비

○ 비상대책반 설치 사전 준비

- 현장 관계자 비상연락망 정비·유지
- 재해발생 시 신속한 유관기관 전파 및 보고 준비

○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활 동 내 역	점검	담 당
○ 풍수해매뉴얼은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		재난안전실
○ 풍수해에 대한 진로방향 및 기상정보 자료는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고 있는가?		
○ 비상대책반 설치를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가?		
○ 비상근무 협조체계 및 대비상황 점검하였는가?		

② 운영대책부

○ 주요 활동내역

▷ 부두 구역 내 야적화물 안전대책 수립
○ 장기 적치화물 현황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
○ 부두 내 취약시설 점검
▷ 선박 현황 조사
○ 항만 내 재박선박현황, 피항지 현황 및 체화화물 안전상태 등 확인
○ 재해 우려 선박 대피 조치

○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활 동 내 역	점검	담 당
○ 터미널 취약시설(CFS, 배수로 등)은 점검하였는가?		물류전략실 물류단지부 여수지사
○ 항내 재박선박 및 작업선박 현황은 파악하였는가?		
○ 하역장비 고박시설(쐐기)은 구비하였는가?		
○ 로딩암, 플렉시블 호스 등 위험물 하역시설 안전조치하였는가?		
○ 유류 저장탱크 등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하였는가?		
○ 원목은 3m 이내로 야적하고 고박 및 버팀목은 설치하였는가?		
○ 액체화물 수송배관 상태는 확인하였는가?		
○ 유류 등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확인?		
○ 부두 내 비산 우려가 있는 화물 관리상태 파악하였나?		
○ 선박대피협의회 준비를 하고 있는가?		

③ 복구대책부

○ 주요 활동내역

▷ 항만시설물 풍수해 예방대책 시행
○ 기존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
○ 항만시설물별 응급복구 및 피해상황 파악을 위한 수방단 조직 관리
▷ 항만시설물 및 공사현장 재해방지 활동 강화
○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부분은 태풍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공정계획 수립
○ 공사현장별 응급복구 및 피해상황 파악을 위한 수방단 조직 관리

○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활 동 내 역	점검	담 당
○ 항만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는 완료하였는가?		항만시설부 항만개발부 뉴딜사업실 마케팅부 신성장사업실
○ 항만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는 완료하였는가?		
○ 공사현장별 비상연락망은 확보되었는가?		
○ 공사현장별 수방단은 조직되었는가?		
○ 공사현장 취약지구 안전은 점검하였는가?		

④ 지원부

○ 주요 활동내역

▷ 비상대책반 설치 사전 준비 지원
▷ 비상연락망 정비
▷ 각종 물품공급 준비

○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활 동 내 역	점검	담 당
○ 비상대책반 설치가 사전에 준비되었는가?		기획조정실 경영지원부 재무회계부 ESG경영실 해양관광활성화 추진단
○ 비상대책반 통신시설(전화, FAX) 준비되었나?		
○ 비상대책반 운영관련 각종 사무용품 지원 가능한가?		
○ 비상대책반 운영관련 급식지원은 준비되었는가?		
○ 직원 비상연락망은 정비 되었는가?		

(2) 주 의 (Yellow)

(가) 상황판단기준

단계	상 황
주의 (Yellow)	관할해역에 태풍·호우·대설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가 발표되고 태풍·호우·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나) 조치사항

○ 비상대책반 설치 및 운영 준비

○ 기상상황 및 특보 등 상황판단

-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태풍의 발생 및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재난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강화 및 상황 점검

- 항만시설 및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
- 수방자재 확보 및 소속 공사현장 비상근무 상태 점검

○ 선박대피 협의회 참석

○ 항만순찰강화 및 부두 운영사 등에 시설안전점검 지시

○ 재난상황 파악 및 위기 경보 전파

○ 재난 상황 보고

주) 1. 해양수산부 등의 비상근무 통보 시 비상근무 실시

2. 기상상황 예비특보, 주의보 단계에서 총괄통제부의 대응근무체계 가동(비상근무 실시), 경보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상황반 전체 비상근무 실시

(다) 상황반별 현장조치 사항

① 총괄통제부

○ 주요 추진활동

▷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상상황 및 진행상황 계속 파악 ▷ 비상대책반 설치 및 운영 준비 ▷ 실무반에 기상정보 전파 및 상황 전달 ○ 실무반으로 부터 재박선박 현황, 태풍대비 현장점검 현황 집계 파악 ▷ 태풍의 중심이 북위 16도를 통과하기 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해양수산부 지시가 있을 경우) 총괄통제부 또는 각 반별 1명 이상 경계근무 실시

② 운영대책부

○ 주요 활동내역

▷ 항만 내 재박 선박, 하역장비 고박현황 및 체화화물 안전상태 등을 확인하여 총괄통제부로 보고

▷ 선박대피 협의회 개최결과에 따른 피항 완료 확인 및 항계 내 대기 선박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

▷ 항만 내 피해예상지역 순찰강화

○ 창고 및 야적장에 있는 화물 중 후방 수송이 가능한 화물은 최대한 반출

○ 안벽으로부터 월파에 의한 화물 침수 예상구역에는 화물적재 금지

○ 화물 고박상태 점검

○ CY 장치장 컨테이너 적치상태 점검

▷ 운영시설 및 장비 안전점검

○ 유휴 C/C는 타이다운 및 스토이지핀에 계류하고 레일과 바퀴사이 쇄기 고정 확인

○ T/C, Y/T는 작업 완료된 경우 후방으로 이동 확인

○ 방충재, 계선주 등 선박 이접안 시설 점검

○ CY, 배후단지시설 등 점검

○ 창고시설 점검(누수여부, 출입문 단속 상태 등)

③ 복구대책부

○ 주요 활동내역

▷ 시설물 안전점검

○ 유무선 통신시설, 창고, 전력, 조명시설 점검

○ 종합변전소 비상전원 확보

▷ 공사현장 안전관리

○ 붕괴우려 시설물 보강

○ 유실 우려가 있는 기계, 가설물 등은 철거하거나 보강

○ 준설선 및 해상공사작업 장비의 대피, 육상장비 전도방지와 침수 예상지역 장비 및 인력 대피여부 확인

④ 지 원 부

○ 주요 활동내역

▷ 비상근무 행정지원 준비 ○ 비상대책반 설치 및 운영 준비 지원 - 책상, 각반 명패부착, 전화기, 컴퓨터, 음료대, TV, 라디오 및 건전지, 랜턴, 순찰용 차량 등 확보 ○ 급식지원 및 비상식량, 야식 등 준비

(3) 경 계 (Orange)

(가) 상황판단기준

단계	상 황
경계 (Orange)	태풍·호우·대설 경보가 발표되고 태풍·호우·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 가능성이 농후할 때

(나) 조치사항

○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상상황 및 진행상황 지속 확인

○ 비상대책반 비상근무

○ 하역작업 등 전면중단 지시

○ 항만시설, 항만공사장 등 현장관리 강화

○ 피해 발생 시 조치계획 점검

(다) 상황반별 현장조치 사항

① 총괄통제부

○ 주요 추진활동

▷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상상황 및 진행상황 계속 파악

▷ 비상대책반 비상근무 실시

○ 총괄통제부 2명, 운영대책부 2명, 복구대책부 1명, 지원부 1명

○ 근무시간 : 당일 08:30 ~ 익일 09:00

○ 조치사항

- 주요사항 본부장 상황보고 (매일 09:00)
- 각종 재난현황 보고(여수청 등) : 공사현장 현황, 하역장비 고박 현황, 항만내 재박선박 현황 등

▷ 실무반에 기상정보 전파 및 상황 전달

○ 실무반으로부터 재박선박 현황, 태풍대비 현장점검 현황 집계 파악

② 운영대책부

○ 주요 활동내역

▷ 하역작업 전면중단 지시

▷ 항만 내 재박선박, 하역장비 고박현황 및 체화화물 안전상태 등을 확인하여 총괄통제부로 보고

▷ 일반화물은 최소 태풍권 진입 이전에 창고입고 또는 반출 확인

▷ CY 장치장 컨테이너 적치상태 점검

▷ 하역장비 및 컨테이너 고박상태 재확인

▷ 항만 순찰강화

○ 운영시설, 장비 안전상태 확인 및 항만시설 피해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 피해선박 발생 시 조치

○ 필요 시 예인선 지원요청(여수지방해양수산청)

○ 부상자 및 선원구조요청(여수해양경찰서)

○ 사고발생 상황보고(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 2차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협조하여 사고 인근 선박에 정보제공

▷ 항만시설, 화물피해 현황 조사 및 이용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보

③ 복구대책부

○ 주요 활동내역

▷ 공사 및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피해여부 확인 ▷ 운영 중인 시설 안전점검 ▷ 피해발생 시 응급복구 시행 및 피해조사, 2차 피해 방지 조치 ▷ 공사현장 등 순찰강화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대리인 등 필수요원 현장 상주 확인 및 공사현장현황을 확인하여 총괄통제부로 보고

④ 지원부

○ 주요 활동내역

▷ 비상근무 행정지원 ○ 급식지원 및 비상식량, 야식 등 준비 ○ 비상대책반 소모품 및 생필품 지원 ▷ 마린센터 내 취약시설 점검 및 접근금지 표시·전파

(4) 심 각 (Red)

(가) 상황판단기준

단계	상 황
심각 (Red)	태풍·호우·대설 경보가 발령되고 태풍·호우·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 할 때

(나) 조치사항

○ 기상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상상황 및 진행상황 지속 확인

○ 비상대책반 비상근무 실시(인원보강)

○ 항만시설, 항만공사장 등 현장관리 강화

○ 피해상황 파악 및 긴급복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다) 상황반별 현장조치 사항

① 총괄통제부

○ 주요 추진활동

▷ 비상대책반 비상근무 인원 보강
○ 총괄통제부 2명, 운영대책부 2명, 복구대책부 2명, 지원부 2명
○ 근무시간 : 당일 08:30 ~ 익일 09:00
○ 조치사항
- 주요사항 비상대책반 반장 보고(수시)
- 각종 재난현황 보고(여수청 등) : 공사현장 현황, 하역장비 고박 현황, 항만 내 재박 선박 현황 등

▷ 분야별 재난피해상황 취합·보고
▷ 피해조사반 구성·운영
▷ 피해상황 파악 및 긴급 복구를 위한 협력체계 가동
▷ 인명피해 발생 시 구조·구급 대책 운영

② 운영대책부

○ 주요 활동내역

▷ 항만 내 선박, 화물, 시설장비 등 안전강화 조치
▷ 선박 및 항만시설 등 피해에 대한 응급조치 후 총괄통제부로 보고
▷ 피해선박 발생 시 조치
○ 필요 시 예인선 지원요청(여수지방해양수산청)
○ 부상자 및 선원구조요청(여수해양경찰서)
○ 사고발생 상황보고(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 2차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협조하여 사고 인근 선박에 정보제공
▷ 항만시설, 화물피해 현황 조사 및 이용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보
▷ 피해원인 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 고박방법, 창고입고조치, 후방 반출여부 등
○ 종류별, 구역별, 화주별 피해원인 조사 및 향후대책 수립

③ 복구대책부

○ 주요 활동내역

▷ 항만시설물 등 긴급 복구를 위한 대책수립 ▷ 항만시설 및 공사현장 등 피해여부 확인, 피해 응급조치 ▷ 피해발생 시 응급복구 시행 및 피해조사, 2차 피해 방지 조치 ▷ 공사현장 등 순찰강화 및 피해 복구대책 추진

④ 지원부

○ 주요 활동내역

▷ 비상근무 행정지원 ○ 급식지원 및 비상식량, 야식 등 준비 ○ 비상대책반 소모품 및 생필품 지원 ▷ 마린센터 내 취약지역 시설확인 순찰점검 및 응급조치 실시 ○ 누수, 침수여부 확인, 창문 개폐상태 확인 등

다. 대응대책

(1) 재난발생 직전의 대책

○ 풍수해 대응 활동체제의 확립

- 해양수산부 비상대책반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보고체계 유지
- 각 반별 주요임무 숙지 및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필요시 비상근무인원 증원

○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의 전달

- 기상특보 등의 기상상황과 재난상황 등 관련정보를 각 부두운영사 및 선사에 전달(시공사 포함)

○ 재난사전조치 활동

- 항만분야 : 하역·운영시설 및 화물보호, 공사장 안전조치
- 선박분야 : 선박 안전조치

(2) 재난발생 직후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확립

○ 재난발생 시 비상대책반장은 현장의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하여 필요 시 현장 지휘소를 설치할 수 있음

○ 대규모 재난발생 시 각 부두별 재난안전담당자 등 현장상황 관리자와 관계자를 활용, 재난현장상황 파악, 지도관리 기능 수행

(3) 재난정보 수집 · 연락 및 통신수단 확보

○ 피해상황 조기파악 활동

- 재난발생 후 피해상황에 관한 재난정보 수집, 관계기관에 보고 및 전파

○ 응급조치 활동정보 교환

-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활동사항을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유관 기관과 정보교환

○ 통신수단의 확보

- 재난발생 시 중요 통신수단을 우선적으로 확보조치

(4) 재난발생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응급복구 실시

라. 복구대책

(1) 복구 기본방향 결정

○ 자력복구,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재발이 우려되는 시설은 개량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재발이 없도록 근원적인 대책강구

○ 피해상황, 지역특성, 부두 운영사 등 해당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상복구와 개량복구의 기본방향 결정

(2) 피해조사

○ 피해발생시점이 당해 기간 내의 피해인지 여부 판단 및 순수한 피해부분만 과장 없이 사실 조사하여 정확한 피해량 산정

○ 일반적인 피해조사는 현업부서에서 시행하고 뉴딜사업실에서 취합

○ 대규모 피해발생 시 학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근원적 대책강구

(3) 피해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

○ 운영본부(물류전략실, 여수지사), 개발사업본부(항만개발부, 항만시설부)에서 조사된 피해내용에 대해 뉴딜사업실에서 취합 및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 복구 작업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피해확대 방지 및 항만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빠른 기간 내 실시

(4) 시설물 항구복구 실시지침

○ 시설피해복구에 대하여 재해대장 작성 비치

○ 시설복구는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빠른 기간 내 복구 완료

○ 설계는 피해원인 등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 영구적이고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설계

○ 피해복구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재현되지 않도록 안전도가 높은 구조물로 개축정비

○ 복구공사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관리하여 피해 재발방지

○ 사업추진은 공기를 무시한 획일적 시공을 지양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내실 있는 시공원칙 준수

Ⅴ.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V.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1. 태풍 내습

가. 상 황

ㅇ (現위치) 10.4. 15:00에 **괌 북북동쪽 360km 해상**에서 발생한 제24호 태풍 '다나스'는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1,000hpa, 약, 소형)

ㅇ (예상진로) 10.9.(수) **제주 동남동 약 120km까지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본에 위치한 고기압대 이동에 따라 유동적**임(기상청)

(1) 태풍 세력변화 전망

일시	중심위치		중심기압 (hPa)	최대풍속		강풍 반경(km)	강도	크기	진행 방향	이동 속도 (km/h)
	위도(N)	경도(E)		초속 (m/s)	시속 (km/h)					
04일 15시 현재	16.3	146.3	1000	18	65	200	약	소형	서북서	20
05일 15시 예상	17.9	141.2	992	22	79	220	약	소형	서북서	24
06일 15시 예상	20.0	135.9	985	27	97	250	중	소형	서북서	25
07일 15시 예상	23.0	130.5	975	34	122	300	강	중형	서북서	27
08일 15시 예상	27.0	126.7	980	31	112	280	중	소형	북서	24
09일 15시 예상	33.1	128.2	990	24	86	250	약	소형	북북동	29

(2) 韓·美·日 예보기관 태풍진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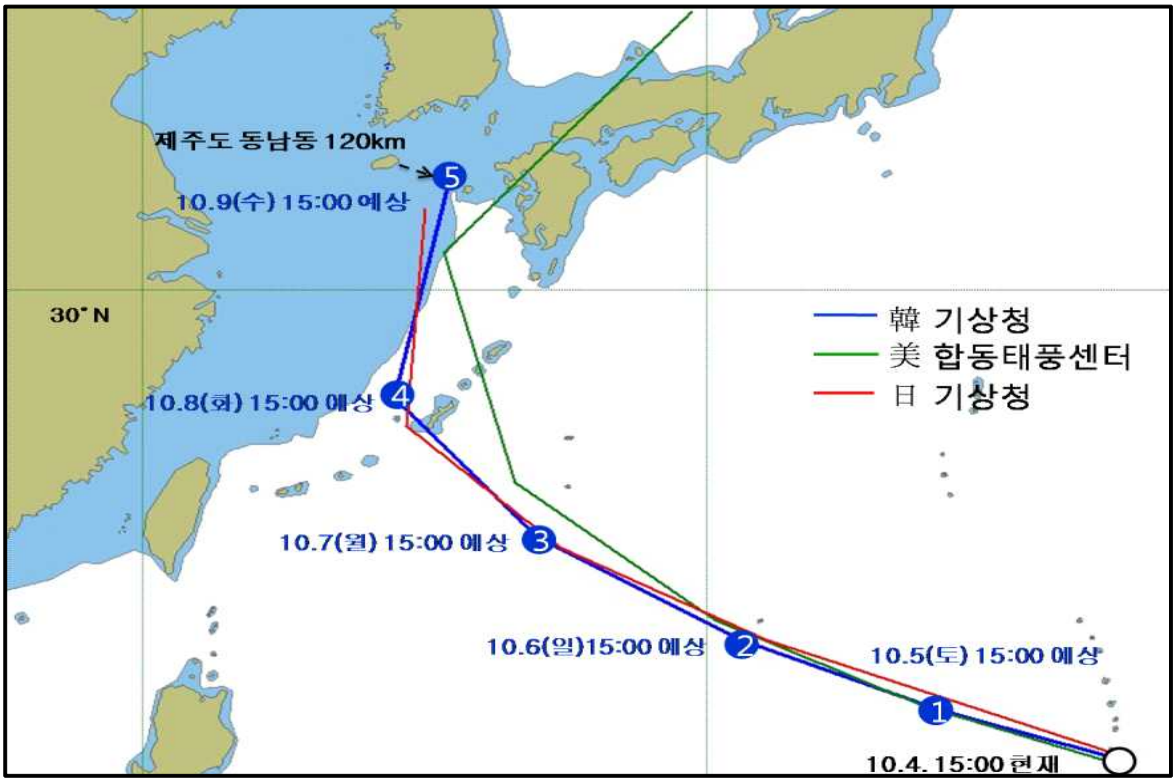

나. 조치사항

(1) 조치 목록

조 치 내 용	비 고
(1) 태풍정보 파악 · 분석	
(2) 태풍진행상황의 보고 및 전파	
(3) 위기경보 발령사항 및 조치사항 전파	
(4) 비상대책반의 운영	
(5) 비상근무 강화	
(6) 항만운영업체 등 실무기관의 대처상황 점검	
(7) 비상대책반의 긴급대응조치	
(8)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점검	
(9)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실태 점검	
(10) 유관기관의 긴급지원체계 가동	

(2) 조치 내용

□ 항만시설 피해예방 조치

○ 선박대피, 입출항 통제 등을 통한 피해예방 조치

○ 항만시설장비, 공사현장, 위험시설 등 안전점검 강화

○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복구 대책수립 시행

□ 태풍 진행상황 전파

○ 유관기관 및 부두운영사에 예·경보 상황 전파

□ 조기경보 발령사항 및 조치사항 전파

○ 선박대피, 입출항 통제 등을 통한 피해예방 조치

○ 항만 시설장비, 공사현장, 위험시설 등 안전점검 강화

○ 피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복구 대책수립 시행

【주의(Yellow)】 - 10월 7일 18시

【발령사유】 - 주의(Yellow) 발령 - 태풍 예비특보 또는 태풍주의보가 발표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어 10.7 18:00 위기경보 “주의” 발령

○ 대책회의(해양수산부)의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 발령 시 신속전파

- 태풍 강도 및 크기, 내습시기 등을 고려하여 경보전파

- 태풍관련 항만운영업체 등에 신속히 통보

○ 위기경보 “주의” 발령에 따른 적절한 재난대비 조치요청

【경계(Orange)】 - 10월 8일 16시

【발령사유】 - 경계(Orange) 발령 -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태풍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10.8 18:00 위기경보 “경계” 발령

○ 대책회의(해양수산부)의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 신속전파

- 태풍 강도 및 크기, 내습시기 등을 고려하여 경보전파

- 태풍관련 항만운영업체 등에 신속히 통보

○ 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따른 적절한 재난대비 조치요청

- 선박 및 항만관련 시설 안전관리 요령 등 전파

【심각(Red)】 - 10월 8일 22시

【발령사유】 - “심각” 발령 -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태풍에 의한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여 8.4 09:00부로 “위기경보 ”심각“ 발령 ※ 위기경보 “심각” 발령 전 국가위기관리실 사전 협의조치 이행

○ 대책회의(해양수산부)의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 발령 시 신속전파

- 태풍 강도 및 크기, 내습시기 등을 고려하여 경보전파

- 태풍관련 항만관련업체 신속히 통보

○ 위기경보 “심각” 발령에 따른 적절한 재난대비 조치요청

- 선박 및 항만관련 시설 안전관리 요령 등 전파

□ 비상대책반 운영

○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실시

- 사전조치 및 대응단계

- 실무반 편성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필요 시 대책회의 등을 거쳐 추가편성 등 탄력적으로 운영

□ 비상근무 강화

- 태풍상황의 진행에 따라 비상근무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실시

- 재난 발생 시 비상대책반장에게 수시 보고

□ 항만관련업체 등 실무기관 대처상황 점검

○ 재난상황에 따른 재난대처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사항 지시

□ 긴급대응조치

○ 필요 시 총괄대책반이 초동대응팀을 구성하여 긴급 대응 조치

□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및 점검

○ 침수, 유실, 붕괴 등 피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등 예찰을 강화하도록 지시

○ 위험시설물, 복구공사현장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에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 재해발생 우려시설에 대해 응급조치 및 점검

□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실태 점검

○ 피해상황별 대처상황 및 응급복구실태 파악

- 항만 시설 피해실태 및 응급복구실태 파악

□ 유관기관 지원체계 가동

○ 피해발생 시 신속한 인력·장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

○ 유관기관에 소관시설물 피해방지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자원동원체계 가동 및 자원 확보 요청

2. 집중호우 발생

가. 상 황

(1) 기상특보

○ 제　　목 : 호우경보 발표

○ 발표시각 :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 해당구역 : 전라남도(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북도(봉화군 제외), 경상남도

○ 발효시각 : 0000년 00월 00일 00+2시 00분

○ 내　　용

- 현재 강수량(00일 00시 ~ 현재) : 150 ~ 240 mm
- 예상 강수량(현재 ~ 00일 00시) : 200 ~ 320 mm
- 총 예상 강수량 : 350 ~ 550 mm

○ 특보 발효현황

- 호우경보 : 전라남도(광양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강원도(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횡성군, 원주시), 경상북도(봉화군)
- 호우주의보 :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철원군, 화천군, 홍천군, 춘천시, 양구군, 인제군)
- 풍랑주의보 : 제주도 남쪽 먼 바다

(2) 피해상황

○ 00일 00시 현재 집중호우가 쏟아진 전라남도(광양시), 대전광역시, 충청도, 강원도 등지에서 모두 184동의 주택이 침수됨

○ 강원도 횡성 안흥고개에서는 토석 15톤 가량이 42번 국도로 무너져 내려 교통이 통제되고 있음

○ 비바람에 전신주가 무너져 강원도 춘천시 일대 800여 가구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일대 15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음

○ 집중호우로 경부선 영동과 황간 사이 하행선 서울기점 214㎞ 지점의 노반이 침식되어 열차운행 중단됨

○ 전라북도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재민 120여명이 발생하고 농경이 9천여 ha가 침수됨

○ 광양시에 시간당 40㎜ 안팎의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월드마린센터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0여대가 물에 잠기는 사고 발생

○ 전남 나주시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호우로 전신주 개폐기에 낙뢰 사고가 발생하여 일대 백여 가구에 정전사고 발생

○ 전북 완주군에서는 양계장 5채가 물에 잠겨 병아리 3만2천수가 폐사

(3) 위성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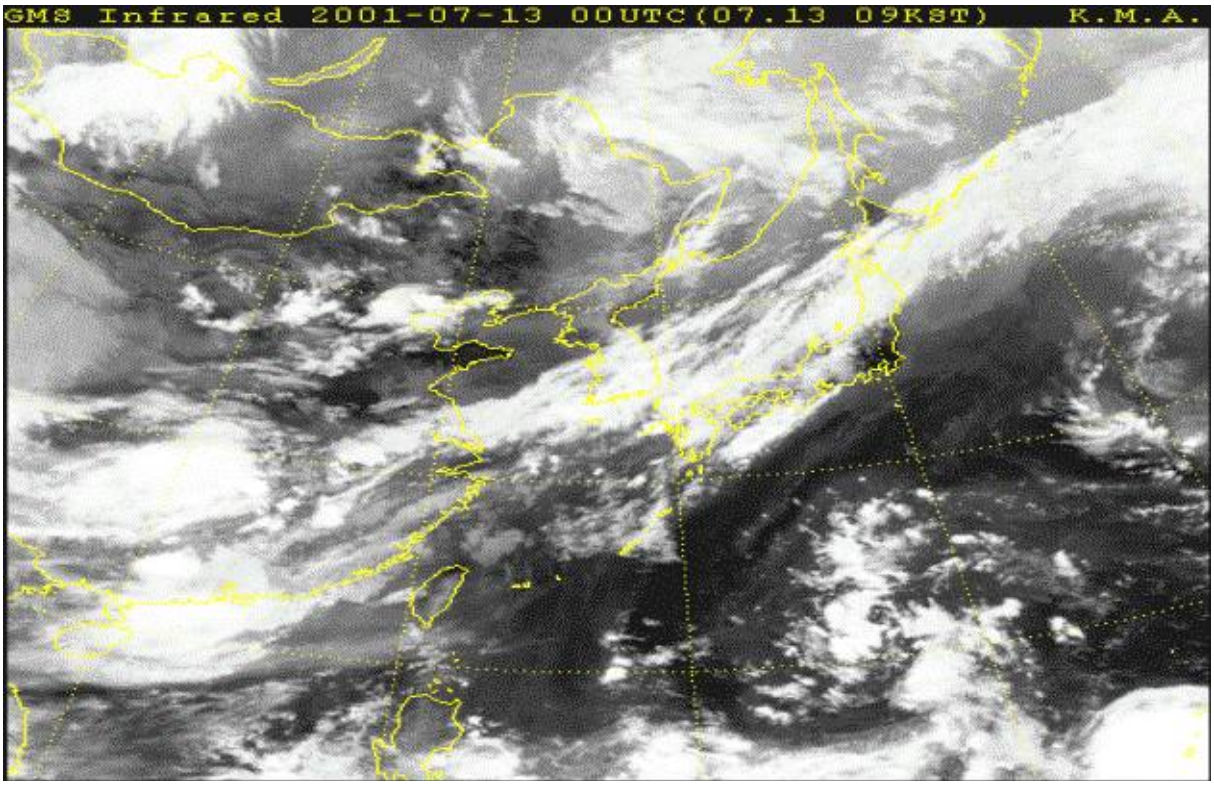

나. 조치사항 및 절차

(1) 조치 목록

조 치 내 용	비 고
(1) 집중호우 발생정보 점검·분석	
(2) 집중호우 상황보고 및 전파	
(3) 위기경보 발령사항 및 조치사항전파	
(4) 비상대책반의 운영	
(5) 비상근무 강화	
(6) 항만운영업체 등 실무기관의 대처상황 점검	
(7) 비상대책반의 긴급대응조치	

(8)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점검 (9)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실태 점검 (10) 유관기관 긴급지원체계 가동	

(2) 조치 내용

□ 집중호우 발생정보 점검·분석

○ 기상청 등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통해 재난발생상황 파악

○ 위성영상, 각종 수치자료 등을 바탕으로 집중호우 발생 지역 확대범위, 예상강우량 등 분석 판단

□ 집중호우 상황보고 및 전파

○ 호우 상황보고서 작성

- 집중호우의 지속가능성, 확대범위, 예상 강우량 등을 분석
- 실무기관별 대처상황을 파악

○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

- 항만운영업체 등 실무기관에 예·경보상황 전파

□ 위기경보 발령 및 조치사항 전파

예시 【발령사유】 - 경계 발령 - 호우경보 5개시도, 주의보 2개 시도에 발표되어 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위기경보 “경계” 발령

○ 대책회의(해양수산부)의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 “경계” 발령

- 집중호우 발생지역 범위, 예상강우량 등을 고려하여 호우 위기

경보 “경계” 발령

- 항만운영업체 등 실무기관에 신속히 통보
- 위기경보 발령단계에 따른 적절한 재난대비 조치요청 전파

【발령사유】 - “심각” 발령 - 호우경보가 전국적으로 발표되어 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위기경보 ”심각“ 발령 ※ 위기경보 “심각” 발령 전 국가위기관리실 사전 협의조치 이행

○ 대책회의(해양수산부)의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 “심각”발령

- “경계” 수준 참고

□ 비상대책반 운영

○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실시

- 사전조치 및 대응단계
- 실무반 편성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필요 시 대책회의 등을 거쳐 추가편성 등 탄력적으로 운영
- 호우에 따른 대처계획 논의 및 당부사항 전달

□ 비상근무 강화

○ 항만관련업체 비상근무 강화

- 호우상황의 진행에 따라 비상근무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지시
- 재난 발생 시 비상대책반장에 수시 보고

□ 항만관련업체 등 대처상황 점검

○ 재난상황에 따른 재난대처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

사항 지시

□ 긴급대응조치

- 필요 시 총괄대책반이 초등대응팀을 구성하여 긴급대응 조치

□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및 점검

○ 위험시설물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및 조치결과 점검

○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위험구역 설정

○ 기타 재해발생 우려시설에 대해 응급조치 지시 및 점검

□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실태 점검

○ 비상대책반 등을 통한 피해상황 점검

○ 피해상황별 대처상황 및 응급복구실태 파악

○ 필요 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 지원요청

□ 유관기관 지원체계 가동

○ 피해발생 시 신속한 인력·장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

○ 유관기관에 소관시설물 피해방지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자원 동원체계 가동 및 자원 확보 요청

3. 대설 발생

가. 상 황

대 설 발 생 상 황
❑ 대설경보 발표 ○ 발표시간 : 0000년 01월 5일 07시00분 ○ 해당구역 : 전라남북도 ○ 발효시각 : 0000년 01월 5일 07시00분 ○ 내 용 - 위 구역에 대설경보를 발표함 - 현재 적설(5일 07시 00분 현재) : 9~11㎝ - 앞으로 예상적설(현재~오늘밤까지) : 15~25㎝ - 총 예상적설 : 25~35㎝ ○ 특보발효현황(0000년 1월 5일 07시 00분 이후) - 대설경보 : 전라남도(광양) - 대설주의보 : 경기도 ○ 예비특보 발표현황 - 대설주의보 : 강원도(5일 낮) ○ 참고사항 -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농업 시설물 및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피해발생 상황 ○ 농림시설(비닐하우스 등) 파손 - 05일 09시경 전남 광양, 대전 유성, 충남 공주(계룡산 인근)·연기, 충북 청원군 일원 35~45㎝의 적설로 비닐하우스 280동 붕괴 ○ 수산 증·양식시설물 일부 피해 발생 - 여수 및 강원도 일대 내수면양식장 시설물 일부 붕괴 ※ 수온 급강하로 수산생물 보호대책 필요

나. 조치사항 및 절차

(1) 조치 목록

조 치 내 용	비 고
(1) 대설정보 점검·분석 (2) 대설진행상황의 보고 및 전파 (3) 위기경보 발령사항 및 조치사항 전파 (4) 비상대책반의 운영 (5) 비상근무 강화 (6) 항만관련업체 등 대처상황 점검 (7) 비상대책반의 긴급대응조치 (8)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점검 (9)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실태 점검 (10) 유관기관의 긴급지원체계 가동	

(2) 조치 내용

□ 대설정보 파악·분석

○ 기상청 등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통해 발생상황 파악

○ 위성영상, 각종 수치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설규모 및 내습시기 등을 분석

□ 대설 상황보고 및 전파

○ 대설 상황보고서 작성

- 대설의 진행상황 및 내습지역 등을 분석
- 지자체 및 유관기관별 대처상황을 파악
-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상황전파
-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재난상황에 따른 대응조치 요청

○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

- 유관기관에 예·경보상황 전파

□ 위기경보(관심, 주의, 경계, 심각) 발령 및 조치사항 전파

【발령사유】 - 주의(Yellow) 발령 - 대설 예비특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고 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되어 8.2 09:00 위기경보 "주의" 발령

○ 대책회의(해양수산부)의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 "경계" 발령

- 대설의 규모 및 크기, 내습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설 위기경보 "주의" 발령 시 신속전파
- 대설관련 항만운영업체 등 실무기관에 신속히 통보

- FAX, 비상연락망을 통해 유·무선 2차 전파
- 위기경보 “주의” 발령에 따른 적절한 재난대비 조치요청 및 항만관련 시설 안전관리 요령 등 전파

□ 비상대책반의 운영

○ 비상근무조 편성 및 근무실시

- 사전조치 및 대응단계
- 실무반 편성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필요 시 대책회의 등을 거쳐 추가편성 등 탄력적으로 운영

□ 비상근무 강화

- 대설상황의 진행에 따라 비상근무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지시
- 재난 발생 시 총괄대책반장에게 수시 보고

□ 항만관련업체 등 대처상황 점검

○ 재난상황에 따른 재난대처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사항 지시

□ 긴급대응조치

- 필요 시 총괄대책반이 초등대응팀을 구성하여 긴급대응 조치

□ 피해우려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 및 점검

○ 위험시설물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및 조치결과 점검

○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위험구역 설정

○ 기타 재해발생 우려시설에 대해 응급조치 지시 및 점검

□ 피해상황 및 응급복구실태 점검

○ 피해상황 점검

- 부두별 피해상황을 파악

○ 피해상황별 대처상황 및 응급복구실태 파악

○ 필요 시 유관기관 지원요청

□ 유관기관 지원체계 가동

○ 피해발생 시 신속한 인력·장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조

○ 유관기관에 소관시설물 피해방지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자원 동원체계 가동 및 자원 확보 요청

Ⅵ. 기관대응수칙

기관대응수칙은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 유형별 주요 단계에서 지휘부와 핵심대응 부서가 판단하고 조치할 행동절차를 규정

유형 : 풍수해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관리번호 : 1

관련 매뉴얼	○「풍수해」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 행정안전부	○「풍수해」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 해양수산부 등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 여수광양항만공사

Ⅰ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재난관리 체계도	태풍·호우·대설 대응 표준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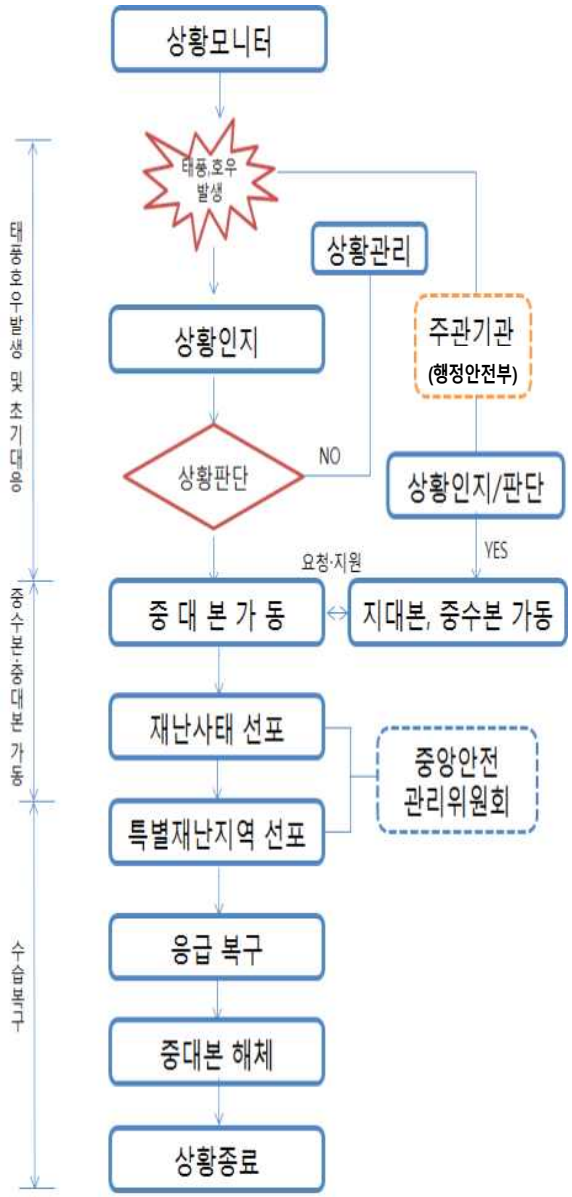

Ⅱ 해양수산부 풍수해(태풍·호우·대설) 대응 프로세스

구 분		재난발생 단계 (상황접수 및 보고 · 전파)	초기대응 및 비상대책반 운영 단계 초기대응	초기대응 및 비상대책반 운영 단계 비상대책반 운영	범정부적 총력대응 단계 피해확대로 중대본 설치(중대본 운영)	수 습 복 구 단 계
초기대응부서	종 합 상황실	**사고접수, 상황파악 및 보고·전파** ● 초기상황 파악 - 기상청(기상정보) 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접수 - 인명, 시설피해 및 대응조치 상황 등 파악 ● 초기상황 판단(피해확대가능성 등) ● 장·차관, 관련 실·국장,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 보고·전파	● 인적·물적 추가 피해상황 파악 ● 현장 대응상황 파악 -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 풍수해발생 정보 입수 및 관계기관 추보(보고/전파) 실시 - 인명피해, 항만시설 등 피해규모	● 추가 피해상황 파악 및 관계기관 보고·전파 ● 현장 대응상황 파악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 대처상황보고서 작성 및 전파 ●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브리핑	● 추가 피해상황 파악 및 관계기관 보고·전파 ● 현장 대응상황 파악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 대처상황보고서 작성 및 전파 ●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브리핑	● 피해 및 복구상황 모니터링 ● 현장 상황보고서 접수 및 중수본 상황보고서 전파 ●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브리핑
	재난대응 소관부서 (해사안전관리과, 항만개발과, 해사안전정책과, 항만운영과, 소득복지과 등)	● 전 직원 정위치 근무 ● 현장 대응상황 실시간 파악 ● 대책본부 설치 필요여부 사전검토	● 상황실 초기정보 인수 및 추가상황 파악 - 피해규모 및 대응상황 파악(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등) ● 초기 대응태세 구축 - 관계기관(해양경찰청, 지방청, 지자체 등)간 핫라인 유지 ● 가용인력·장비 현황 사전점검 확인 ● 구조 인력 및 지역주민 안전관리 - 구조참여 인력 및 지역주민 사고 발생시 대처	● 비상대책반 운영(피해 상황에 따른 담당부서가 주관) - 담당부서는 중수본의 총괄반을 관계부서는 상황반 등 역할 수행 -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광역)구조본부와 협조·지원체계 구축 - 운영지원과에 중수본 근무자 인사발령 협조요청 및 반별 근무자 편성 - 24시간 근무체계 가동 및 일일 상황회의 개최(1일 2회) **※ 피해상황별 담당부서** - 항만시설(어항시설 포함) : 항만개발과, 어촌어항과, 항만운영과 ● 수색·구조(해양경찰) 및 안전조치 이행(지방해양수산청) - 해양경찰청, 해군 등에 인력·장비 지원 및 구조 활동 지원 요청 ● 지역사고수습본부 24시간 상황근무체계 가동 지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사항 파악 -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광역)구조본부와 협조·지원체계 구축사항 - 풍수해 관련 부처(행정안전부, 국도교통부, 환경부 등) 협조사항 - 중대본과 연계된 협업기능에 대한 관계부처(협업부처) 협력체계 - 해양·수산업계 국내외 영향 대처를 위한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기재부 등) 행·재정 지원 사항 ● 중대본과 중수본 사고수습 협의(소속 공무원 연락관 파견 등) ● 지역사고수습본부 24시간 상황근무체계 유지 지시	● 사고수습 처리상황 종합보고(중수본) ● 사고지역 복구(지방청, 자치단체) ●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중수본) ● 해양재난·사고 백서 발간
장 · 차관		**초기상황 확인** ● 초기상황 확인(보고 : 상황총괄반장) - 피해현황 및 현장 대응상황 파악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 단체장 등과 유선 통화 추가 상황 파악 **조치사항 지시** ● (필요시) 긴급조치 지시 - 현장 지휘체계 확립 - 인명피해 최소화방안 강구 - 2차 피해 확산방지대책 강구	**초기대응 점검 및 조치사항** ● 상황판단회의 결과점검 - 현재까지 상황진단 및 대처상황 점검 ● (필요시)사고현장 방문 및 대응상황 점검	**비상대책반 운영** ● 비상대책반 설치 지시 및 사고수습 총괄 지휘 ● 사고현장 방문 및 수습상황 점검 ● 수습조정관 수습·지원 **대국민 홍보 등** ● 언론보도 및 대국민 홍보 총괄 ● 장관 등 방문시 수행 및 사고수습상황 브리핑 **상황판단회의 주재** ● 상황보고 청취 및 상황판단회의 주재 ● 중수본·지수본·지대본 가동 현황 점검 ● 장관 지시사항 - 항만시설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책 강구 - 2차 피해 확산 방지 대책 마련 ●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요청	**중수본 및 중대본 협조**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현황 점검 및 대책 지시 ● 중대본부장 · 지대본부장 · 지수본부장 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및 지원 필요사항 검토·지원 - 피해자 및 사고관계자 심리상담 지원 - 인력, 장비, 물자 부족분 조달 요청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 장관 등 현장방문시 수행 및 사고수습상황 브리핑	● 풍수해대처 사후영향평가 및 재난복구 협력 총괄 지휘 ● 위기경보 및 중수본 해체 결정 ● (필요시)현장방문 및 수습상황 점검 ● 장관 상황보고, 현장방문 시 수행 ● 중대본 및 유관기관 사고수습 협력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참석 ● 재해지역 재정적 지원 검토 및 응급복구, 재난구호 필요사항 지원 지시
담당 실 · 국장		● 초기상황 확인 및 초동대응 지휘 ● 상황실·지방해양수산청장 등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긴급조치 지시 ● 2차 피해 가능성 등 판단 및 장·차관 보고 필요여부 검토	● 상황실 초기정보 인수 및 추가상황 파악 - 피해규모 및 대응상황 파악(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지자체 등) ● 사고발생 및 피해현황 장·차관에 유선 보고 **상황판단회의 주재** ● 사고수습 현황 점검 및 필요사항 조치 지시 - 인명 구조활동 및 방제 활동 초동조치 점검 - 초동조치 대응자원 점검 ● 초기 대응태세 구축 - 관계기관(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지자체 등)간 핫라인 유지 ● 구조인력 · 장비 투입 상황 확인 ● 사고 확산 여부 검토	● 비상대책반 설치·운영 - 중대본·지대본·지수본 대처상황 점검 지원 필요사항 검토·지원 - 상황판단회의 자료 및 언론 브리핑 자료 검토 - 중수본 운영요원 의식주 및 건강(과로)·안전사고, 자원봉사자 관리 사고유형: 풍수해 총괄상황반장: 해사안전국장 항만반: 해운물류국장 수산반: 수산정책관, 어업정책과, 어촌양식정책관 해양환경반: 해양환경정책관 복구반: 항만국, 어촌양식정책관	● 장 · 차관보좌, 중수본 운영 ● 중앙대책본부회의 및 안전정책조정회의 참석 ● 대국민 행동요령 등 인터뷰	● 장·차관 사고현장 방문시 수행 ● 응급복구 등 수습상황 점검 ● 피해복구 자원 등 파악·지원 ● 상황종료 판단 및 위기경보 단계 조정·해제 결정(중수본)
대변인		● 상황보고 확인 - TV, 인터넷 등 언론보도 모니터링 ● 언론사 및 기자 명단 확인 ● 재난예방 및 보도에 관한 언론 협조사항 숙지	● 여론 모니터링 : 오보, 유언비어 파악 및 브리핑 보도 현황 점검		● 상황보고 확인 및 중대본 관련 언론대처정책 설정 지원 - 장 · 차관 지시 및 중대본 · 지대본 · 지수본 협조체제로 언론대처방향 설정 - 언론사 정보 요구사항 파악 및 정보 제공(관계부처 협의) - 공동취재단 구성 및 언론 현장 취재 지원 ● 보도자료 작성, 장·차관, 필요시 대언론 브리핑 및 전문가 브리핑 - 중대본 관련 전문가 인터뷰 지원	● 사고수습 결과 브리핑 - 사고수습 기여 인물에 대한 자료 제공 - 위기대응 평가 및 사례 자료집 발간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선 방안 마련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시, 중수본 상황실(반)이 종합상황실의 기능을 총괄 수행하고, 기존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은 관련 업무 지원

Ⅲ 여수광양항만공사 풍수해(태풍·호우·대설) 대응 프로세스

구분		재난발생 단계 (상황접수 및 보고 · 전파)	초동대응 단계	비상대책반 운영	수습복구 단계
초기대응부서	재난안전센터	**사고접수, 상황파악 및 보고 전파** ● 초기상황 파악 - 기상청 또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로부터 접수 - 인명, 시설피해 및 대응조치 상황 등 파악 ● 초기상황 판단(피해확대 가능성 등) ● 대응소관부서 전파 ● 해양경찰서, 운영사 등 유관기관 전파 ● 필수요원 비상소집	● 인적·물적 추가 피해상황 파악 ● 현장 대응상황 파악 - 각 운영사 및 공사현장, 여수청 및 지자체 대응상황 등 ● 풍수해 발생 정보 입수 및 관계기관 보고 전파 - 인명피해, 항만시설 등 피해규모	● 추가 피해상황 파악 및 관계기관 보고 전파 ● 현장 대응상황 파악 - 각 운영사 및 공사현장, 여수청 및 지자체 대응상황 등 ● 대처상황 보고서 작성 및 전파	● 피해 및 복구상황 모니터링 ● 현장 상황보고서 접수 및 지방청 등 관계기관 상황 보고서 전파
	대응소관부서	● 담당팀장·실무자 정위치 ● 현장 대응상황 실시간 파악 ● 비상대책반 설치 필요여부 사전검토	● 상황실 초기정보 입수 및 추가상황 파악 - 피해규모 및 대응상황 파악(각 운영사 및 공사현장, 여수청, 지자체 등) ● 가용인력 장비 현황 사전점검 확인파악 ● 부두 출입통제 및 선박 통제 ● (필요시) 관계기관에 인력·장비 출동요청	● 비상대책반 근무자 발령 요청 및 반별 편성 ● 비상대책반 운영(본부장: 사장) - 중대본·지대본 및 중앙(광역)구조본부 협조·지원체계 구축 - 인력, 장비, 물자 등 부족분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및 조치 ● 지역사고수습본부에 인력 파견	●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사고지역 피해 현황 조사 ● 사고지역 복구 ● 위기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
사장 · 본부장		**초기상황 확인** ● 초기상황 확인 - 피해현황 및 현장 대처상황 파악 - 지방해경서장 및 여수해양수산청과 유선통화, 추가사항 파악 **조치사항 지시** ● (필요시) 긴급조치 지시 - 현장 지휘체계 확립 - 인명피해 최소화, 2차 피해 확산방지 대책 강구	**초기대응 점검 및 조치사항** ● 사고상황 진단 및 대처상황 점검 - 피해현황, 현장조치 사항, 대응태세 확인 ● 비상대책반 구성 · 운영 필요성 판단 ● 기관장 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비상대책본부 지휘** ● 비상대책반 운영 - 비상대책반 운영방식 검토 - 비상대책반 상황실 점검 및 대책지시 - 피해확산 방지 및 조기수습을 위한 지시 ● 복구 및 안전조치 이행 특별지시 ● (필요시)현장방문 및 피해상황 확인	● 비상대책반 해체 결정 ● (필요 시)현장방문 및 수습상황 점검 ● 피해보상 관련 업무분장 및 역할 조정 ● 유관기관 사고수습 협력 ● 재난복구 협력 총괄 - 재난합동조사단 협력(소속 직원 연락관 파견)
담당 팀장		● 초기상황 확인 및 초동대응 지휘 ● 대응부서에 긴급조치 지시 ● 2차 피해 가능성 등 판단 및 사장 보고	● 상황실 초기정보 입수 및 추가상황 파악 - 피해규모 및 대응상황 파악 ● 사고발생 및 피해현황 사장에 보고 ● 사고수습 현황 점검 및 필요사항 조치 지시 ● 초기 대응태세 구축 - 관계기관(여수청, 지자체 등)간 핫라인 유지 ● 구조인력 장비 투입상황 확인 ● 사고 확산여부 검토	● 사장 · 본부장 보좌 및 비상대책반 운영 - 비상대책반 상황회의 주관 - 실무반 별 역할 분담 및 조치사항 점검 ● 사고수습 지원에 관한 여수청, 지자체간 협의	● 응급복구 등 수습상황 점검 ● 피해복구 자원 등 파악·지원 ● 상황종료 확인 및 전파
대변인		● 상황보고 확인 - 언론 모니터링 등 보도내용 확인 - 내부보고자료 수신 ● 재난예방 및 보도에 관한 언론 협조 사항 숙지	● 보도자료 작성 및 브리핑 준비	● 위기관리 홍보대책반 구성(홍보팀) ● 상황보고 확인 및 대처 - TV, 인터넷 등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부정확 · 미확인 보도(오보 및 유언비어 등) 대처 ● 보도자료 작성	● 단계별 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 사고대응·수습활동 홍보(국민불안 해소) ● 사장 브리핑 및 인터뷰 준비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Ⅳ 여수광양항만공사 풍수해(태풍·호우·대설) 대응 주요 협업기능

기능	① 재난상황관리	② 긴급생활안정지원	③ 긴급 통신지원	④ 시설 응급복구	⑤ 에너지 기능 복구	⑥ 재난자원 지원	⑦ 교통대책
주관부서	총괄통제부 (재난안전실)	경영지원부	항만시설부	항만시설부, 항만개발부	항만시설부	총괄통제부 (재난안전실)	물류전략실, 여수지사
연계부처	행정안전부, 해수부, 지자체 등	지자체 등	지자체 등	해수부, 지자체 등	한전, 지자체 등	해수부, 지자체 등	해상교통안전센터 등
주요 업무	<사고 총괄 지휘> ◦ 재난상황 파악·전파 및 보고 ◦ 관계기관, 지방청 등 비상 연락망 유지 ◦ 비상대책반 설치운영 – 근무조 편성 ◦ 각 실무반 활동상황 지원	<재난발생지역 유가족 대책업무 지원> ◦ 사상자 후송·처리상황 파악 및 지원 ◦ 유가족 대책업무 지원 (연락, 보상, 장례 등)	<긴급통신 관련 행정지원> ◦ 지자체와 연계하여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관련 행정지원 ◦ 자자체와 연계하여 긴급통신 장비 보급 관련 행정지원	<피해시설 응급복구> ○ 피해상황 및 응급 복구 현황 파악 ○ 재해발생지역 응급복구 장비·인력·자재 동원 ○ 피해시설 응급복구 ○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 관계기관 보유인력·장비의 지원 체계 가동	<전기 공급시설 기능 회복 지원> ○ 항만 인입 전기시설 피해 상황 파악 ○ 한전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 가동 ○ 피해시설 임시 가동 대체 장비 투입 및 응급복구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자원 지원 협조요청> ◦ 해수부, 지자체 등에 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자원 지원 요청	<재난발생지역 교통소통대책> ◦ 인근 해역 선박운항상황 파악 ◦ 사고인근 해역 운항 및 부두 접안 통제 실시 ◦ 항행안전경보 방송실시

기능	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⑩ 자원봉사관리	⑪ 사회질서유지	⑫ 수색,구조.구급	⑬ 재난수습홍보
주관부서	경영지원부	물류전략실, 물류단지부, 여수지사	경영지원부	총괄통제부 (재난안전실)	총괄통제부 (재난안전실)	홍보팀
연계부처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해양경찰서,해양환경공단 등	지자체 등	지자체 등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서, 지자체 등	지자체 등
주요 업무	<재난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및 전염병 방역서비스 지원 등> ◦ 지자체와 연계하여 재난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및 전염병 방역 서비스 지원	<재난현장 방제현장쓰레기·환경오염물질 처리 등 > ◦ 풍수해발생에 따른 해양오염 물질 종류, 특성, 유출량, 확산범위 등 파악 및 긴급방제 실시 ◦ 항만시설 등 풍수해발생 지역 해상의 부유물 및 해상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자 동원 및 배정, 기술인력 지원 요청 등> ◦ 지자체와 연계하여 재난지역 자원 봉사 관리 지원	<교통통제, 현장통제, 피해지역 치안유지 등> ◦ 인명구조 및 풍수해발생 해역 인근 주민긴급대피 지원 ◦ 사상자 신원 파악 ◦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 ◦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사망·실종자 수색 협조 요청 등> ◦ 풍수해발생에 따른 해역의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 환자 발생에 따른 응급치료 및 치료 전문병원 후송	<재난관련 언론·대국민 홍보 등> ◦ 필요시 현장 언론취재지원센터 설치 ◦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등 위기 대응 홍보

V 관계기관 주요 임무 (풍수해 : 태풍·호우·대설)

부 처	초기 대응 및 중대본 1단계 태풍 · 호우 · 대설 정보 발표시(피해발생 우려시)	중대본 2·3단계 태풍 · 호우 · 대설 주의보·경보 발표(피해발생시)	복구 단계
해양수산부 본 부	· 재난징후 감시활동 집중 강화 · 장·차관, 관련 실·국장, 담당부서 및 국가안보실, 행정안전부 등에 보고·전파	· 직원 비상소집 및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필요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등 사고대응 총괄지휘 체제 구축 · 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조치 지시, 복구대책 추진 등
지방해양수산청	· 재난징후 파악, 보고·전파(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등) 및 초동조치 · 보고체계 및 유관기관 등 과의 비상연락체계 확인·점검 등	· 재난상황 모니터링 강화 · 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본부장 : 지방해양수산청장)	· 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항만시설 피해 응급조치 및 피해확인
어업관리단	· 어업지도선 등을 통한 조업어선 안전 조치 · 재난징후 파악, 보고 및 초동조치 이행 ·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가동 등	· 출어선 신속대피 지시	· 어선 등 피해상황 파악
수협중앙회	· 양식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 양식시설물 안전관리 지도 강화	· 양식시설물 안전보호조치 지도
항만공사	· 항계 내 대기선박 경계강화 조치 · 선박 입출항 관리 및 비상 근무체계 유지	· 항계 내 대기선박 경계강화 조치 · 선박 입출항 관리 및 비상 근무체계 유지	· 항만시설 피해확인 등
국가안보실	·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분야 위기에 관한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대통령비서실	· 재난상황 종합평가, 초기·전략대응반 운영 · 대통령 지시사항 확인, 분야별 정책·전략적 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국민안정대책 등 총괄·조정	· 재난상황 종합평가, 초기·전략대응반 운영 · 대통령 지시사항 확인, 분야별 정책·전략적 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국민안정대책 등 총괄·조정	· 재난상황 종합평가, 초기·전략대응반 운영 · 대통령 지시사항 확인, 분야별 정책·전략적 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국민안정대책 등 총괄·조정
행정안전부	· 보강근무 실시(상황실, 자연재난대응과) · 상황판단회의 개최 - 비상근무 실시 여부 결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 결정 · 관계부처 및 지자체 대책회의 개최(필요시) · 태풍진로 · 호우예보 · 대설예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상황 전파	· 재난발생 초기 대응조치 총괄, 필요시 신속 지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상황보고 및 전파 · 지자체장회의를 통한 본부장 특별 지시사항 전달(대응 철저) · 중앙사고수습본부 협업 · 지원 및 총괄 · 조정 · 재난방송의 요청 · 언론 브리핑 및 대국민 담화문 발표 · 재난사태 선포 건의(필요시) · 필요시 전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 민간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계획 수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피해 상황 총괄 및 통합지원 · 특별재난지역건의 및 검토(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 피해현황 조사 및 복구대책 수립, 시행(정부합동조사단 구성, 운영) · 복구비 지원 및 지방세 감면, 재해구호기금 및 물자의 모금 · 분배 · 육·해상 수색 및 구조, 사후처리 · 대응상황 종합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발굴 · 지역주민 세금감면 등 재정적 지원 검토 · 민간 자원봉사자 지원 및 국민성금 검토(필요시)
지방자체단체	· 재난상황 접수 및 상황 판단	· (필요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기상청	· 태풍 · 호우 · 대설에 대한 기상정보 생산 및 전파	· 태풍진로 및 호우 · 대설 기상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 전파 · 대언론 및 대국민 브리핑 실시(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 중앙재난대책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사간 협조체계 구축	· 통신두절 지역 소통 지원 · 긴급 지휘 통신망 운영 지원	· 재난방송의 요청 및 지속홍보 협조 · 재난대책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사간 재난방송 지원
보건복지부	· 긴급의료지원 대책 수립 · 재해지역 방역 점검	· 응급의료 지원체계의 가동 및 지원 · 재해지역 방역대책 활동 강화	· 응급의료 지원체계의 구축 및 활용 · 재해지역 방역대책 추진
해양수산부	· 선박대피 및 항만시설 안전관리 조치 · 수산 증·양식시설 및 어망·어구 등의 안전조치 · 어항시설의 보호대책 강구	· 항만하역 및 선박 입 · 출항 통제 · 수산 증·양식시설 및 어망·어구 등의 안전조치 점검, 강화 · 소형어선 육지인양 홍보	· 수산 증·양식시설 응급복구 및 폐사 어류 제거 · 어항, 항만 시설 응급복구 추진 · 침몰선박 인양 등 피해선박 응급 복구 및 해양쓰레기 처리
경찰청	·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태세 유지 · 재난피해발생지역 질서 및 치안유지 계획 수립	· 재해지역 교통통제 및 치안유지 ·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 태풍 · 호우 · 대설피해 발생지역의 치안유지 · 인력·장비 등 피해 수습·복구 지원
해양경찰청	· 경비함정, 항공기, 중앙특수구조단 등 구조세력 긴급출동·구조태세 유지	· 특보 발표 시 규정에 따른 어선, 여객선, 유·도선 출항 통제 · VTS의 해상교통관제 강화 및 통항선박 대상 기상정보 제공 · 해양사고 시 해상 인명구조 활동	· 해양오염 발생 시 수습·복구 · 중수본, 지자체 등 요청시 인력·장비 등 피해 수습·복구 지원
소방청	· 접근곤란 예상지역 현황 파악 및 인명구조 · 대피계획 수립 · 재난지역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 중앙통제단, 지역통제단 운영 및 인명구조현황 파악 · 재난현장 특성 및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피해 발생지역 사망·실종자 수색 · 저지대 침수지역 배수활동 및 단수지역 생활급수 지원

Ⅶ. 부 록

1. 과거 피해사례

1 태 풍

가. 국 내

태풍명	기간	최대 일 강우량(㎜)	피해 지역	피해 현황	
				인명(명)	재산(억원)
재니스	'95.8.19~8.30	보령 361	경기, 강원, 충남, 충북	65	4,562
예니	'98.9.29~10.1	포항 516	경기 제외 전 시도	57	2,749
올가	'99.7.23~8. 4	철원 280	전 시도	67	10,490
쁘라삐룬	'00.8.23~9. 1	군산 645	전 시도	28	2,520
루사	'02.8.30~9. 1	강릉 870	전 시도	246	51,479
매미	'03.9.12~9.13	남해 453	서울·인천제외 전 시도	131	42,225
메기	'04.8.17~8.19	완도 377	전라, 경상, 경기, 강원	7	2,508
나리	'07.9.13~9.18	제주 598	제주, 전남, 경남	16	1,592
덴무	'10.8.9~8.12	제주 643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남, 전남, 경상, 제주	1	35
곤파스	'10.9.1~9.3	산청 141	전 시도	6	1,674
볼라벤, 덴빈	'12.8.25~8.30	진도 244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15	6,365
산바	'12.9.14~9.17	제주 405	서울·인천제외 전 시도	2	3,657
차바	'16.10.3~10.6	제주 268	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	2,150
쁘라삐룬	'18.7.2~4	울산 188	부산, 대구,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제주	1	64
솔릭	'18.8.22~24	제주 902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93
콩레이	'18.10.4~7	제주 520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549

나. 국 외

태풍명	기간	피해 지역	피해 현황	
			인명(명)	재산(조원)
베라	'59.9.21~9.28	일본 중부, 동부, 북동부	4,580	20
아이다	'58.9.20~9.27	일본 동남부	1,269	22
낸시	'61.9.7~9.17	일본 전역	191	50
볼라	'70.11.7~11.13	방글라데시	500,000	-
베이브	'77.9.2~9.12	대만, 일본, 중국 상해	17	2
앤드류	'92.8.16~8.28	바하마, 플로리다	21	25
카트리나	'05.8.23~8.30	미국 남동부(뉴올리온즈)	2,541	118
나르기스	'08.4.27~5.3	미얀마	133,600	100
쿠스타프	'08.8.25~9.1	미국 동남부, 서인도제도	138	120
이고르	'10.9.8~9.21	캐나다 뉴펀들랜드	4	1
토마스	'10.29~11.7	쿠바, 아이티	69	13
샌디	'12.10.29~10.31	미국 남부(뉴저지)	110	55
워시	'12.12.15~12.19	필리핀 남부지역	632	49
하이엔	'13.11.4~11.11	필리핀 베트남	7,890	1

2 대 설

기간	최고 적설량(㎝)	피해 지역	피해 유형
'18.3.7~3.9	봉화 10	대구, 울산, 충북, 전북, 경상	(재산피해) 비닐하우스 등 137억원 (교통통제) 부산·울산·경남 제설경험 부족으로 교통통제 등 과잉제설
'17.1.19~1.20	고성 47	서울, 세종, 강원, 충청, 전라, 경상	(교통통제) 동해고속도로, 국도7호선 정체, 세종시 이면도로 교통정체
'16.1.19~2.3	울릉 137	울릉도	(생필품부족) 제설 지연 및 풍랑으로 신선식품, 난방연료 등 운반 화물선 미운항
'16.1.23~1.25	제주산간 131 평지 16	제주	(교통통제) 3일간 항공기 통제, 체류객 86천여명, 노숙승객 4천여명 발생 공항도로 및 시내도로 교통정체
'16.1.17~1.25	정읍 37	광주, 전라, 제주	(재산피해) 비닐하우스 등 185억원
'14.12.8	울산 4	부산, 울산, 경남	(교통통제) 창원터널 진입도로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 출근시간대 교통정체
'14.12.1~12.6	태안 28	인천, 경기, 충남, 전북, 경상, 제주	(재산피해) 비닐하우스 등 145억원
'14.2.6~2.14	강릉 110	부산, 울산, 강원, 경북	(인명피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10명), 울산 공장붕괴(3명) (재산피해) 주택, 비닐하우스 등 180억원 (도로통제) 눈사태로 미시령·한계령 통제 및 차량 7개 고립
'12.12.28	경주 13	부산, 대구, 울산, 충청, 전라, 경상	(재산피해) 비닐하우스 등 89억원 (도로통제) 부산, 대구, 경남지역 교통마비
'11.2.11~2.14	동해 134	울산, 강원, 경상	(재산피해) 비닐하우스 등 360억원 (도로통제) 영동선 진부~강릉구간, 국도 7호선 산척 근덕~원덕구간
'10.12.29~ '11.1.4	영암 44	서울, 인천, 경기, 전라, 경북, 제주	(재산피해) 비닐하우스 등 383억원 (도로통제) 두목재(진도) 등 6개 구간, 포항시 전지역 교통정체
'10.3.9~3.10	대관령 110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청, 전북, 경상	(재산피해) 비닐하우스 등 240억원
'09.1.23~1.25	당진 47	경기, 충청	(재산피해) 비닐하우스 등 83억원

3 한 파

가. 국 내

연도별	한파 일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한랭질환자	사망자	농작물	시설
2013년	19일	259	13	-	
2014년	7일	458	12	-	
2015년	10일	483	26	농작물 6,131ha	
2016년	22일	441	4	농작물 : 2842ha 가축폐사 : 9,948군	농림시설 : 143.8 - 비닐하우스 123.1 - 인삼재배시설 8 - 과수재배시설 7.9 - 축사시설 4.7 - 기타부대시설 0.05
2017년	14일	632	11	농작물 : 438ha	
2018년				농작물 : 5,712ha 가축 : 꿀벌 746군	농업시설 : 18ha 축산시설 2.7ha

나. 국 외

국 가	한파 현황	비 고
일본	홋카이도 대설 눈 폭풍 5명 부상, 25중 추돌사고	‘17.2.2
대만	7~8℃ 기록(평년 15℃), 154명 저 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17.2월
몽골	한파, 최저기온 -40℃이하, 가축동사	‘17.2월
아랍에미리트	산악지역 -5℃ 기록, 적설량 10cm	‘17.2.3

2. 재난방송 관련 위기상황 전파체계

① 대국민 위기상황 홍보·전파 체계

〈 기본 방향 〉

□ 위기상황 대국민 전파 지원 요청

○ 재난방송 자막송출(DITS) 요청

- 여수광양항만공사 → 여수청 및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 NDMS 상황전파시스템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방송 표준문안과 송출기준을 함께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로 요청

○ 재난문자 전송시스템(CBS) 문자메시지 요청

- 여수광양항만공사 → 여수청 및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시·도

* 대규모 재난으로 2개 이상 시·도에 확산 우려 시

※ 민방위 관련 CBS 문자메시지 송출은 민방위과로 요청

□ 표준문안 예시

명 칭		표 준 문 안
태풍경보	4G폰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태풍 경보. 태풍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 접근금지, 논밭 관리행위 자제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2G폰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태풍경보. 해안가 등 위험지역 접근금지, 논밭 관리행위 자제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호우경보	4G폰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호우경보.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서는 가족, 이웃과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2G폰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호우경보.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 등 위험지역에서는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홍수 주의보	4G폰	[○○홍수통제소] 오늘 00:00 ○○강 ○○시(○○교)지점 홍수주의보 발령. 방송 등을 통해 홍수상황을 확인하시고, 하천변 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2G폰	[○○홍수통제소] 오늘 00:00 ○○강 ○○시(○○교)지점 홍수주의보 발령. 하천변 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홍수경보	4G폰	[○○홍수통제소] 오늘 00:00 ○○강 ○○시(○○교)지점 홍수경보 발령. 저지대 침수 및 하천범람 등의 우려가 있으니 피해에 대비 바랍니다.
	2G폰	[○○홍수통제소] 오늘 00:00 ○○강 ○○시(○○교)지점 홍수경보 발령. 저지대 침수 등 피해에 대비 바랍니다.
대설경보	4G폰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대설경보 발령. 지붕 및 집 앞 눈 치우기, 야외 활동 자제,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 차량 체인 구비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G폰	[행정안전부] 오늘 ○○시 ○○지역 대설경보. 대중교통 이용, 내 집 앞 눈 치우기, 눈길 미끄럼 주의 등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②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

□ 개 요

○ 재난(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 및 재해(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상황을 전국 방송사에 실시간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은 재난방송 의무 실시(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 시스템 체계

기상청	➡	행정안전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각 방송사
기상특보	행정망	중앙재난안전상황실	행정망	비상안전기획관실	전용회선	수도권, 지방

□ 주요기능

○ 재난방송 요청 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쳐 방송사로 자동전파

※ 전국 또는 국지적 재난별로 해당지역 방송사에 선택적 재난방송 표출 요청 가능

※ KBS, MBC, SBS, EBS, TV조선, JTBC, 채널A, YTN, MBN, 뉴스Y는 지진 등 긴급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방송 요청 시 방송사에서 자막작업을 거치지 않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TV로 송출될 수 있는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구축 운영

□ 발송절차

소관 부처	
위기상황 발생 시 재난방송 지원 요청	• NDMS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 재난방송을 통한 위기상황 및 대국민 행동요령 전파 요청 ※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송출 문안을 함께 작성하여 방송지원 요청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재난방송 요청 검토 및 통보	•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DITS) 활용 - 부처에서 요청한 위기관련 자막송출을 검토하여 방통위에 재난방송 요청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 재난온라인방송시스템(EDBS) 활용 - 즉시 연계되어 있는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

각 방송사	
위기상황 및 국민행동요령 자막방송 송출	• 신속하게 통보받은 위기상황 및 국민행동요령을 자막방송으로 송출

⬇

국민
위기상황 인지 및 대응

③ 긴급 재난문자 방송 서비스(CBS: Cell Broadcasting Service)

□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 및 제6항,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 시스템 개요

○ (**구축/운영**) ‘06.6~9월(2G폰), ‘12.9~12월(4G폰) / ‘06.12월

○ (**송출목적**) 휴대폰으로 전국 또는 해당지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등 신속 전파

○ (**대상단말**) CBS 기능이 탑재된 2G, ‘13.1.1 이후 신규출시 4G 휴대폰

※ 3G 사용자는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수신

○ (**송출용량**) 1회 송출 시 최대 230여자

※ 경보음 동시 송출, 기지국단위에서 전국단위까지

○ (**송출비용**) 무료(통신사와 업무협약, ‘04.12월)

< 발송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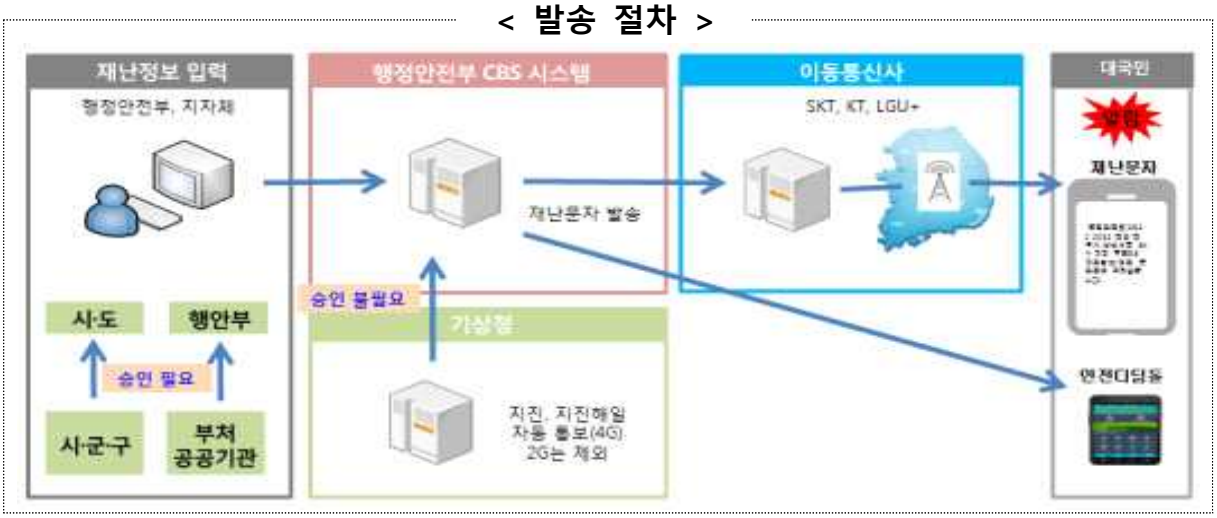

※ 지진, 지진해일은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2G는 행안부 시스템 활용)

□ 주요기능

○ 수신자 수와 관계없이 대량으로 실시간 동시에 전달

○ 이동 중에도 휴대폰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재난정보 수신

□ 긴급재난문자(CBS) 송출절차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	• 재난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활용

⬇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17개 시·도	
이통사에 긴급재난문자 송출 요청	• 긴급재난문자(CBS) 시스템 활용 - 이통사 기지국을 통해 2G, 4G('13년 ~) 재난문자 송출요청 ※ 3G, 4G('11~'12년) 안전디딤돌 앱, 설치수신

⬇

해당 기지국	
수신자에 문자 전송	• 기지국 단위로 수신자 수에 관계없이 시·군·구 지역별로 대량전달 - 기지국 단위로 문자 60자 내외 전송

⬇

휴대폰 가입자	
위기상황 인지 및 대응	• 실시간 동시전달, 휴대폰 재난정보 수신

④ 국가재난관리(NDMS) 상황전파시스템

□ 상황전파시스템 개념

○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간 재난상황의 실시간 전파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모든 재난발생 상황전파에 유용한 시스템

□ 상황전파시스템 구축현황

○ 재난상황정보와 대응지시 등을 메신저 기반으로 실시간 전파

※ 상황전파 범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산하기관

(2015.6월말 기준)

구분	합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정부산하기관
기관수	**344**	40	246	17	41
사용자수	**16,983**	2,797	13,128	540	518

□ 시스템 개념도

□ 메시지 작성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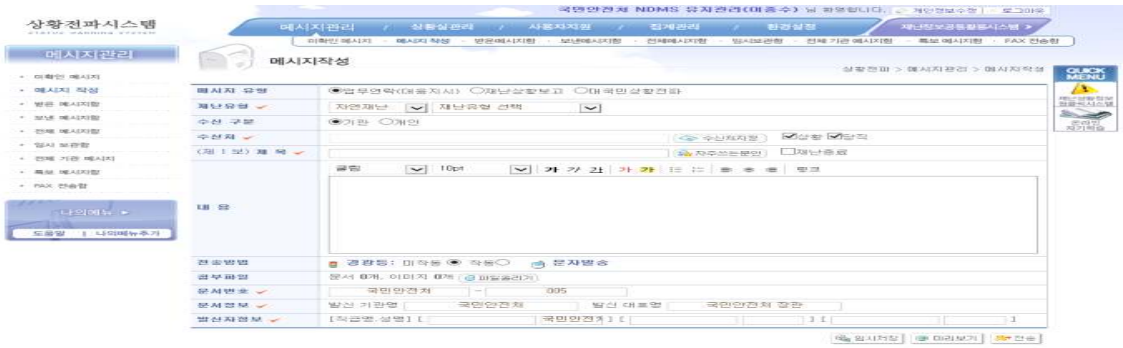

3. 영상회의 시스템

□ 개 요

○ **(목적)** 해양수산부, 긴급구조기관(소방·해경),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황 공유, 범정부적 신속 대응

○ **(연결기관)**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279개 기관과 연결

구분	연결기관(279개 기관)
중앙 (26)	•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 해양수산부 등 18부 • 5청(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245)	•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연계
재난관리 책임기관 (8)	•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화학물질안전원, 질병관리본부

※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영상회의 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참석

□ 영상회의 운영

○ **(대상회의)** 초기상황판단회의, 상황판단회의, 비상대책본부회의* 등

* (비상대책본부) 해양수산부, (비상대책반) 각 지방청 및 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상황 초기단계 및 비상대책본부(해양수산부), 비상대책반(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운영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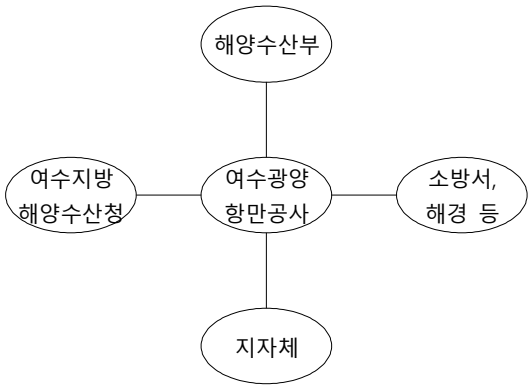

※ 재난의 규모 및 대응단계 등에 따라 영상회의 참여기관은 변동 가능

○ **(참 석 자)** 회의 참석대상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판단

* (해양수산부 장·차관 주재 시) 비상대책반장(여수광양항만공사장) 참석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 주재 시) 총괄통제부장(재난안전실장) 참석

○ **(회의내용)** 재난의 규모에 따른 조치방향 및 재난관리 단계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총괄·조정

- (대비태세) 중앙·현장(지역) 지휘·보고체계 구축, 재난 대비 실무 매뉴얼 등 대응계획 점검, 재난 상황대응체계 강화 및 긴급전파 체계 유지
- (협력·지원체계) 관계기관 재난상황 전파·공유 등 협력체제 가동, 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및 민간 구조세력 현황점검 및 동원체제 구축
- (대응조치) 재난수습에 필요한 구조·지원 세력 지휘, 비상대책반 설치 등 사고대응 총괄지휘 체제 구축

□ 운영 절차

여수광양항만공사	• 회의계획 수립(참여기관 선정) 및 영상회의연계 요청 • 영상회의 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참석
영상회의 연계 요청	
⬇	
해양수산부(비상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유선 연락*하여 영상회의 연계 및 운영 요청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자연재난팀원(044-205-1551)
영상회의 연계 및 운영	
⬇	
참여기관 영상회의	• 재난발생현황, 대비태세, 협력지원체계, 대응조치 등 점검을 통한 총괄·조정
상황 공유 및 논의	

4. 기상특보 발표기준

종류	주 의 보	경 보
강풍	육상에서 풍속 14㎧ 이상 또는 순간풍속 20㎧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17㎧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 이상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풍속 21㎧ 이상 또는 순간풍속 26㎧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풍속 24㎧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해상에서 풍속 21㎧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폭풍해일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폭풍해일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총 강우량이 200㎜이상 예상될 때 ③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5. C/C별 작업허용 풍속기준

구 분	C/C 번호	작업허용 풍속	비 고
○ 광양항 1단계 (8대)	111(민) 112(민) 121(민) 122(민) 131(민) 132(민) 141 142	16㎧	(민) : 운영사 소유
○ 광양항 2단계1차 (7대)	151 152 161 162 154(민) 155 156	20㎧	(민) : 운영사 소유
○ 광양항 2단계2차 (8대)	171 172 173 174 175 176 801 802	20㎧	
○ 광양항 3단계1차 (9대)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20㎧	

6. 풍수해 대비 단계별 체크리스트

단 계	활 동 항 목	활 동 내 역	점검	담당반
1.예방	1-1 일반시설	○ 항만시설 등의 기능유지를 위한 수시 점검·정비		소관부서
		○ 재난위험 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 강화		
		○ 계류시설 등은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안전상 취약 및 손상된 시설물은 유지보수 계획수립 시행		
		○ 창고,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은 태풍기 이전에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여 취약부분 보수·보강 등 조치하고, 배수 및 포장상태가 불량한 야적장은 보수 조치		
		○ 강풍에 의한 건축물의 낙하물 방지대책 수립		
		○ 건물이나 지하시설 등에 방수문 및 방수판을 설치, 침수피해 예방		
	1-2 하역장비	○ C/C는 작업풍속 초과시는 작업 중단하고 TieDown, 스토이지 핀에 계류하며, 레일과 바퀴사이에 쐐기로 고정		
		○ 작업풍속(16㎧) 초과시 T/C 등을 안벽 후방으로 이동 후 Tie Down 등에 계류		
	1-3 건설공사 현장	○ 수방단 편성 운영 및 태풍기 대비 점검 실시		
		○ 태풍 등에 취약한 시설은 가급적 태풍기 이전에 완공 또는 완성단면으로 시공되도록 공정계획 수립 시행		
		○ 재해발생에 대비한 중장비 동원 등 응급복구 방안 강구		
		○ 재해위험요소를 점검하여 필요한 방재자재의 확보 여부 점검		
		○ 절개지 비탈면 토사 유출 방지시설 설치		

단 계	활 동 항 목	활 동 내 역	점검	담당반
2.대비	2-1 관심	○ 기상청 등을 통한 태풍 발생 징후 감시 활동		총괄 통제부
		○ 비상대책반 설치 · 운영 준비		
		○ 사전대비 조치사항 지시 · 확인		
		○ 비상근무 협조체계 및 대비상황 점검		
		○ 하역장비, 운영시설 및 화물 등 안전관리 강화		소관부서
		○ 운영사 및 공사현장 등에 대한 수방단 및 비상연락망 점검		
		○ 재해취약요소 점검		
		○ 사전대비 조치사항 점검		
		○ 선박대피협의회 참석 준비		
	2-2 주의	○ 태풍동향 파악 및 기상정보 수집, 전파		총괄 통제부
		○ 운영사, 시공사 등에 기상상황 전파		
		○ 비상대책반 설치 및 운영 준비		
		○ 비상근무 행정 지원 - 비상대책반 설치, 차량, 급식 및 필요물품 지원		지원부
		○ 직원 비상연락망 확인		
		○ 운영시설 등 피해예상지역 순찰 강화		운영 대책부
		○ 선박대피협의회 참석 및 선박 피항조치		
		○ 항내 재박선박 및 작업선박 현황 파악		
		○ 접안선박 안전조치 강화		
		○ 창고 및 야적장에 장치되어 있는 화물 중 후방 수송이 가능한 화물은 최대한 반출		
		○ 안벽으로부터 월파에 의한 화물 침수 예상 구역에 화물 적재를 금지		
		○ 계속 장치가 필요한 화물은 철저히 고박		
		○ CY에 장치된 컨테이너는 3단(공컨테이너는 2단) 이내로 장치		

단 계	활 동 항 목	활 동 내 역	점검	담당반
2.대비	2-2 주의	○ 운영시설 및 장비 안전점검		운영 대책부 (소관부서 현장확인)
		- 유휴 C/C는 Tie Down 및 스토이지핀에 계류하고 레일과 바퀴사이에 쐐기로 고정		
		- T/C, Y/T는 작업완료된 경우 후방으로 이동		
		- 방충재, 계선주 등 선박 이접안 시설 점검		
		- 창고시설 점검(누수여부, 출입문 단속 상태등)		
		○ 시설물 안전관리		복구 대책부
		- 유·무선 통신시설		
		- 창고, 전력, 조명 시설 점검		
		- 종합변전소 비상전원 확보		
		○ 공사현장 안전관리		
		- 붕괴 위험이 있는 시공중인 시설물 보강		
		- 유실 우려가 있는 기계, 가설물 등은 철거하거나 보강		
		- 공사 전면 중지		
		· 준설선 및 해상공사작업 장비의 대피		
		· 육상장비 특히 크레인의 전도방지와 침수 예상지역의 장비 대피 여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대리인 등 필수요원 현장상주		
	2-3 경계	○ 태풍 정보 입수, 분석, 전파, 기록유지		총괄 통제부
		○ 업무 전반의 통제 및 조정		
		○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대응상황 파악 및 통보사항 전파		
		○ 비상근무 행정지원(차량, 급식 등) 여부		지원부
		○ 하역작업 전면 중단		운영 대책부
		○ 일반화물은 최소 태풍영향권 진입 이전에 창고입고 또는 반출		
		○ CY 장치장 컨테이너 적치상태 점검		
		○ 화물운송 차량은 일정한 곳에 대피		

단 계	활 동 항 목	활 동 내 역	점검	담당반
2.대비	2-3 경계	○ 장비 안전 조치		운영 대책반 (소관부서 현장확인)
		- 작업중인 C/C는 Tie Down 및 스토이지핀에 계류하고 레일과 바퀴사이에 쐐기로 고정		
		- T/C는 안벽후방으로 이동후 Tie Down등에 계류		
		- Y/T 및 샤시 안벽 후방지역에 계류		
		○ 항만순찰 강화		
		- CY, 배후단지시설 등 점검		
		- 창고시설 점검(누수여부, 출입문 단속 등)		
		○ 공사현장 안전점검 및 조치		복구 대책부
		- 가설시설물 등 피해우려 시설 점검		
		- 피해우려 자재, 장비 대피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대리인 등 필수요원 현장상주		
		○ 시설물 점검		
		- 유・무선 통신시설 점검		
		- 전력・조명시설 점검(배전시설, 변압기 등)		

단 계	활 동 항 목	활 동 내 역	점검	담당반
2.대비	2-4 심각	○ 재해발생상황 종합 및 보고		총괄 통제부
		○ 태풍의 진로 및 영향 파악		
		○ 실무반별 소관사항 피해 확산방지대책 강구 지시		
		○ 비상대책반 운영 및 상황파악·기록 유지		
		○ 실시간 실무반별 추진상황 및 기상정보 정리/보고		
		○ 비상근무 행정지원(차량, 급식 및 필요 물품 지원)		지원부
		○ 접안선박 및 화물 등 피해 상황조사		운영 대책부
		○ 운영시설 순찰강화 및 재박 선박의 구난 대책 강구 시행		
		○ 운영시설 및 공사중인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재확인		복구 대책부
		○ 운영시설 및 공사현장 피해조사 및 피해 확산방지 조치		
		○ 시설물 피해발생시 응급복구 시행		
		○ 공사현장 등 순찰 강화		

단 계	활 동 내 역	점검	담당반
3.대응	○ 태풍정보 파악 및 기상상황 전파		총괄 통제부
	○ 태풍 피해현황 종합적 관리		
	○ 재해발생 현황 파악 보고 및 기록유지		
	○ 비상근무 강화 지시		
	○ 운영시설 순찰강화		운영 대책부
	○ 화물 등 피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및 피해 상황 확인		
	○ 장치화물에 대한 고박작업 등 태풍대비 작업 실시		
	○ 하역장비·시설 등의 안전관리 점검·확인		
	○ 창고 출입문 등 쇄정 조치		
	○ 접안선박의 하역 중단 확인		
	○ 운영시설 및 공사현장 피해상황 확인		복구 대책부
	○ 피해시설의 응급조치를 위한 시설물 점검		
	○ 피해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현장에 복구대책부를 파견하여 점검 및 복구방안 수립		
	○ 공사현장 비상근무 확인		
	○ 피해(사고) 발생 시		지원부
	- 보도자료 제공 여부		
	- 사고 관련 보도내용을 스크랩, 모니터 하여 사실 여부 확인		
	- 오보, 왜곡, 과장 시 적극 해명하여 확산 방지		
	- 필요 시 브리핑 등 실시		

7. 언론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 목 표

ㅇ 위기상황 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피해자를 배려하는 한편,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공사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음

□ 기본 원칙

ㅇ 신속성: 공사는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신속히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ㅇ 일관성: 공사의 메시지는 하나의 목소리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ㅇ 개방성: 공사는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위기단계별 점검 사항

위기단계		점검사항
위기 전 (pre-crisis)		ㅇ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에 따른 교육훈련 ㅇ 재난 예방 및 보도에 관한 언론 협조사항 숙지 ㅇ 언론사 및 기자 명단 보유
		ㅇ 온, 오프라인 위기 징후 파악 모니터링 및 상황 분석
위기(crisis)	위기발생	ㅇ 위기관리(본부) 대책 회의 - 위기 비상체제 가부 결정 - 위기의 경중에 따라 위기관리 본부 설치 여부 결정 - 응급임무 부여/비상근무 개시
		ㅇ 여론모니터링 - 오보, 유언비어 파악 및 브리핑 보도 현황 점검 - 온라인 여론동향 파악 및 SNS 대응현황 점검
		ㅇ 대변인 지정 및 위기관리소통센터 구성

		ㅇ 본부 및 현장에 취재지원센터(브리핑실) 설치
		ㅇ 위기 언론대응 - 기자 연락 - 브리핑 준비 및 실시(관계부처 협의) - 보도자료 배포 - 재난방송협의회 운영 -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 설치 요청 - 주관방송사와 국가기간 통신사 활동 협력, 지원 - 재난안전 전문가 풀(pool) 공유 등
		ㅇ 위기 온라인 미디어 대응 - 온라인 매체, 영향력자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 ㅇ SNS 활용 위기상황 및 행동요령 실시간 전파 - 공식 브리핑자료 활용
		ㅇ 홍보 전문 부서(국민소통실)와 협력
	위기진행	ㅇ 언론의 정보 요구사항 파악
		ㅇ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관계부처 협의)
		ㅇ 오보 및 유언비어 대응
		ㅇ 온라인 소통 협력체계 구축 및 SNS 활용 정보 공유
		ㅇ 공동취재단 구성 및 언론 현장 취재지원
		ㅇ 기관장, 전문가 등 브리핑 추진
위기 후 (post-crisis)		ㅇ 결과 브리핑 - 온・오프라인 전파・확산
		ㅇ 위기 대응 평가 및 사례 자료집 발간 - 위기관리소통센터 활동 분석 및 평가 - 여론분석
		ㅇ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선방안 마련
		ㅇ 회복 프로그램 - 상황관련 개선방안 - 내부조직원 결속프로그램 - 대외공중 회복프로그램 - 언론사 및 주요 공중, 관계자에 감사서신 발송 - SNS 활용 재발방지 약속 등 대국민 메시지 전파

□ 대변인 지정 및 위기관리 소통센터 역할

○ 대변인 지정

- 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자(공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

* 각 대변인은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복수로 하고 1, 2, 3 순위를 정해 미리 정해둠.

○ 대변인 지위 · 역할

- 대외적으로 유일한 공식 창구
- 위기관련 모든 회의 참석, 상황을 장악하고 관련기관 간 메시지 조율
- 브리핑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홍보 활동 시행

○ 위기관리소통센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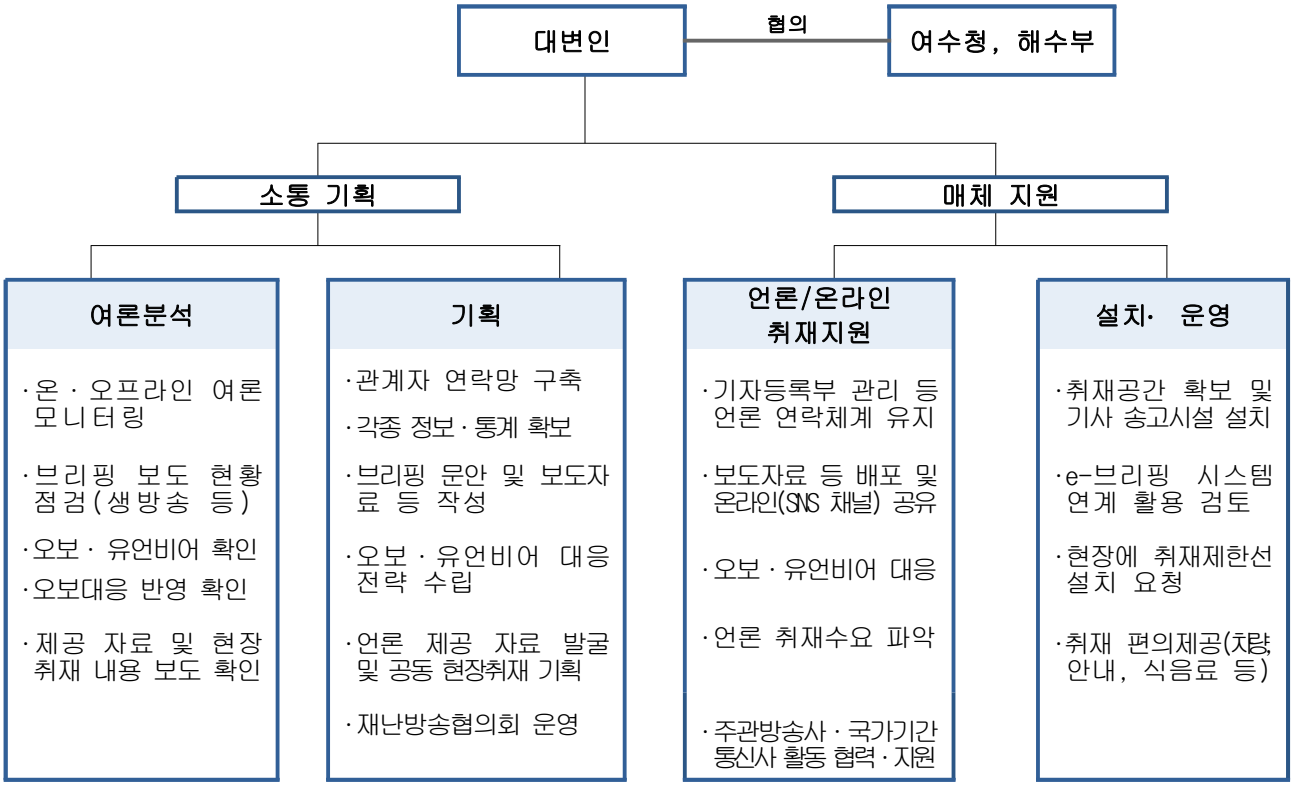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기준

가.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되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브리핑하라

ㅇ 위기 시 초기 발표가 공사의 신뢰를 좌우한다.
- 첫 발표는 확인된 사실만을 발표 한다.
- 확신이 없는 사안은 확인해서 알려주고, 추측성 답변이나 주관적 견해, 정보의 부분적 유출은 추후 불필요한 논란과 부정확한 보도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 감염병 등 진행 중인 위기의 경우 사태 추이 등을 예단하는 발언은 자제한다.
-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숫자 인용 등 데이터 오류는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과 언론의 신뢰를 잃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 한다.
-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재 파악된 바 로는', '잠정', '몇시 경', '회사 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ㅇ 초기 사고원인, 피해상황에 대한 언급은 신중을 기한다.
- 주관적 판단이 결부된 추측성 답변, 예단하는 발언은 혼란을 부추기고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답변을 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사고 원인, 피해상황은 현재 조사 중',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 등의 표현을 사용 한다.

ㅇ 문서로 작성한 발표 자료만 브리핑한다.
- 초기에 대변인이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리된 자료만을 기초로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창구를 단일화하고 한목소리를 유지하라.

ㅇ 여러 채널을 통해 상호 모순되는 정보가 제공되면 공사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 정보는 반드시 공식 대변인을 통해 전달하고 필요시 대변인 승인

하에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 한다.

※. 대변인은 모든 회의에 참석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 상황을 장악

- 여수청, 해양수산부와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여 유지한다.

○ 다른 조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삼간다.

- 다른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 조율을 거쳐 발표하도록 한다.
-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열거나 핫라인을 통해 입장을 사전 조율해야 한다.

다. 언론은 최대한 준비한 뒤 대하라

○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언론 및 온라인(소셜미디어 여론) 모니터를 통해 여론·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해야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 전체 홍보 상황을 고려해 핵심 메시지, 정부 입장 등을 발표문으로 준비하고 언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정리해 둔다.
-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 상에서 생겨나는 각종 루머, 비판, 유사 및 거짓 정보 등을 적시에 발견 정리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확하게 초기 해명함으로써 소멸시키는 활동들을 지속해야 한다(지속적인 공식 해명 자료 배포 등)

○ 브리핑 등 대언론 설명 직전까지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최신 정보 및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라. 피해자 등 국민 정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발언, 행동하라

○ 위기 시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발언이나 행동은 국민적 공분을 낳는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한다.
- 공사 임직원의 태도나 행동이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을 유념하면서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한다.

- 공사의 입장이 아닌 국민·언론 등 제 3자적 입장에서 메시지를 생각하고 냉정하게 평가한다.
-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해야한다.

ㅇ 사람 중심 시각에서 언론에 브리핑하고 설명한다.

- 인적 피해는 물적 피해에 앞서 언급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며 진솔한 애도와 위로를 표명한다.

마. 언론 및 온라인(소셜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라.

ㅇ 기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제 3자의 정보에 의존하게 돼 오보 가능성이 높아진다.

- 기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 언론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켜야한다.
- 상황이 허락하고 논란이 없는 사안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안전·보안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취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언론에 충분한 이해를 구한다.
- 사진·영상 자료 등을 다양하게 확보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로 제공한다.
- 공식 브리핑 자료들은 민감한 부분만을 제외하고, 정부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ㅇ 사태 해결을 위해 공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조치가 상황에 맞춰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바. 모든 정보를 공식화하라

ㅇ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는 지켜지기 어렵고, ‘노코멘트 (No Comment)’는 문제가 있거나 숨기고 있다는 암시를 준다.

ㅇ 최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불가피하게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 오보 및 유언비어에는 즉각 대응하라

ㅇ 오보가 한번 보도되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첫 오보에 대응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오보가 이어지며, 유언비어는 SNS, 댓글 등을 통해 교차 인용되며 급속히 확산되므로 정확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온오프라인 수시 모니터링으로 오보 및 유언비어를 신속하게 확인한다.
- 오보의 경우 담당 기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이나 반론 보도를 요청한다.
- 보도 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 온라인에 해명 글을 게재한다.
- 명백한 오보임에도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 위기 발생 시에는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기 브리핑, 보도자료, 온라인,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 등을 통해 공사의 해명 메시지들이 충분히 메시지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아. 위기관련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라.

ㅇ 위기 시 언론이 접촉하는 전문가 의견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주요 전문가 및 관련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 주요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 중심의 온라인 네트워크 연락망을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를 교류하고 조언을 구한다.

자. 외신 기자 취재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ㅇ 외신 보도는 대외적 국가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내외신 보도는 상호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 외신 담당관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외신에 대한 취재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 브리핑이나 현장 방문 풀(Pool) 구성 시 외신 기자를 포함한다.

차. 국민들의 주의와 행동이 요구되는 경우, 대응 요령에 대한 메시지를 쉽고 간단하게 제작해 활용하라.

ㅇ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하여 국민들의 주의나 행동 지침이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메시지나 홍보물은 최대한 간단 명료해야한다.

□ 브리핑 및 취재 지원 기준

가. 브리핑 전 사전 리허설을 가져라

ㅇ 언론의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언급을 삼가야 할 주제나 용어 등을 미리 파악해 둔다.

나. 브리핑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라

ㅇ 기자들의 위기 시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정보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다. 쉽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

ㅇ 전문용어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약어 사용을 삼가고 발표 내용을 직접 인용해 기사화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브리핑한다.

- 용어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 그림·사진 및 영상 등을 함께 제공한다.

라.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결론부터 말하라

ㅇ 편집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다. 답변 내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답변을 한 번 더 되풀이 한다.

마. 질문에 얽매이지 마라

ㅇ 질문이 잘못된 사실이나 가정을 전제로 한 경우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확언 요구 등 답변이 곤란한 경우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등으로 언급한다.

바. 인터뷰에서는 핵심 중심으로 간략히 말하라

ㅇ 방송 인터뷰의 경우 편집되지 않도록 10초 내에 짧게 답변하고 준비되지 않은 돌발 인터뷰는 삼간다.
- 한 번 잘못 언급한 말은 지속적으로 방송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사. 위기대응 활동의 설명에 도움이 되는 인사와 자료를 활용하라

ㅇ 현장 지휘책임자, 기관장 등의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기회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 알려질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마라

ㅇ 부정적 사안이라 할지라도 알려질 사실이라면 숨기지 말고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전후 사정과 맥락을 충분하게 설명한다.

자. 정직이 최우선이다

ㅇ 공사가 위기 상황에서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체에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임한다.

차. 미디어 트레이닝을 평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ㅇ 평소에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 및 질의응답 대응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카. 현장을 질서 있게 관리하라

ㅇ 언론의 보도 경쟁이 과열될 경우 공익과 무관한 자극적·선정적 뉴스가 양산되고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 사고 현장에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필요시 적절한 안내 조치를 취한다.
- 필요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풀(Pool) 기자들이 공보담당자의 인솔 하에 현장을 방문, 취재하도록 안내한다.

타. 언론을 공평하게 대하라

ㅇ 특정매체에만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취재기자 리스트에 근거해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파. 복장은 정복이나 비상근무복을 착용하라

ㅇ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변인이 아닌 경우에도 브리핑, 기자회견 참석자는 이 원칙을 준수한다.

<붙임1>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장소) o 사고현장에 가깝고 취재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o 현장 대책본부 활동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분리된 곳 o 충분한 공간(취재진 규모 예상) 확보 (시점) 현장 사고대책본부 설치와 동시 (기능) o 수시 상황브리핑 실시 및 보도자료 배포 o 언론 상황파악 및 대응 o 취재 송고시설 및 행정서비스 지원 o 사고현장 안내 및 취재제한선 준수 협조 (취재지원팀의 배치) o **언론지원** 담당 - 기자등록부 관리 등 언론연락체계 유지 - 보도자료 등 배포(이메일, 문자, SNS 등) - 언론 요구사항 파악(공동 현장취재 수요 파악 및 현장 안내 등) o **센터 설치·운영** 담당 - 브리핑실·기자실 등 취재공간 확보 및 기사송고시설 설치 ※ 현장에서 송고시설 등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가장 가까운 장소 및 시설 확보 - 현장에 취재제한선(폴리스라인/포토라인) 설치 요청 - 공동 현장취재 등 이동용 차량 준비, 취재진 편의 제공 ※ 구비물품 리스트 : 마이크, 백드롭, 책걸상, 화이트보드, 발표대, 전화, TV, 컴퓨터, **인터넷** 등 송고시설, 취재기자 등록부, 프린터, 팩스, 필기구, 지도, 음료수 등

<붙임2>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작성 탬플릿

메시지 작성 시 필수 고려 사항

타깃 (공중, 오디언스)	메시지의 목적	전달 방법(매체)
- 위기(사건)에 대한 관여 정도 - 인구통계적 특성 - 피해규모(정도)	- 진행상황/사실 전달 - 집회/연설 등 - 현재 상황 설명 - 루머대응 - 미디어 응대	- 신문 보도자료 - 홈페이지 게재 - 대변인발표(TV, 현장발표) - 라디오 - 소셜미디어 - 기타(전화 응대 등)

메시지 기본 요소 (사과문, first response)

피해자에 대한 배려
사건개요 (6하 원칙) -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사건의 원인 규명 노력 천명(구체적)
원상회복 노력 천명

<붙임3> 위기 원인과 유형별 유의 사항

상황	사실(fact)	인식(perception)
공사의 책임이 높은 경우	ㅇ 현 시대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위기 발생 시 위기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능동적 대처가 필요 -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예: 공중의 불확실성 감소, 타당성 검증 요구에 적극 대응 및 정보 공개) - 위기 前, 위기 中 그리고 위기 後 등 각 단계 별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대응 커뮤니케이션 - 내부 공중, 소속 부서들 간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한 위기 해법 및 대안 모색 - 조직 전체가 협력하여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ㅇ 특히 위기 발생 원인이 공사에 있어 공사의 책임이 높은 경우,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응 필요 - 신속한 사건 경위 전달 - 사과 및 책임감 표현 -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전달 - 관계 개선 노력 - 이미지 개선 노력	ㅇ 위기 발생의 원인이 공사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책임이 높다고 인식되는 경우,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위기 대응 필요 - 위기를 회피하기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 돌파 혹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 필요 - 적극적인 정보 공유도 중요. 위기원인 공개, 상황 공유 등 잘못 알려진 정보를 정확하게 정정 - 신속한 위기관리팀 구성운영 - 종합하면,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공유를 통한 언론의 오보와 유언비어 및 루머를 최소화 하고 호의적인 언론보도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공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하도록 소통 ㅇ 분야별 전문가 그룹 등과 같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 방안 모색 필요 ㅇ 공사 신뢰 회복을 위한 상시 커뮤니케이션 활동 모색 - 참여형 소통 방안 -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적극 활용
타 주체와 공사의 공동책임인 경우	ㅇ 타 주체와의 공동책임인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소통의 전략들 필요. 다만, 그 이외에 추가로 유의해야 할 부분은 타 주체와의 통일된 커뮤니케이션 필요 - 단일화 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메시지 통일 - 위기 단계별 상황에 부응하는 소통 - 위기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황분석 필요	ㅇ 발생한 위기가 타 주체와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우, - 초기 위기 상황, ‘정보의 공백기’에서 적극적인 정보공유 필요 - 불필요한 소문 확산을 막고, 초기 이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위기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 필요 ㅇ 평상 시 신뢰감을 확고히 하는 평판관리 필요

<붙임4> 공사출입기자 현황

	언 론 사	성 명	E-mail	핸 드 폰
1	KBS	윤주성	yjs@kbs.co.kr	010-9120-0344
2	MBC	김종수	milo7771@ysmbc.co.kr	010-3608-1587
3	KBC	이상환	shlee81@ikbc.co.kr	010-3214-7001
4	CJ아라방송	서채리	chaeri.seo@cj.net	010-4019-4003
5	CBS	최창민	ccmin@cbs.co.kr	010-4624-8015
6	복지TV	이영춘	mb603@hanmail.net	010-5536-8126
7	광양경제신문	홍봉기	lovein9654@naver.com	010-2680-9654
8		이지성		
9		조경심		
10	광양만신문	황망기	genews@hanmail.net	010-3034-7749
11		전한준		
12		양재생		
13	광양신문	김 호	christinajo@hanmail.net	010-4732-3651
14		김영신		
15		이정교		
16	광양시민신문	박주식	mkih@naver.com	010-4630-1854
17		최인철		
18		신장환		
19		주아라		
20	광양시대신문	김윤선	gymnews@naver.com	010-2666-3856
21		문성필		
22	광남일보	김귀진	ttexta@hanmail.net	010-4621-9909
23	무등일보	이승찬	giant1kim@hanmail.net	010-7907-9638
24	광주매일신문	허선식	yskim0966@naver.com	010-7156-0966
25	광주일보	김대수	shado262@naver.com	010-4418-7677
26	전남매일	정상명	taein@gycitizen.com	010-3626-9797
27		우성진		
28	전남일보	김춘호	hwakae72@hanmail.net	010-9445-7278
29	남도일보	윤종채	maesil41@hanmail.net	010-4288-4037
30		최연수		
31	광주타임즈	박종선	gycitizen@hanmail.net	010-6339-8064
32		이승현		feelcorea@hanmail.net
33	광전매일신문	신선호	feelcorea@hanmail.net	010-9443-0002
34		장연식		

35	호남일보	김덕성	lkkjin@naver.com	010-9090-8447
36	호남신문	김승호	lsc6100@hanmail.net	010-9707-0119
37	전남도민일보	황경석	newssun7979@naver.com	010-4615-7979
38		오승택		
39	광전일보	김명식	naruter007@hanmail.net	010-3624-0412
40	남도투데이	김계수	jndn4200@hanmail.net	010-8256-3339
41	전광투데이	신영식	jndn4200@hanmail.net	010-2630-1628
42	교차로신문	이보람	chkim2580@hanmail.net	010-8622-7007
43	선경일보(서울)	김정의	yjc@namdonews.com	010-7747-1918
44	산경일보(서울)	전영규	karma4@daum.net	010-3690-1328
45	시민일보(서울)	강승호	gjt2525@hanmail.net	010-3269-5676
46	서울매일(서울)	이계현	gjt2525@hanmail.net	010-5607-3100
47	내외일보	박상동	9779sun@naver.com	010-2707-9779
48	도민일보	이문석	-	010-2581-9859
49	연합뉴스	형민우	honamilbosa@naver.com	010-6850-0013
50	뉴시스	김석훈	ksh9083@hanmail.net	010-2300-9083
51	뉴스1	서순규	wogusduwls@hanmail.net	010-3606-1335
52		지정운		
53	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	2580@jndomin.kr	010-2080-6002
54		유성진		
55	동양뉴스통신	강종모	kjnews2007@hanmail.net	010-9721-2600
56	nsp통신	홍철지	namdo2030@naver.com	010-2999-1401
57		김성철		
58	내외뉴스통신	정광훈	sik0068@naver.com	010-4925-0544
59		박한규	shr5525@hanmail.net	010-4068-3782
60		배태성	5570jk@hanmail.net	010-3626-5570
61	KNS뉴스통신	방계홍	사:yg223@hanmail.net jk2020@jwooriilbo.com	010-3601-1935
62	국제뉴스	김정산	kim2687200@hanmail.net	010-8304-2000
63		김대석	leekh6707@naver.com	010-6693-8864
64	서울뉴스통신	이철수	naewoeilbo@chol.com	010-4500-3977
65	KJA뉴스통신	이기원	jlms1024@hanmail.net	010-3830-1084
66	한국방송뉴스통신	이승준	minu21@yna.co.kr	010-3715-9198
67	경향신문(동부지역)	배명재	scoop@hanmail.net	010-5623-0230

68	동아일보(동부지역)	이형주	sk@news1.kr	010-4535-5115
69	조선일보(동부지역)	조홍복	jwji@news1.kr	010-9886-8575
70	서울신문	최종필	gbs7080@naver.com	010-5543-7080
71	중앙일보(동부지역)	최경호	sakda@naver.com	010-3622-3768
72	국민일보(동부지역)	김영균	6071017@hanmail.net	010-9602-7798
73	한국일보(동부지역)	하태민	desk3003@nspna.com	010-6585-3003
74	한겨레신문	장선희	kimsc7777@naver.com	010-4621-7777
75	중도일보	이창식	kps2042@hanmail.net	010-5124-0009
76	세계일보	한승하	kps2042@hanmail.net	010-2610-7840
77	아시아투데이	나현범	taesung.bae777@gmail.com	010-4575-2906
78	일간투데이	김민재	chunsapan2@naver.com	010-3137-5630
79	아주경제	박승호	sskim2580@naver.com	010-9528-7767
80	서울일보 (광양만권뉴스)	손태성	-	010-3883-3063
81	시대일보	최정오	snakorea@gmail.com snakorea.rc@gmail.com	010-6772-4654
82	신아일보	김청수	kjanews365@naver.com	010-3080-3693
83	아시아일보	김재오	happy0096@hanmail.net	010-4814-3557
84	전국매일	서길원	ninaplus@kyunghyang.com	010-2612-3270
85		강재순		
86		나영석		
87	환경일보	임 묵	peneye09@donga.com	017-610-9988
88	헤럴드경제	박대성	powerbok@chosun.com	010-8889-7137
89	아시아경제	장봉현	choijp@seoul.co.kr	010-2622-5166
90	에너지경제신문	전만오	choice1972@paran.com	010-9117-4686
91	머니투데이	서순규	ykk222@hanmail.net	010-6644-5560
92	메트로경제	송기호	hagijaa@hanmail.net	010-3628-6800
93	한국경제신문	임동률	yuhjk122@hanmail.net	010-5694-1020
94	매일일보	이 준	mediacnc@hanmail.net	010-4767-8975
95	브릿지경제	정 원	hsh62@segye.com	010-5571-8123
96	프레시안	김동언	kynews@paran.com	010-6507-6182
97		(전정신)		
98	프라임경제	송성규	news3323@naver.com	010-4611-3323

99	광양만권뉴스	송성규	shpark0099@hanmail.net	010-3874-7694
100		강복수		
101		박재형		sts8000@hanmail.net
102	광양만투데이	정경화	chi8833@naver.com	010-4615-8833
103	작은뉴스	김민재	choung47@hanmail.net	010-3162-0650
104	뉴스메이커	최창윤	wodh57@naver.com	010-2817-5900
105	전남조은뉴스	조순익	sgw3131@hanmail.net	010-3609-3131
106		김길한		
107		김휘복		
108	데일리저널	박종덕	jaesoon1970@hanmail.net	010-5685-4033
109	NBN남도방송	조승화	ysn@jeonmae.co.kr	010-4479-6713
110	한국타임즈	김성윤	limm2262@hanmail.net	011-626-2262
111		권차열		sklgkt@naver.com
112	동부타임즈	양재봉	argusl1945@gmail.com	010-3622-7450
113	아침신문	이경우	ekn24@daum.net	010-4467-7867
114	시사종합신문	장민규	sk@news1.kr	010-4535-5115
115	뉴스포커스	강종모	wkdpc@naver.com	010-4045-1234
116	더코리아	양민철	exian@hankyung.com	010-9883-8570
117	tbnews	임보환	99720km@naver.com	010-2000-1267
118	시사포커스	이철행	weeoney@viva100.com	010-7681-1255
119	시사신문사	조일상	kde3200@daum.net kde3200@naver.com	010-3377-2200
120	리얼타임뉴스	정영재	facensp@daum.net	010-5152-0502
121		정운광		
122	GBS방송	임만규	ssgssg0717@hanmail.net	010-7640-9791
123	GNB24	박광수	news11@chol.com	010-3633-2757
124	전남인터넷뉴스	이승준	hkbs0124@korea.com	010-5415-0417
125	뉴스웨이	오영주	miskaru@naver.com	010-2610-1851
126	미디어코리아	이윤수	jkhky@hanmail.net	010-3622-9898
127	NEWS동서남북	서우석	news3323@naver.com	010-4611-3323
128	kPn 한국시민뉴스	송만영	desk0223@naver.com	010-5351-0223
129	KBN대한방송	여운기	-	010-9656-1383
130	전라도뉴스	안병호	eqoff@naver.com	010-9658-0008
131		이형은	khuibok@hanmail.net	010-3477-8018

132	전남타임즈	이혜일	jdp8064@paran.com	010-3626-8064
133	YBC연합방송	황의준	frinell@hanmail.net	010-2699-0607
134	HBS한국방송	강성우	7635836@hanmail.net	010-9030-5836
135	HBS호남방송	김도영	chadol999@hanmail.net	010-8607-2722
136	프라임경제신문	장철호	yjb66@nate.com	010-3388-2200 011-626-3000
137	WBC복지TV광주방송	백형모	jlms1024@hanmail.net	010-8859-8859
138	WBC복지TV전남방송	이지영	sisatotal@hanmail.net	010-2830-2713
139	다문화포커스	김학수	6071017@hanmail.net	010-9602-7798
140	전남뉴스	박홍신	thekorea@daum.net	010-7166-7990
141	채널INN뉴스	정선웅	multiis@yahoo.co.kr	010-9272-1112
142	DBS동아방송	유상길	rtlch5208@hanmail.net	010-9146-5612
143	참살이뉴스	김용수	jjcom12@naver.com	010-8587-2288
144	연합인터넷신문	김용전	-	010-3663-6368
145		오대일	-	
146	한국NGO뉴스	김용규	-	010-6608-1742
147	호남매일	김용수	whddnd220@naver.com	010-5408-5826
148	미디어호남	김정환	ceo@gnb24.com	010-6478-8524
149	호남투데이	손봉선	happy0096@hanmail.net	010-4814-3557
150		김종삼		
151		이부규		
152	세계타임즈	이채봉	2840917@naver.com	010-3621-2859
153	전남투데이	임채균	news11@chol.com	010-5618-8222
154		최정완		
155		조 용		
156		장형문		
157	새한일보	정형득	6029002@hanmail.net	010-9471-5558
158	전남뉴스피플	오재환	sinmun1492@hanmail.net	010-4607-8605
159	로컬투데이	김윤선	o7997@hanmail.net	010-2884-0001
160	파인뉴스	최재승	nib21@hanmail.net	010-2033-6001
161	투데이광주	박지원	ok7930@hanmail.net	011-9621-7930
162	광주데일리뉴스	최철	boss061@naver.com	010-4613-8886
163	이뉴스투데이	송덕만	huj12@ybctv.net	019-602-0130

164	뉴스깜	송우영	ok7934@hanmail.net	010-9166-5224
165	오마이뉴스	이성훈	hada13@hanmail.net	010-4618-2446
166	뉴스호남	길래환	jch2580@gmail.com	010-6611-4699
167	광양타임즈	문다복	wbcity@naver.com	010-2628-0324
168	CNBC뉴스	김영만	i-wbc@hanmailnet	010-9293-5674
169		이희경		
170	한국공보뉴스	강승호	mcfocus@naver.com	011-752-9013
171		최화운		
172	시민의소리	박병모	sun9447@hanmail.net	010-2024-4545
173	옴부즈맨뉴스	유석동	into2552@naver.com	010-3190-2552
174	굿모닝호남	김원종	ysg0005@naver.com	010-4182-0005
175	미디어타임즈	이기현	yongsu530@hanmail.net	010-6810-9995
176	남도시사타임즈	김광호	yj-1342@hanmail.net	010-5222-1342
177		정철훈		
178	광주전남일보	임천식	yhpinews2477@naver.com	010-6460-2477
179	플래시뉴스	김유신	yoong0108@naver.com	010-2302-2063
180	호남뉴스24	김재윤	honamnews@hanmail.net	010-3114-2090
181	미디어한국	염진학	news-media@naver.com	010-6710-0071
182	한국농어촌방송	위종선	jeonmae5242@naver.com	010-2818-6767
183	광양청년신문	정종호	kjong1009@naver.com	010-5124-1013
184		이승현		
185	경찰일보,국정일보	이상만	-	010-3633-3110
186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news@thesegye.com	
187	GNN뉴스통신 미디어코리아	조광제	-	010-3083-9600
188	GBS방송	차범준	-	010-2029-0009
189	㈜소셜뉴스	노해섭	-	010-5606-3101
190	펀딩뉴스	김대영	janghmoon@hanmail.net	010-3461-1377
191		이선미		pshinys@hanmail.net
192	뉴스핌	박우훈	fan0815@paran.com	010-4660-1164
193		오정근	fan0815@paran.com	mokpoktm@hanmail.net
194	시사저널	박칠석	470choi@hanmail.net	010-9912-4055
195	한국검찰신문	장성태	today-gi@hanmail.net	010-5280-5545

196	BBS 광주불교방송	진재훈	gdn2000@naver.com	010-6548-3570
197	추적 사건25시 스포츠닷컴㈜	이기장	dm1782@naver.com	010-5555-1782
198	내일뉴스	이형권	wjsrhkd52@naver.com	010-9817-0404
199		문경화		
200	㈜여수신문	김병곤	sinawi@hanmail.net	010-8601-2276
201	NG TV	조준성	master@newshonam.com	010-3610-3309
202	월간 여행스케치	이정민	bok7072@naver.com	010-9608-0057
203	KJB방송(장애인신문)	이동구	my13509@hanmail.net	010-9475-5278
204		이선주	like-art@hanmail.net	010-9617-8135
205	㈜뉴스21 (민영통신사)	박강수	seongho300@hanmail.net	010-8304-2000
206	교육연합신문	윤창훈	-	010-3102-6612

8. 외국인 사상자 관련 주한 공관 상황 전달 체계

□ 목 적

○ 주관기관은 국내 체류 외국인 신변 보호 및 국가 간 신뢰 강화를 위해 대형 재난 발생 시 외국인 사상자 인적정보를 각 국 대사관에 통보

>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 **제37조(사망, 후견, 재산관리, 난파 및 항공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통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관계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 동 당국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a) 파견국 국민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망이 발생한 영사관할구역 내의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는 것

□ 통보내용

○ 사상자 인적사항(이름, 나이, 국적 등), 부상정도, 주요 조치사항 등

□ 통보절차 및 역할

○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책임기관**

- (여수광양항만공사)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의한 외국인 사상자 정보 입수 및 전달

* 외국인 사상자 정보 입수 시 해양수산부(비상대책본부) 및 여수지방해양수산청(비상대책반)에 공유

** 해양수산부(비상대책본부) 및 여수지방해양수산청(비상대책반)은 외국인 사상자 정보 입수 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공유

○ **(행정안전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외국인 사상자 정보 입수 시, 그 정보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전달

- **(국제협력담당관실)** 각 국 대사관과 외국인 피해현황 공유 및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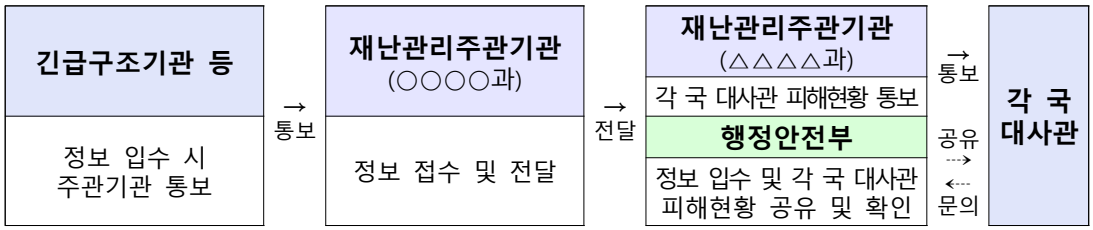

□ 사건 통보 예시 (해경)

○○해양경찰서

(○○○○ Korea Coast Guard)
전화(Telephone) : 000
팩스(Fax) : 000

수 신(To) : 베트남 대사관

제 목(Subject) : **사고사실 통보(Accident Notification)**

1. 변사자(Personal Details of the deceased)

성 명(Name) : 000

생년월일(Date of Birth) : 0000.00.00생

여권번호(Passport No.) : 0000

국적(Nationality) : 베트남

2. 발생 일시 및 장소(Date & Place of occurrence)

발생일시 : 2000.00.00. 00:00경

발생장소 : 00-00.00N 000-00.00E(○○○도 남방 00 해리)

3. 발생 개요(Details of the incident)

2000. 00. 00. 00:00경 00-00.00N 000-00.00E(광양항 낙포부두 해역)에서 어선 203현진호가 전복된 것을 인근을 항행하던 어선이 발견하여 신고한 것임

4. 경찰 조치(Actions taken by the police)

- 제203현진호 승선원 8명 중 6명 구조(1명 사망/5명 생존)
- 제203현진호 선원인 위 대상자는 광양시 사랑병원 후송, 저체온증 외 건강상태 양호함

사법경찰관(Officer in charge) 경위 **000**

9. 국민행동요령 - (태풍·호우·대설)

태풍 호우

태풍·호우 예보시 행동요령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에서 태풍·호우가 예보된 때에는 사전에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파악하여 이웃과 공유하고, **어떻게** 대피할지 생각하고 태풍·호우가 발생되기 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태풍·호우 예보시

1. 태풍이나 호우의 진로 및 도달시간을 파악해서 **어떻게** 대피할지를 생각합니다.
   -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어떻게** 할지를 준비합니다.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안전디딤돌)을 통해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2.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에서 야영이나 물놀이를 멈추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위험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공간이나 붕괴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건물 등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한 다음 안전한 곳으로 이동 **할** 준비를 합니다.
3. 주택이나 차량 등 재산보호를 위해 사전에 어떻게 할지를 **가족이나 지역주민과** 함께 준비합니다.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등은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전에 결박하고,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합니다.
   -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주변에 있는 차량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가족과 함께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습니다.
   - 지역 주민들과 함께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이나 농경지 등에서는 기상 특보가 발령되기 전까지 모래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하여 정비합니다.
   - 가족이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은 버팀목이나 비닐끈 등으로 견고히 묶고, 농경지는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 가족이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선박이나 어망·어구 등은 사전에 결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사장, 비탈면이 있는 지역은 미리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합니다.
4.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을 준비하여 재난발생에 대비합니다.**
   - 비상시 신속히 응급용품을 가지고 이동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낭 등에 모아둡니다.
   - 상수도 공급 중단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둡니다.
   -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랜턴, 양초, 배터리 등을 구비해 둡니다.
   - 긴급 상황 정보수신을 위해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고, 가까운 동사무소 등과의 긴급 연락망을 확인합니다.
5. 약속, 일정 등을 조정하고 주변에 알립니다.
   - 태풍, 호우가 예보된 날은 일정을 조정하고, 외출은 자제하며, 주변에 알려 줍니다.

태풍·호우 특보 중 행동요령	태풍·호우가 시작된 때에는 이웃들과 함께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집안에서는 외출을 삼가며 이웃이나 가족 간의 연락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주변에 알려줍니다.

태풍·호우 특보 중

1. 나와 가족, 지인들의 안전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 태풍·호우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청취하여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을 지속 관찰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 외부에 있는 가족, 지인, 이웃들과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정보 등을 공유합니다.
   - 차량으로 이동 중에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지하차도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역이나 침수위험지역은 접근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2. 건물, 집안 등 실내에서의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사전에 **가족들이 함께** 확인합니다.
   -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실내에서는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도록 하고 안전조치를 합니다.
   - 침수의 위험이 없는 지역에서는 바람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급적 욕실과 같이 창문이 없는 방이나 집안의 제일 안쪽으로 이동하고 안전조치를 합니다.
   -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고 안전조치를 합니다.
   - 정전 시에는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양초를 사용하지 말고 휴대용 랜턴, 휴대폰 등을 사용합니다.
3.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피합니다.
   - 태풍·호우 특보가 발효된 지역의 해안가, 상습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권고를 받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합니다.
   - 태풍·호우 시에는 개울, 하천변,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고, 농촌지역에서도 논둑이나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습니다.**
   - 이동식 가옥이나 가시설, 지하실 등에 거주할 경우에는 단단한 건물로 즉시 이동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지역을** 알려줍니다.
   - 선박은 사전에 항구에 결박하고, 운행 중인 경우 주변에 있는 선박이나 해경에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태풍의 이동경로에서 최대한 멀리 대피합니다.

태풍·호우 이후 행동요령	태풍·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이웃들과 함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가까운 동사무소 등에 피해를 신고하여 보수·보강을 하도록 합니다.

태풍·호우 이후

1. **가족 및 지인**의 안전 여부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가족 및 지인과 연락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합니다.
2. **태풍 및 호우로** 인한 피해여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노후주택 등은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입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합니다.
   -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합니다.
   -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와 복구할 때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합니다.
   - 침수된 도로, 교량, 보도 등은 파손되었을 수 있으므로 건너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합니다.
   - 하천 등 제방은 무너질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합니다.
   - 고립된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물가 등을 건너지 말고, 119 또는 112 등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합니다.
3. **태풍 및 호우로** 인한 2차 피해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방지합니다.
   -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에는 기름이나 동물사체 등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합니다.
   - 수돗물이나 저장 식수는 오염여부를 확인 **한** 후에 사용합니다.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합니다.
   - 침수된 주택은 **가스와**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와** 한국전기 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합니다.
   - **태풍 및 호우** 피해로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시키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쓰러진 농작물을 일으켜 세우고, 침수된 **논과 밭은** 배수 시 작물에 묻은 **흙 앙금과 오물** 등을 깨끗한 물로 제거하고 병해충을 긴급 방제합니다.

집중호우

평 상 시
행동요령

호우는 하천범람, 산사태,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 사전준비

1. **과거에 발생했던** 내 지역의 정보는 미리미리 확인하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공유합니다.
   - 내가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의 홍수, 침수(저지대), 산사태, 해일 등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2. 재난에 대한 위험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함께 준비합니다.
   - 호우 등 기상특보나 홍수, 산사태 등 재난 예·경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TV, 라디오 청취 가능하도록 하고 스마트폰 앱(안전디딤돌) 등을 미리 설치합니다.
3. 비상시에 대비하여 가족과 사전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정합니다.
   - 비상시를 대비하여 지역에 대피할 장소(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나 지자체 홈페이지의 임시대피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등 참고)와 안전한 이동 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어린이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 가족이 각각 이동할 때를 대비하여 다시 만날 장소를 사전에 정합니다.
4. 비상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안전한 이동방법, 대피요령 등을 숙지해 둡니다.
   - 비상상황이 예견될 때에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즉시 연락해서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이 급박할 경우에는 즉시 그 자리를 피하고 가족과는 따로 연락해서 자신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 피난길에는 하천변, 산길 등 위험한 지름길은 피하고, 도로나 교량이 휩쓸려간 길은 지나지 않도록 합니다.
   - 이동 길에 전신주나 변압기 등의 주변은 피하도록 합니다.
5.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들이** 함께 비상용품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라디오, 핸드폰 충전기, 휴대용 버너, 담요 등 비상용품을 사전에 한 곳에 구비해 두고,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휴대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의 연료를 미리 채워 둡니다. 차량이 없을 경우 **에는** 차량이 있는 가까운 지인과 사전에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약속해 둡니다.
6. 재난에 대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비를 함께 합니다.
   - 비상용품의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교체하고, 대피장소, **대피경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합니다.

호우특보 예보시 행동요령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호우특보가 예보된 때에는 사전에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파악하고, 호우가 **발생하기** 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호우특보 예보시

1. 호우의 진로 및 도달시간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파악합니다.
   -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대비합니다.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안전디딤돌)을 통해 기상상황을 파악합니다.
2.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 산간·계곡, 하천, 방파제 등에서 야영이나 물놀이를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지하공간이나 붕괴우려가 있는 노후주택·건물 등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 준비를 합니다.
3. 주택이나 차량 등 재산보호를 위해 **사전에 어떻게 할지를 가족이나 지역주민과 함께 준비합니다.**
   -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건물이나 농경지 등에서는 기상 특보가 발령되기 전까지 모래 주머니, **물막이 판** 등을 이용하여 정비합니다.
   - 공사장, 비탈면이 있는 지역은 미리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합니다.
4. **가족과 함께 비상용품을 준비하여 재난발생에 대비합니다.**
   - 비상시 신속히 응급용품을 가지고 이동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낭 등에 모아둡니다.
   - 상수도 공급 중단의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둡니다.
   -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랜턴, 양초, 배터리 등을 구비해 둡니다.
   - 긴급 상황 정보수신을 위해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고, 가까운 동사무소 등과의 긴급 연락망을 확인합니다.
5. 약속, 일정 등을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조정합니다.
   - 호우가 예보된 날은 일정을 조정하고, 외출은 자제합니다.

호우 중 행동요령	호우가 시작된 때에는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집안에서는 외출을 삼가며 이웃이나 가족 간의 연락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호우특보 중

1. 나와 가족, 지인들의 안전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 호우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청취하여 내가 있는 지역의 상황을 지속 **관찰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 외부에 있는 가족, **지인, 이웃들**과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정보 등을 공유합니다.
   - 차량으로 이동 중에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고,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지하차도 등 급류에 휩쓸릴 수 있거나 침수위험지역은 접근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줍니다.**
2. 건물, 집안 등 실내에서의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사전에 **가족들이** 함께 확인합니다.
   -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만지지 않고 안전조치를 합니다.**
   - 정전 시에는 **가족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양초를 사용하지 말고 휴대용 랜턴을 사용합니다.
3. 위험지역은 접근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피합니다.
   - 호우 특보가 발효된 지역의 해안가, 상습침수지역, 산간·계곡 등 위험지역에 있거나 대피권고를 받을 경우에는 **즉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합니다.**
   - 호우 시에는 개울, 하천변,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고, 농촌지역에서도 논둑이나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습니다.
   - 이동식 가옥이나 가시설, 지하실 등에 거주할 경우에는 단단한 건물로 즉시 **이동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지역을 알려 줍니다.**

호우 후 행동요령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이웃 등 주변의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가까운 동사무소 등에 피해를 신고하여 보수·보강을 하도록 합니다.

호우 이후

1. 가족 **및** 지인의 안전 여부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가족 및 지인과 연락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합니다.**
2. 호우로 인한 피해여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노후주택 등은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입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합니다.**
   -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합니다.**
   -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와 복구할** 때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합니다.**
   - 침수된 도로, 교량, 보도 등은 파손되었을 수 있으므로 건너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합니다.**
   - 하천 등 제방은 무너질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합니다.**
   - 고립된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물가 등을 건너지 말고, 119 또는 112 등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합니다.**
3. 호우로 인한 2차 피해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방지합니다.
   -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에는 기름이나 동물사체 등 오염된 경우가 많으므로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합니다.**
   - 수돗물이나 저장 식수는 오염여부를 확인 **한** 후에 사용합니다.
   -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는 식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합니다.**
   - 침수된 주택은 가스,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합니다.
   - 호우 피해로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시키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호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미리 습득합니다.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2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주거시설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3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044)205-6366, http://www.mois.go.kr
- 기상청 02)2181-0503, http://www.kma.go.kr
- 고용노동부 044)202-7746, http://www.moel.go.kr
- 보건복지부 044)202-2652, http://www.moe.go.kr
  (질병관리본부 043)719-7265, http://www.cdc.go.kr)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474, http://www.mafra.go.kr
- 농촌진흥청 1544-8572, http://www.rda.go.kr
- 해양수산부 044)200-5617, http://www.mof.go.kr
- 교육부 044)203-6355, http://www.moe.go.kr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

태풍 · 호우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하지않고,**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합니다.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공사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꼬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습니다.

Emergency Response Guidelines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mergency Response Guidelines
Typhoon/ Heavy Rain

Avoid dangerous places such as flood-prone areas and landslide hazard areas; evacuate to a safe place.

Close doors and windows and check weather conditions through TV, radio, and the Internet instead of going out.

Do not go near inundation hazard areas such as brooks, streams, and shores, where you may get swept away by the rapids.

Hikers in mountains and valleys must evacuate to a safe place rather than go near valleys or slopes.

Do not go near construction sites due to falling construction materials.

In rural areas, do not go out to check rice paddy levees or inlets for irrigation.

国民行动要领

행정안전부

台风·暴雨

避开经常浸水的地区、山崩危险地区等
危险的地方，逃到安全地区。

在室内关紧门窗，不外出，
通过TV、广播、网络等确认气象情况。

在溪边、河边、海边等浸水危险地区，
有可能被急流卷走，请勿靠近。

山和溪谷的登山客不要靠近溪谷或陡斜面，
逃到安全的地方。

由于工程材料有可能倒塌，请勿靠近工地附近。

在农村，不要为了检查田埂或水口而外出。

国民行動要領

台風・豪雨

浸水しやすい地域、山崩れの危険地域などの
危険な場所は避け、安全な場所に避難しましょう。

屋内ではドアと窓を閉め、外出は控え、
テレビ、ラジオ、インターネットなどで気象情報を
確認しましょう。

小川のほとり、河川敷、海岸などの浸水の危険地域は、
急流に流されるおそれがありますので、
近づか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山と渓谷の登山客は、渓谷や傾斜面に近づかずに、
安全な場所に避難しましょう。

工事資材が倒れるおそれがありますので、
工事現場には近づか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農村では、畔や田んぼの水口の点検のために
出かけないようにしましょう。

Hướng dẫn hành động toàn dân

Bão, mưa lớn

행정안전부

Tránh các nơi nguy hiểm như khu vực thường xuyên ngập nước, khu vực có rủi ro sạt lở, sơ tán đến nơi an toàn.

Ở trong nhà, đóng cửa ra vào và cửa sổ, không ra ngoài, kiểm tra tình hình khí tượng qua TV, đài và internet.

Không tới gần các khu vực có khả năng bị ngập như ven sông suối, ven biển vì có thể có nguy cơ bị cuốn đi

Khách leo núi không đến gần các bờ suối hay các sườn dốc, sơ tán tới nơi an toàn.

Vật liệu xây dựng có thể bị rơi xuống, nên không tới gần các công trường

Ở nông thôn, không ra ngoài để kiểm tra đồng ruộng, mương nước

เคล็ดลับการปฏิบัติเมื่อเกิด

พายุไต้ฝุ่น• ฝนตกหนัก

평상시 대설대비

대설은 짧은 시간에 급격히 눈이 쌓이게 되므로 눈사태, 교통 혼잡, 쌓인눈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다음과 같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준비합니다.

사전준비

1. 내 지역의 정보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미리 확인하고 공유합니다.

- 내가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의 눈사태, 붕괴위험시설물 등 재해위험요소는 과거 피해 자료를 통해서 사전에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합니다.

2. 재난에 대한 위험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준비합니다.

- TV, 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기상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여 대설, 풍랑 등 기상특보나 눈사태, 시설물 붕괴 등 재난 예·경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합니다.

3.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지 약속을 정합니다.

- 비상시를 대비하여 지역 대피장소(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나 지자체 홈페이지의 임시대피소, 이재민임시주거시설 등 참고)와 안전한 이동 방법에 대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숙지하고, 어린이 등 재해약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 가족이나 이웃이 각각 이동할 때를 대비하여 다시 만날 장소를 사전에 정합니다.

4. 비상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안전한 이동방법, 대피요령 등을 자세히 알아둡니다.

- 비상상황이 예견될 때에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즉시 연락해서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황이 급박할 경우에는 즉시 그 자리를 피하고 가족과는 따로 연락해서 자신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5.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용품을 사전에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준비합니다.

-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라디오, 핸드폰 충전기, 휴대용 버너, 연료, 담요 등 비상용품을 사전에 한 곳에 구비해 둡니다.
-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연료를 미리 채워 둡니다. 차량이 없을 경우 차량이 있는 가까운 지인이나 이웃과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약속해 둡니다.

6. 재난에 대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합니다.

- 비상용품의 유효기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교체하고, 대피장소, 대피경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정비합니다.

대설 예보 시 행동요령

TV, 라디오, 인터넷 등에서 대설이 예보된 때에는 사전에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파악하고, 대설이 발생되기 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취하도록 합니다.

대설 예보 시

1. 대설지역 및 지속시간 등을 파악해서 언제, 어떻게, 누구와 대피할지를 생각합니다.

-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언제, 어떻게, 누구와 무엇을 할 지를 준비합니다.
-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통해 기상상황을 파악하여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2. 산간 고립지역 · 붕괴 위험시설물 등 위험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 눈사태 위험지역, 노후주택 등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의 주민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위험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 준비를 합니다.
-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수단을 이용합니다.
- 눈피해 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휴대합니다.

3. 주택이나 차량 등의 보호를 위해 사전에 어떻게 할지를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대비 합니다.

- 선박이나 어망·어구 등은 사전에 결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 수산 종 · 양식 시설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합니다.
- 공사장, 비탈면이 있는 지역은 안전 상태를 미리 확인합니다.

4. 비상용품 준비 등 재난 발생에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대비합니다.

- 비상시 신속히 응급용품을 가지고 이동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낭 등에 모아둡니다.
-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욕조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둡니다.
-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랜턴, 양초, 배터리 등을 구비해 둡니다.
- 긴급 상황 정보 수신을 위해 긴급 연락체계를 유지합니다.

5. 약속, 일정 등을 조정합니다.

- 대설이 예보된 날은 외출을 자제합니다.
- 부득이 외출 시에는 몸을 따뜻이 유지하기 위해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습니다.
- 눈길 및 빙판길 운전을 피하고, 이동이 필요할 시에는 비상구호품 및 장비를 챙깁니다.

대설 특보 중 행동요령

눈이 많이 내릴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을 할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의 월동 장비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보온 유지를 위해 외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합니다.

대설 특보 중

1. 일반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 눈이 많이 올 때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보행로와 지붕 및 옥상에 내린 눈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치워 사고를 예방합니다.
- 노후가옥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쌓인눈의 무게로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점검과 보강을 하고, 고립이 우려되는 지역은 경찰서, 관공서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 외출 시에는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 장갑 등을 착용하여 체온을 유지합니다.
- 출·퇴근을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하고, 자가용 대신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2. 자동차 운전 중에는 가족이나 동승자가 함께

-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용 안전장구(체인, 염화칼슘, 삽 등)를 휴대합니다.
- 차량으로 장거리 이동 시에는 월동장비, 연료, 식음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기상상황을 미리 확인토록 합니다.
-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 구간 등에서는 특히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서행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합니다.
- 차량 이동 중 고립되었을 때에는 가능한 수단을 통해 구조 연락을 취하고, 동승자와 함께 체온을 유지하고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깨어있어야 하며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거나 색깔 있는 옷을 눈 위에 펼쳐 놓아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차량이 고립·정체된 경우 되도록 차량에서 대기하고, 부득이 차량을 벗어날 경우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둔 채로 대피합니다.

3. 농·어촌, 공장 등에서는 가족이나 이웃, 직원이 함께

- 비닐하우스, 가설 건축물 등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미리 점검하고, 지붕에 눈이 쌓이기 전에 치워 두거나, 받침대 등으로 미리 보강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 농촌에서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곳은 비닐을 걷어내고, 수산 종·양식장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합니다.
- 공장, 시장 비가림 시설, 주거용 비닐하우스, 창고 등 가설 패널을 이용한 구조물은 쌓인눈의 무게에 취약하므로 직원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대설 후 행동요령	큰눈이 멈춘 후에는 주변의 피해를 확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에 신고하여 보수·보강을 하도록 합니다.

대설 이후

1. 가족 및 지인의 안전 여부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가족 및 지인과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2. 대설로 인한 피해 여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노후주택 등은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입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은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 또는 복구할 때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둡니다.
- 고립된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운전하여 이동하지 말고, 119 또는 112 등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대설로 인한 2차 피해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방지합니다.

- 대설 후, 한파가 이어져 빙판이 생길 수 있으니 외출 시 따뜻하게 옷을 입고 미끄럼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 가스, 전기가 차단되었을 때,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합니다.
- 대설로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점검 후에 출입하도록 합니다.

대설 후 행동요령

큰눈이 멈춘 후에는 주변의 피해를 확인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에 신고하여 보수·보강을 하도록 합니다.

대설 이후

1. 가족 및 지인의 안전 여부를 주위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가족 및 지인과 연락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실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2. 대설로 인한 피해 여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확인합니다.

-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노후주택 등은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입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 여부를 확인합니다.
- 파손된 시설물(주택, 상하수도, 축대, 도로 등)은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 파손된 사유시설을 보수 또는 복구할 때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둡니다.
- 고립된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운전하여 이동하지 말고, 119 또는 112 등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대설로 인한 2차 피해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방지합니다.

- 대설 후, 한파가 이어져 빙판이 생길 수 있으니 외출 시 따뜻하게 옷을 입고 미끄럼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 가스, 전기가 차단되었을 때,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에 사용합니다.
- 대설로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하고, 성냥불이나 라이터는 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은 점검 후에 출입하도록 합니다.

대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 등에서 정보를 미리 습득합니다.

1 위기상황, 긴급상황 시 신고전화

- 재난신고 119, 범죄신고 112, 민원 상담 110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42~3

2 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임시피난시설 등 안내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www.safekorea.go.kr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3 유관기관 연락처 및 홈페이지

- 교 육 부 044-203-6263, http://www.mohw.go.kr
-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474, http://www.mofra.go.kr
- 국토교통부 044-201-3918, http://www.molit.go.kr
- 해양수산부 044-200-5617, http://www.mof.go.kr
- 경 찰 청 02-3150-2856, http://www.police.go.kr
- 소 방 청 044-205-7621, http://www.nfa.go.kr
- 기 상 청 02-2181-0501, http://www.kma.go.kr
- 해 경 청 044-205-2345, http://www.kcg.go.kr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

대설

산간 고립 우려 지역에서는 식량, 연료 등 비상용품을 준비합니다.

내 집 앞 눈을 수시로 치웁니다.

스노체인, 염화칼슘, 삽 등 차동차 월동용품을 준비합니다.

개인 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차량이 고립된 때는 119에 신고하고, 차 안에서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확인하며 구조를 기다립니다.

Emergency Response Guidelines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eavy Snow

For people in mountainous or isolated areas, prepare emergency supplies such as food and fuel.

Remove snow in front of your house as often as possible.

Prepare winter car emergency kits such as snow chains, calcium chloride, shovels, etc.

Use public transportation rather than private cars.

Drive a car at a low speed and keep a safety distance.

Call 119 when your car is isolated; check weather conditions on TV, radio, and the Internet in the car while waiting for rescue.

国民行动要领

大雪

행정안전부

担心被孤立的山区准备好粮食、燃料等
应急用品。

随时清扫自家门前的雪。

准备好防滑链、氯化钙、铁锹等汽车过冬用品。

减少私家车的使用，利用公共交通。

驾驶车辆时，低速驾驶并确保安全距离。

车辆被孤立时，拨打119举报，
在车内通过TV、广播、网络等
确认气象情况，等待救助。

国民行動要領

大雪

행정안전부

山間孤立危険地域では、食料や燃料など
非常用品を用意しましょう。

自宅前の雪をこまめに除雪しましょう。

スノーチェーン、塩化カルシウム、スコップなど
自動車の防寒対策用品を用意しましょう。

自動車の利用を控え、
公共交通を利用しましょう。

運転の際は低速運転し、
安全距離を確保しましょう。

車内に閉じ込められたときは、119番通報をし、
車内でテレビ、ラジオ、インターネットなどで
気象状況を確認しながら救助を待ちましょう。

Hướng dẫn hành động toàn dân

Bão tuyết

행정안전부

Các khu vực có nguy cơ bị cô lập như vùng núi cao, cần chuẩn bị các vật dụng khẩn cấp như lương thực, nhiên liệu

Thường xuyên dọn tuyết trước cửa nhà

Chuẩn bị sẵn các vật dụng dành cho trời tuyết trên xe ô tô như muối rắc tan tuyết, xích bọc lốp đi tuyết, xẻng

Hạn chế đi xe ô tô riêng, sử dụng phương tiện công cộng

Khi lái xe, chạy với tốc độ thấp và giữ khoảng cách an toàn

Khi xe bị cô lập, báo lên 119, kiểm tra tình hình khí tượng qua TV, đài, internet trên xe, chờ cứu hộ tới.

เคล็ดลับการปฏิบัติเมื่อเกิด

หิมะตกหนัก

10. 해양분야 재난대비 대응요령

1. 관심단계(상시 대비단계)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가. 선 박

1) 항해선박

○ 기상정보를 분석하고 태풍 발생여부 확인(선박직원)

○ 통신기기 및 구명설비 상태를 점검(선박직원)

○ 선체·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철저(선박직원)

2) 정박선박

○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통신망 유지(선박직원)

○ 기관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정비 점검(선박직원)

○ 선박과의 충돌로 선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업체, 선박직원)

○ 선박관련 업체와의 비상연락망 유지(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 상륙선원 비상연락망 유지 및 선내 순찰실시(업체, 선박직원)

나. 항만시설

1) 하역시설

○ 민간방재단 편성 및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 각종 하역 장비별 피해 예방대책 수립(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 크레인 전도 방지용 tie-down device 등 안전장치 점검(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 기상특보 시 하역시설별 피해예방 대책 시행(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2) 항만 운영시설

○ 민간방재단 편성 및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 임항창고,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은 태풍내습기 이전에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 보수·보강 시행(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 야적장은 배수 및 포장상태가 불량한 곳은 즉시 보수·보강(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 항만운영 시설별 피해예방 대책 수립(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 재해발생 예상지역 순찰 강화, 사고대비(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3) 부두·방파제 시설

○ 민간방재단 편성 및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비(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 간단한 복구로 피해확대를 막을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인근공사 시공업체를 통해 우선 보강조치(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 재해발생 예상지역은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대비(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 항만 내 방파제 등 해안가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전표지판 설치 및 구명설비 비치 등 안전관리(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4) 항만공사 현장

○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은 가급적 태풍기 이전에 취약부분의 주요 공정이 우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공(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 피복석, TTP 등 보강자재 현장인근에 사전 확보(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

수광양항만공사)

○ 재해발생에 대비한 중장비 동원 등 응급복구 방안강구(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 부실 현장지역 발견 시 시·군(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연락하여 복구조치(업체)

○ 민간방재단 편성 및 비상연락망 유지(시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 붕괴 등 위험요소를 점검, 필요한 방재 자재의 확보(시·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2. 주의·경계단계(사전 대비단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 종합정보 중 예비 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표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 가동이 필요한 단계

가. 선 박

1) 항해선박

○ 기상정보를 분석하고 태풍진로 파악(선박직원)

○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항해(선박직원)

○ 통신기기 및 구명설비 상태 점검·정비(선박직원)

○ 선체·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선박직원)

○ 항내 피항을 대비하여 인근 항만상황을 파악(선박직원)

○ 항해선박에 항만 입출항 항행정보 제공(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항만별 선박 대피능력 확인(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 긴급 상황 시 단계별로 조치계획을 확인하고 대피능력 확인(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2) 정박선박

○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통신망 유지(선박직원)

○ 기관은 가동하여 유사시 즉시 대응준비(선박직원)

○ 선박과의 충돌로 선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대책강구(업체, 선박직원)

○ 선박대피협의회 참석, 항내 정박선 피항 여부 결정(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 수리 중인 선박 신속히 응급조치(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 접안선박은 항만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거나 항 밖으로 대피(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선박직원)

○ 항내 계류된 소형선박은 계류색 보강 등 결박 강화

○ 선원 비상근무조치 및 선내순찰 강화(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선박직원)

○ 긴급 상황 시 단계별로 조치계획을 확인하고 대피능력 확인(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나. 항만시설

1) 하역시설

○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 24시간 민간방재단 비상근무체제 가동(업체)

○ 각종 하역장비별 피해예방활동 시행(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 크레인 전도방지용 tie-down device 등 안전장치를 점검하여 강풍에 대비(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 재해발생 예상 하역시설·장비 등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 긴급 상황 시 단계별로 조치계획을 확인하고 대피능력 확인(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 민간방재단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긴급사태 발생 시 적시대처(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2) 항만 운영시설

○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 24시간 민간방재단 비상근무체제 가동(업체)

○ 임항창고,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순찰 강화(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업체)

○ 재해발생 예상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에 대비(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3) 부두・방파제 시설

○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상황을 판단(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24시간 민간방재단 비상근무체제 가동(업체)

○ 재해발생 예상지역은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에 대비(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 간단한 복구로 피해확대를 막을 수 있는 시설물은 인근 공사업체로 하여금 우선보강 조치(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 긴급상황 우려 시 신속히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업체)

4) 항만공사 현장

○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 24시간 민간방재단 비상근무체제 가동(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민간방재단 공사현장 순찰 강화 유사시 즉시보고(업체)

○ 시공 중인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은 피복석, TTP 등 보강자재로 태풍 영향권에 들기 전에 임시 보강조치(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태풍주의보가 발표되면 공사장비 및 인원은 안전지대로 대피(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업체)

3. 심각단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중 경보발표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

가. 선 박

1) 항해선박

○ 기상정보를 분석하고 태풍진로 파악(선박직원)

○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항해(선박직원)

○ 항내 피항을 대비하여 인근 항만상황을 파악(선박직원)

○ 조난 발생 시 즉시보고 및 구조요청(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박직원)

○ 피항선박에 항만 입출항 항행정보 제공(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항만별 선박 대피능력을 확인(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2) 정박선박

○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통신망 유지(선박직원)

○ 기관을 가동하여 안전한 곳에 투묘(선박직원)

○ 선원 비상근무조치 및 선내순찰 강화(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선박직원)

○ 선박과의 충돌로 선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대책강구(업체, 선박직원)

○ 선박대피협의회 참석, 정박선박 안전한 곳으로 대피조치(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 접안선박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항 밖으로 대피(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선박직원)

○ 항내 계류된 소형선박은 계류색 보강 등 결박 강화

○ 수리 중인 선박에 대하여는 재해방지대책 강구(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 긴급 상황 시 즉시보고 및 응급조치(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선박직원)

○ 피해선박을 확인하여 응급조치 및 피해상황보고서 작성 재해대책본부에 보고(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선박직원)

나. 항만시설

1) 하역시설

○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 24시간 민간방재단 비상근무체제 가동(업체)

○ 각종 하역장비별 피해예방대책 시행(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 크레인 전도방지용 tie-down device 등 안전장치를 점검하여 강풍에 대비(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 민간방재단 방재활동 유지 및 순찰강화(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 재해발생 예상시설·장비 등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 민간방재단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긴급사태 발생 시 적시대처(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 피해시설을 확인하여 응급조치 및 피해상황보고서 작성 재해대책본부에 보고(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2) 항만 운영시설

○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업체)

○ 민간방재단 방재활동 유지 및 순찰강화(업체)

○ 임항창고,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 고박 및 보강(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 재해발생시 즉시 계통보고 및 응급복구(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3) 부두·방파제 시설

○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상황을 판단(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민간방재단 방재활동 유지 및 순찰강화(업체)

○ 재해발생 예상지역은 순찰을 강화하고 피해여부 확인(여수지방해양

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 재해발생시 즉시 계통보고 및 응급복구(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업체)

4) 항만공사 현장

○ 기상방송을 청취하고 비상연락망 유지(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민간방재단 방재활동 유지 및 순찰강화(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공사 중인 현장은 피복석, TTP 등 보강자재를 활용 신속히 보강조치(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공사용장비 및 인원은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업체)

* 어플리케이션 '해로드' 및 '안전해'를 통한 기상상황 모니터링

11. 비상대응 관련 각종 서식

○ 위기평가보고서

위기유형			
경보내용	위기경보 “○ ○” 발령		
보고번호		기 관 명	
관련근거 (출처)			
통보기관	○ 태풍정보 파악 및 기상상황 전파		
1. 관련상황/정보 2. 분석/판단 3. 조치사항			
작 성 자			

○ 공사현장현황

00월 00일 00시 현재

소속 기관별	공사명	공사기간 및 공정	수방단		비고
			조직인원	활동내용	

○ 하역장비 고박현황

00월 00일 00시 현재

소속 기관별	장비종류	규격	수량	위치	운영사	조치현황

○ 주요조치사항 보고

00월 00일 00시 현재

일시	상황	조치내용

○ 피해상황보고서

00월 00일 00시 현재

피 해 상 황 보 고 서	
송화자 소속 : 직급 : 성명 : 수화자 소속 : 직급 : 성명 : 보고일시 :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	
피해원인	
피해발생일시	
피해발생지역 또는 장소	
피해개요 및 피해액	
응급조치사항	
기타사항	

12. 여수 · 광양항 피박지 현황도

13. 풍수해 재난 위기대응 비상연락체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8000~2
(FAX)205-8890

해양수산부종합상황실
(044)200-5893
(FAX)200-5886

여수지방해양수산청
(061)650-6029
(FAX)654-2353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난총괄	(061)797-4480 (FAX)797-4494
자연재난	(061)797-4480 (FAX)797-4494
비상대책반	(061)797-4495~7 (FAX)797-4599

지방자치단체

전남도청
(061)286-6832, 0901

광양시청 안전총괄과
(061)797-2556, 2266

광양시청 상황실
(061)797-4949

여수시청 안전총괄과
(061)659-3231,3232

여수시청 상황실
(061)659-4949

재난현장

부두운영사

공사현장

필요시

여수해양경찰서

여수·광양	(061)840-2242

병 원

여수	전남병원 (061)640-7575 성심병원 (061)650-8000
광양	성가롤로병원 (061)720-2000 사랑병원 (061)797-7000

필요시

소 방 서

여수	(061)680-0900
광양	(061)798-0900

기타 관계기관

여수	한국전력여수지사 (061)650-2222 해운조합여수지부 (061)640-4020 여수고용노동지청 (061)650-0137 안전보건공단(여수) (061)689-4900
광양	한국전력광양지사 (061)798-4223

14. 비상연락망

□ 여수광양항만공사

해당분야	부서명		연락처	
			전화	FAX
재난 총괄	주간	재난안전실	061-797-4480	061-797-4494
	야간 (공휴일)	당직자	061-797-4300	061-797-4502
풍 수 해	주간	재난안전실	061-797-4480	061-797-4494
	야간 (공휴일)	당직자	061-797-4300	061-797-4502

□ 풍수해(태풍·호우·대설) 대응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구 분	전 화	팩 스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044-200-5893	044-200-5886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상황실	061-650-6178～9	061-654-2353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	061-840-2242 061-840-2000	061-840-2942
해양환경공단	여수지사	061-654-6434	061-654-6430
전남소방본부	상황실	061-286-0900	061-286-0910
광양소방서	상황실	061-798-0900	061-798-0910
여수소방서	상황실	061-680-0900	061-680-091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 운항관리센터	061-662-9713, 9715, 9717, 9718, 9720	061-662-9719
한국선급	여수광양지부	070-8799-7800	070-8799-7819
여수항도선사회	상황실	061-660-1333	061-665-0202

□ 행정안전부

소 속	부 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태풍·호우)	044-205-5245	044-205-8966
	재난정보통신과	044-205-5281~3	044-205-8961
	복구지원과	044-205-5318~9	044-205-8912
	재난구호과	044-205-5386~7	044-205-8913
	재난자원관리과	044-205-5272, 5275	044-205-8908

□ 재난 대응 기관 비상연락망

기관	부서	연락처	
		전화	팩스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가위기관리센터	02-770-4284 02-770-4384~5	02-770-4798 02-770-4887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	044-200-2342	044-200-2367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안팀 야) 당직실	02-2110-1314 02-2110-1590	02-2110-0135 02-2110-0125
기획재정부	비상안전기획관	044-215-2681~5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교육시설과 야)당직실	044-203-6355 044-203-6262 044-203-6118~9	044-203-6791 044-203-6305 044-203-65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상안전기획관	044-202-4384	044-202-6015
국방부	합참지휘통제실 재난관리지원과 재난대책상황실 육군 재난대책상황실 해군 재난대책상황실 공군 재난대책상황실	02-748-0300 02-748-5763 02-748-3181~3 042-550-0400 042-553-0391 042-552-6644	02-796-0369 02-748-5778 02-748-5795 042-551-0666 042-551-0449 042-551-3399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과 비상안전기획관실 야) 당직실	044-203-2918 044-203-2290 044-203-2180	044-860-4852 044-203-3458 044-203-3452
농림축산식품부	비상안전기획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474 044-201-1794~5	044-868-7909 044-868-7253
산업통상자원부	비상안전기획관 종합상황실(주·야)	044-203-5580 044-203-4000~1	 044-203-4790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 야) 당직실	044-202-2652 044-202-2118	044-202-3989 044-202-3985
환경부	비상안전담당관 수도정책과 야) 당직실	044-201-6493~4 044-201-7126 044-201-7440~1	044-201-6496 044-201-7130 044-201-7442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2	02-2100-6459

기관	부서	연락처	
		전화	팩스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6	044-202-8094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철도운행안전과 첨단도로안전과 항공안전정책과 항공정보통신센터(인천) 항공정보실(김포) 당직실	044-201-3626 044-201-4614 044-201-3933 044-201-4247 032-740-2261 02-2660-2145 044-201-4672	044-201-5558 044-201-5672 044-201-5592 044-201-5628 032-740-2269 02-2662-5083 044-201-5700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종합상황실 항만운영과 항만기술안전과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853, 5858 044-200-5895~7 044-200-5773~4 044-200-5955~6 044-200-5616~7	044-200-5869 044-200-5886 044-200-5789 044-200-5929 044-861-9436
중소벤처기업부	비상계획담당관	044-204-7391, 7393	044-204-7399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위기관리센터 교통안전과 고속도로본부순찰대	02-3150-1234 02-3150-1641 02-3150-2252 02-3150-2154,2254	02-3150-3657~8 02-3150-3657~8 02-3150-2850 02-3150-2554
소방청	119구조과 소방상황실	044-205-7621 044-205-6119	044-205-8986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042-481-4821~2	042-481-4932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063-238-1041~4	063-238-1780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산불방지과 당직실	042-481-8844 042-481-4119 042-481-4151	042-481-3223 042-481-4235
기상청	예보정책과 국가태풍센터 국가기상센터	02-2181-0502, 0493 070-7850-6365 02-2181-0672~5	02-847-4419 064-805-0366 02-836-6755
새만금개발청	사업관리총괄과	044-415-1131	044-415-1148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경비과 해양안전과 종합상황실	032-835-2445 032-835-2141 032-835-2148 032-835-2142	032-835-2846 032-835-2941 032-835-2991 032-835-8182
한강홍수통제소	소장 운영지원과 예보통제과 야) 당직실	02)590-9900 02)590-9915 02)590-6105 02)590-9920-1	02-590-9905 02-590-9919 02-590-9949 02-590-9929
한국철도공사	관제운영실 시스템안전처 토목구조물처 재해대책본부	042-615-4800 042-615-4182,3871 042-615-4508,4502 042-615-4804~8	042-472-3079 042-361-8275 042-361-8307 042-361-8307
한국철도시설공단	재난대책본부상황실 안전품질실 당직실	042-607-4001~2 042-607-3352 042-607-3000	042-607-4009 042-607-3309 042-607-4000
한국전력공사	(주)배전운영처 (야)당직실 재난종합상황실	061-345-8831~7 061-345-3203 061-345-8624	061-345-4899 061-345-4198 061-345-8649

기관	부서	연락처	
		전화	팩스
한국수자원공사	기술안전실	042-629-3381	042-629-4829
한국도로공사	재난종합상황실 재난안전처 수도권본부 강원본부 대전충청본부	054-811-1191 054-811-2735 02-2219-6000 033-811-6000 042-722-6000	054-811-1199 054-811-2709 02-2219-6199 033-811-6199 042-722-6199
국립공원공단	안전방재처	033-769-9593	033-769-9609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지원부	043-750-1380	043-750-1924
한국전기안전공사	재해관리부 종합상황실(야)	063-716-2331~4 063-716-2117~9	063-716-9627 063-716-96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부 당직실	052-703-0614~5 052-703-0539	052-703-0314 052-703-0330
한국시설안전공단	재난관리실	031-910-4100	031-910-3689
전국재해구호협회	구호사업팀	02-3272-0123	02-3272-0122

15. 선박대피 협의회 위원 명단

○ 구성인원 : 15명 '22. 4. 현재

구분	소 속	직위	성 명	전화번호	FAX
위원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과장	전용호	650-6050 (010-9221-3413)	654-2076
간사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운영계장	이상훈	650-6055 (010-5647-8058)	654-2076
위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	유장종	840-2352 (010-4651-7015)	840-2852
	여수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경비구조 계장	임창현	840-2141 (010-8987-9159)	840-2941
	여수광양항만공사 (물류전략실)	과 장	양서준	797-4471 (010-2943-7653)	797-4429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난안전실)	팀 장	권규하	797-4482 (010-5097-4303)	797-4494
	여수항도선사회	회 장	김영운	660-1383 (010-6811-0952)	666-0322
	한국선주협회 광양지구협의회	총 무	이재광	791-6541 (010-5353-8852)	791-6544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여수지부	전무이사	이문호	665-1800 (010-3232-1800)	663-2054
	GS칼텍스(주) 원유운영팀	부 장	강병찬	680-2540 (010-4371-3473)	680-2549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재선부 원료공장	파트장	서정환	790-3321 (010-9109-9900)	790-6170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생산기술부 제품출하섹션	과 장	박상득	790-5737 (010-6338-8810)	790-4899
	한국국제터미널	팀 장	김관수	798-1861 (010-2920-6139)	798-1860
	한화케미칼(주)	과 장	송용현	688-1073 (010-2790-1249)	688-1080
	(주)포트엘	생산 본부장	박맹렬	790-7693 (010-3636-8268)	790-5525

* 「지방청 선박대피 협의회 운영표준(안)」에 따라, 태풍중심 N28° 도달(경계단계) 시, 선박대피 협의회 개최

* 여수청은 남부권 기준위도(N34°45″, 여수항 위도)를 적용하여 선박대피 협의회 개최

* 선박대피 협의회 위원장은 여수청 항만물류과 과장, 간사는 여수청 항만물류과 담당계장이 역임하며, 항만공사는 위원으로서 피항 결정사항 민간기관(선사, 운영사, 터미널 등) 수행 여부를 확인

16. 관계기관 및 어업단체 비상연락망

○ 관계기관

소 속	부 서	전화번호	FAX	비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태풍·호우)	044-205-5245	044-205-8966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7~8	044)200-5869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61-650-6011	061)654-2353	
	선원해사안전과	061-650-6047	061)654-2456	
	항만건설과	061-650-6148	061)654-2564	
	항만건설과	061-650-6162	061-654-2211	
광양시	안전총괄과	061)797-2556	061)797-2593	
	철강항만과	061)797-2308	061)797-2587	
여수시	안전총괄과	061)659-3233	061)659-5893	
	해양항만레저과	061)659-3960	061)659-5830	
여수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061)840-2222	061)840-2941	
	광양파출소	061)840-2232	-	
한국도선사협회	여수항도선사회	061-660-1333	061-665-0202	
예선협회	여수지회	061)665-1800	061)663-2054	
해양환경공단	여수 방제팀	061-654-6434	061)654-6430	
한국항만물류협회	여수광양지회	061)797-6550	061)797-6552	
항운노조	여수항운노조	061)662-6921	061)665-8656	
	순천항운노조	061)723-3115	061)723-3105	
	광양항만항운노조	061)792-0777	061)792-2003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여수출입국사무소	061)689-5500	061)684-6974	
국립검역소	여수검역소	061)665-2367~9	061)665-2370	
	광양지소	061)792-0187	061)791-9483	

○ 자회사

회사명	전화번호	FAX	비고
㈜여수광양항만관리	061-797-6700	061-797-6709	

○ 부두운영사

부두명	운영(이용)사	담당자(부서)	연락처		비 고
			전 화	FAX	
CTS반출부두 원료부두 RO-RO부두 제품부두 고철 후판RO-RO부두	포스코(주)	박훈	790-6164	790-5720	
하포일반부두	세방	고형연	798-7422	798-7410	
컨테이너 부두	GWCT	김영경	061-797-0267	797-0289	
	KIT	박병준	798-1791	798-1785	
중흥부두	여천NCC 등 9개사	청경실	685-5250	685-5260	
낙포부두	남해화학 등 4개사	청경실	685-9446	685-5257	
석유화학 부두	YNCC 등 7개사	여수페트로	691-2961(본사) 684-5257(부두)	691-2964(본사) 684-5267(부두)	
사포1부두	SYTT(주)	오행문	686-3611	686-3210	
사포2부두	LG화학(주)	김민호	680-6413	680-6504	
LPG부두	(주)E1	정민호	690-9311	686-3227	
석탄부두	호남화력발전처	석재민	070-5000-5163	070-5000-5419	

○ 해운대리점

대리점	직 위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합자)여진해운사	대표자	이상국	662-9610	662-9614	
마린스트(주)	대표자	박종인	662-8551	664-1512	
(주)반도해운	대표자	이희재	651-8902	652-6336	
광양선박(주)	대표자	이경희	798-7754	798-7788	
진양선박(주)	대표자	임채현	665-1094	664-0662	
서보해운(주)	대표자	한상용	686-0171	692-2306	
노아선박(주)	대표자	김봉수	665-4402	665-4404	
(주)신성해운	대표자	임수환	662-4452	662-4453	
(주)창세해운	대표자	김학식	791-4095	791-4096	
해왕해운(주)	대표자	김동성	792-4476	792-4478	
남해해상(주)	대표자	김성현	643-4201	643-4205	
여수선박(주)	대표자	장항수	666-0882	665-0881	
연성해운(주)	대표자	박창수	793-2025	793-2026	
엘앤씨마리타임(주)	대표자	임채현	655-1551	655-1221	
서우해운(주)	대표자	한중환	660-8820	663-8810	
(주)루맥스해운	대표자	이금우	794-8765	794-8768	
태원해운(주)	대표자	최병혁	685-1307	685-1309	
은파해운(주)	대표자	이창배	794-6776	794-6775	
상지해운(주)	대표자	김태영	650-2713	650-2730	
광양에이젠시(주)	대표자	박기윤	795-3626	795-3629	
효동항업(주)	대표자	우대명	665-7968	666-1494	
허브에이젠시㈜	대표자	하승민	654-9661	654-9660	
선양해운㈜	대표자	박병선	643-8824	643-8820	

□ 하역업체 및 예선업체

대리점	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GWCT(주)	797-0286	797-0229	
효동항업(주)	665-7968	666-1494	
세방(주)	798-7300	798-7410	
마린글로리	686-5901	686-5900	
동방에스엔에스(주)	663-0020~0021	663-0010	
여수페트로(주)	691-2961	691-2964	
(주)한진	792-5403	791-2172	
㈜한국해운	686-6609	692-0081	
광양선박(주)	798-7700	798-7788	
금호티앤엘(주)	808-3321	808-3329	
남해화학(주)	688-5628	688-5570	
SYTT(주)	686-3611	685-0504	
YNCC(주)	688-6114/6201	685-6190	
㈜E1	686-3222	686-3227	
휴켐스(주)	680-4606	680-4620	
광운선박	665-3333~5	665-3336	
광진선박	662-2261~3	662-2260	
남해선박	655-3301~3	655-3304	
대동해운	793-1006	793-1107	
마성선박	685-5544	685-8822	
마중예선	795-9937	795-9938	
서남해운	665-7464~5	664-6065	
서호선박	665-0583	665-0589	
신 광	654-9691	654-9693	
오양선박	666-0100	662-4003	
우정선박	665-5633	666-5633	
일우선박	662-1821	666-1460	
해도선박	665-2774~5	665-2776	

17. 기상정보 수집관련 홈페이지

기 관 명	주 소	비 고
행정안전부	http://www.mpss.go.kr/	
기상청	http://www.kma.go.kr/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http://www.kma.go.kr(대표홈페이지) http://afso.kma.go.kr(방재기상정보시스템)	
국가태풍센터	http://typ.kma.go.kr/	
태풍연구센터	http://www.typhoon.or.kr/	
일본기상정보	http://www.jma.go.jp/jma/index.html http://www.imocwx.com/	
미국기상정보	http://www.weather.gov http://www.usno.navy.mil/JTWC	
지역특별기상센터 [RSMC-Tokyo]	http://www.jma.go.jp/jma/jma-eng/jma-center/rsmc-hp-pub-eg/RSMC_HP.htm	

18. 중앙수습지원단의 표준편제와 임무

□ 목　　적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대규모 재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함

- 중앙대책본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 단체의 재난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

□ 수습지원단 표준편제

□ 임　　무

○ 비상대책본부장(해양수산부), 비상대책반장(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지역대책본부장 등에 대하여 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 · 권고 및 조언

○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현장 상황 및 재난발생 원인 분석 보고

○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 · 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에 대한 보고 등

※ 수습지원단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은 별도 관리

19. PORT-MIS 매뉴얼(재박선박현황 파악)

1. 통합 Port-MIS 로그인
   - ID : jeayah4336, PW : p@ss0000

2. 나의메뉴→ “재박선박현황” 선택

3. 청코드별(620, 621, 622) 재박선박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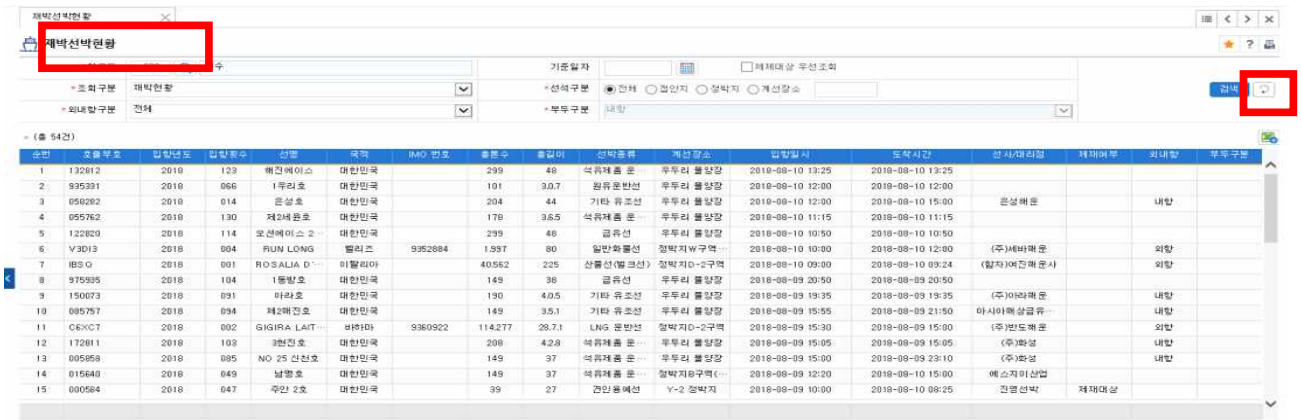

가. 코드별 엑셀 저장

나. 해수청 양식에 따라 내용 정리

4. 자료검증

가. 앱(find ship)을 통한 선박현재 위치 확인

나. 기타 사항은 선주 또는 대리점을 통한 확인

5. 유의사항

가.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관제입력요원의 선박이동 상태를 즉시 입력하여 포트미스에 나타나는 재박선박 현황 실시간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

나. 재박선박 현황 등 작성자료를 공유하고 비상대책반의 총괄통제부에서 최종 검토 후 자료제출(제출자료의 검증)

20. 지방청 선박대피협의회 운영표준(안)

□ 운영표준(안) 개요

구분	예방단계	대비단계(1~3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
		1단계 (N22°, 대만 남단)	2단계 (N25°, 대만 북단)	3-1단계 (N28°, 오키나와 북단)	3-2단계 (N30°)	태풍 내습 시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	재난발생 시 대처단계	
판단 기준	-	▪ 태풍 빈발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	① 태풍주의보 발효 ②태풍중심 N25° 도달 시 (태풍 경계구역)	① 태풍경보 발효(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농후) ② 태풍중심 N28° 도달 시 (태풍 비상구역) ③ 태풍중심 기준위도 도달 48시간 전	① 태풍경보 발효(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 확실) ② 태풍중심 N30° 도달 시 (태풍 비상구역) ③ 태풍중심 기준위도 도달 24시간 전 ④ 태풍강풍반경 가장자리의 기준위도 도달 12시간 전		
주요 임무	평시		▪ 재박선박 상황관리 - 항계내 정박지 정박현황 점검 - 장기계류, 감수보존 선박 계류현황 현장점검	▪ 선박대피협의회 개최 - 피항 여부 결정 - 선박대피 완료시점 결정	▪ 선박대피 시행 ▪ 선박대피 완료보고	▪ 선박 사고 및 피해상황 파악, 피해복구계획 수립·시행	
주요 활동	-	▪ 재박선박 - 선박관련 기관과 비상연락망 유지 (지방청, 공사, 업체 등)	▪ 재박선박 - 선원 비상근무조치 및 선내 순찰 강화 (지방청, 공사, 업체, 선박직원) - 긴급상황 발생시 단계별로 조치계획을 확인하고 대피능력 확인(지방청, 공사)	▪ 재박선박(선박대피협의회 개최, 항계내 재박선박 피항여부 결정: 지방청, 공사, 업체 등) ① 접안선박은 정박지로 이동하거나 항계 밖으로 대피 ② 항계내 정박된 선박은 선종 및 선박톤수별로 지정된 피항지로 대피 ③ 항계내 계류된 소형선박은 계류색 보강 등 결박 강화	▪ 재박선박(정박선박 피항완료 점검: 지방청, 공사, 업체 등) ① 접안선박은 안전한 정박지로 이동 및 항계 밖으로 대피 후 피항완료 보고 ② 항계내 정박선박 피항지 대피 확인 ③ 항계내 계류된 소형선박은 계류색 결박 등 최종 점검		

(1) 협의회 개최시기(남부권, 중부권)

구분	①태풍위치 (공간적 요소)	②태풍이동속도 (시간적 요소)	③태풍강도 (영향범위)	비고
표준안	태풍중심 북위 28° 도달	태풍중심 기준위도 도달 48시간 전	-	▪ ①,② 중 태풍중심 위도가 낮은 경우를 적용 ▪ 태풍중심이 E120°~135° 내 위치할 경우 개최 (실무매뉴얼: N30° & E132°-비상구역, N28° & E135°-경계구역) ※ 한국기상청 자료사용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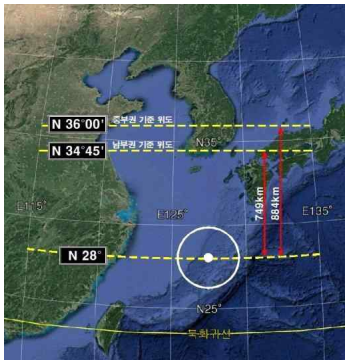 <북위 2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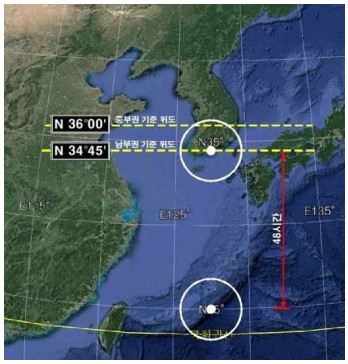 <태풍중심 상륙48시간전-남부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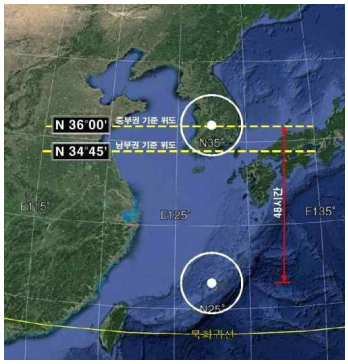 <태풍중심 상륙48시간전-중부권>

※ 권역별 기준위도 및 구분

권역별 기준위도	권역구분(남부권, 중부권)
 	○ 기준위도 - 기준위도: 태풍중심 및 강풍반경 도달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판단기준 - 기준위도 적용: 선박대피협의회 개최, 선박대피 여부, 선박대피 완료시점 결정 ○ 남부권 - 기준위도: N34°45"(여수항 위도) - 적용대상: 포항청, 울산청, 부산청, 마산청, 여수청, 목포청, 군산청(7개 지방청) ○ 중부권 - 기준위도: N36°00"(군산항 위도) - 적용대상: 대산청, 평택청, 인천청, 동해청(4개 지방청) ※ 남부권과 중부권의 기준의 차이 - 태풍 도달시간이 다르며, 실제 선박대피 시기가 중부가 남부보다 늦은 것을 고려 - 동일한 기준값을 적용하여 일관성 있는 선박대피가 가능하도록 유도 ※ 제주도는 서귀포항 위도를 기준으로 사용함

(2) 선박대피 여부(남부권, 중부권)

구분	태풍위치 및 강도 (공간적 요소 및 영향범위)	비고
표준안	태풍중심이 기준위도 도달 시 강풍반경(15m/s 이상) 영향범위를 벗어난 경우 선박대피 미시행	※ 한국기상청 자료사용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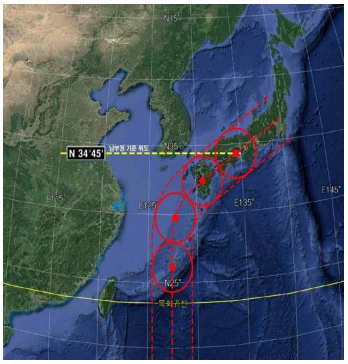 <남부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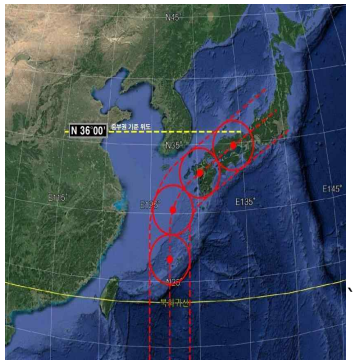 <중부권>	

(3) 선박대피 완료시기(남부권, 중부권)

구분	선박대피 완료시기 결정			비고
	①태풍위치 (공간적 요소)	②태풍이동속도 (시간적 요소)	③태풍강도 (영향범위)	
표준안	태풍중심 북위 30° 도달	태풍중심 기준위도 도달 24시간 전	강풍반경(15m/s 이상) 가장자리의 기준위도 도달 12시간 전	▪ ①,②,③ 중 태풍중심 위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적용 ※ 한국기상청 자료사용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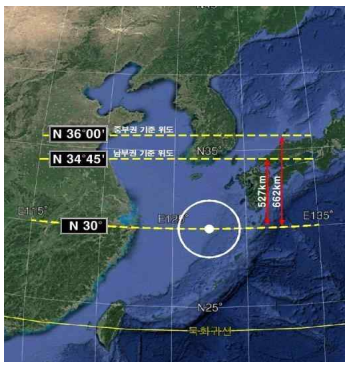 <북위 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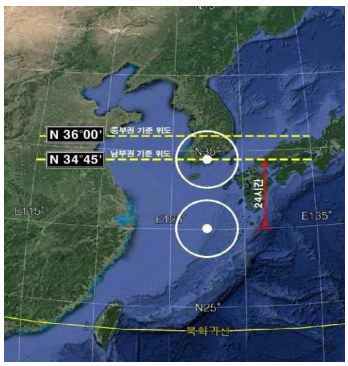 <태풍중심 상륙24시간전-남부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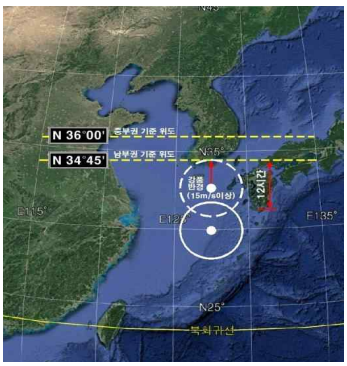 <강풍반경 영향권 12시간 전-남부권>			

(4) 협의회 주체, 개최방식 및 구성원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주요 내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3">표준안</td><td colspan="2">▪ 협의회 주체, 개최방식, 구성원
- 위원장: 지방청 항만물류과 과장
- 간사: 지방청 항만물류과 담당계장
- 위원: 유관기관, 민간기관
▿ 유관기관 위원: 지방청, 항만공사, 기상청, 해경 VTS 담당자
▿ 민간기관 위원: 도선사회, 예선협회, 선주협회, 대리점협회, 민간업체 등
▪ 태풍정보에 대한 가변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회의 선택적으로 개최가능</td><td rowspan="3">▪ 구성원별 역할
- 위원장: 의사결정, 선박이동명령(지방청장)
- 간사: 회의진행
- 기상청: 태풍예보설명(선택적 참여)
- 해경VTS: 항계내·외 피항선박 모니터링
- 민간기관: 피항 결정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항만공사: 피항 결정사항 민간기관 수행 여부 확인(선사, 운영사, 터미널 등)
▪ 임기
- 필수위원: 당연직(직무)
- 전문위원: 2년
▪ 규모
- 구성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적정규모로 제한할 필요 있음</td></tr>
<tr><td>본회의</td><td>추가회의(필요시)</td></tr>
<tr><td>- 오프라인 방식(1시간 30분 내외)
- 피항여부 판단
- 선종별 피항완료 시점 결정</td><td>- 온라인 방식(단체채팅방 등)
- 피항여부 판단 조정
- 선종별 피항완료 시점 결정 조정</td></tr>
</table>

(5) 선박대피 조치사항 전달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표준안	▪ 기본사항: Fax, 문자, 공문, 유선전화 ▪ 추가사항: VHF(공용채널 일괄방송 및 필요 시 개별선박 호출), 단체채팅방 등	▪ 단체채팅방: 태풍예보의 변화에 따른 실시간 정보교류로 활용

(6) 선박대피 대상 및 피항 우선순위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표준안	▪ 선박대피 대상은 항계내 재박선박(접안, 정박, 계류)이며 Port-MIS에서 확인 ▪ 우선순위에 따른 선박대피 시기 차등 결정 - 1순위 : 위험물 적재선(유조선, LNG 등), 관공선 등 - 2순위 : 여객선, 유람선, 소형화물선, 부선, 예선 등 - 3순위 : 대형 컨테이너선, 대형 화물선 등 ※ 장기체류선박(감수보존 등 장기계류) 파악 후 필요시 사전 안전조치 및 VTS 통보	▪ 제시된 우선순위는 권고사항이며, 항만별 상황을 고려하여 세분화 또는 단순화하여 적용 가능함

(7) 피항지 수용선박 기준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표준안	▪ 항계내 및 항계외 피항지는 선종 및 톤수별로 사전에 지정하여 관리해야 함 - 항계내·외 정박지 투묘, 항계내 피항지 계류 및 접안 ※ 항만별 지정톤수 참고사항(현재 2019.06.18)				▪ 항만별로 피항 여건이 상이하므로 표준(안)을 기본으로 상황에 맞도록 조정적용 ※ 피항이 어려운 시운전선의 경우는 관할 지방청 및 항만공사와 협의를 통해 항계내 접안 및 계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 유어선의 무역항 내 피항은 지자체(수협 포함)와 사전협의를 통해 지정된 피항지를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무역항의 원활한 운영 및 풍수해 대응을 위해 피항 불허가능 (지자체 및 수협 담당자의 협의회 참석은 위원장 권한)
	항계내 피항지	▿ 부산항: 1천톤 이하 (5개소) ▿ 인천항: 7천톤 미만 (25개소) ▿ 여수항/광양항: 7천톤 이하(3개소) ▿ 울산항: 1천톤 미만 (1개소) ▿ 목포항: 1만톤 미만 (1개소) ▿ 군산항: 1만톤 미만 (접안 허용)	항계외 피항지	▿ 인천항: 7천톤 이상 (3개소) ▿ 여수항/광양항: 7천톤 이상(1개소) ▿ 평택·당진항: 1만톤 미만(1개소)	

(8) 선박대피 완료시점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표준안	▪ 선박대피 완료시점은 대피행위가 종결된 상황 - 항계내: 피항 정박지 투묘완료, 피항항만 계류 및 접안완료 - 항계외: 피항 정박지 투묘완료 및 항계 통과시점(재입항선박)	※ 대피행위 종결에 근거하여 항만별 이안시점과 항계통과시점을 정할 수 있음

(9) 선박대피 완료보고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표준안	▪ 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대피선박 현황파악 후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 현황파악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 해경VTS(해상교통관제센터): 대피선박 현황파악 협조(무역항 수상구역 등 정박지 선박 현황파악) - 항만공사: 대피선박 현황파악 협조(재박선박 현황파악)	※ Port-MIS 정보입력 - PA有: 관제실 파견된 항만공사 직원입력 - PA無: 관제사 직접입력

(10) 항만운영재개(Port-open)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표준안	▪ 해당 지역 태풍특보(주의보, 경보) 해제시 (예시, 태풍특보 -> 풍랑특보, 평시 항만운영 기준 풍속 고려)	※ 기상청에서 태풍특보 발표시 변경예보가 함께 공시되므로 사전에 부두운영 준비 가능

21. 재난현장 대피시 안전취약 계층 특성별 대피 고려사항

□ 주관부서 :비상대책반 총괄통제부, 비상대책반 지원부
□ 지원부서 : 비상대책반 운영대책부, 비상대책반 복구대책부
□ 협업기관 : 여수·광양경찰서, 여수·광양시 등 지자체

1. 안전취약계층 유형별 특징

○ 시각장애인

- 자신의 힘만으로 피해 상황을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시각정보에 의한 긴급사태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숙한 지역 내에 있더라도,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도움 없이는 평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대피소 등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이동 등의 행동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혼자서는 신속하게 행동할 수 없다).
-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청각장애 등 다른 장애도 있는 중복장애인이 있다.

○ 청각장애인

- 음성정보를 전달받기 어렵거나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시각정보가 아닌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고, 음성 대피유도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긴급시에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어렵다.
- 겉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지체장애 등 다른 장애도 있는 중복장애인이 있다.

○ 시청각중복장애인

- 대피소 등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이동 등이 어렵다(단독 대피가 어렵다).

- 장애의 상태(전맹전농, 약시전농, 전맹난청, 약시난청)별로 정보 수집 방법이 다르며, 상황판단이 어렵다.

○ 언어장애인(실어증 등)

- 긴급시에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어렵다.
- 겉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지체장애인

-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 특히, 하지장애인 등은 자력으로 대피하는 것이 어렵다.

○ 내부장애인

- 겉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자력 보행이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심장 · 신장 · 호흡기 등 기능장애로 인해 인공투석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항상 의약품을 소지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 항상 의료기기(인공호흡기, 산소봄베, 가래흡입기 등)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 지적장애인

-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혼자서는 이해 또는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긴급사태 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환경 변화에 크게 동요하는 경우가 있다.

○ 정신장애인

-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신적 동요가 격렬해지는 경우가 있다.
-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 평소에 복용하고 있는 약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

○ 고차뇌기능장애인

- 동시에 여러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둘 이상의 지시를 받으면 혼란하는 경우나, 음성으로 받은 지시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 방금 전의 기억 또는 목적지나 장소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 긴급시에도, 궁금한 것이나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위험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가 있다.
- 혼자서는 이해 또는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환경 변화에 따른 동요를 보이고,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경우나, 매번 지시받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는 경우나, 직접 지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겉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답변이 원활하므로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할 수 있다”, “알았다”라고 자신있게 답변하지만 실제로는 행동할 수 없다.
- 갑자기 흥분하거나 화를 내거나 참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
- 자신의 피로를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발달장애인

- 환경이 평소와 다르게 변하는 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서투르므로, 불안한 상태에서 침착성을 잃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어 패닉을 일으키는 경우 등이 있다.
- 의사소통이 서투르므로, 정보를 한꺼번에 받으면 이해하기 힘들어 하

는 경우나 자신의 어려움을 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 상상하는 것이 서투르므로, 대피의 필요성이나 위험한 장소 또는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청각 · 촉각 등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하여 특정 소리를 싫어하여 귀를 막고 두려워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밖에, 편식하거나 특성 옷만 입거나 몸에 닿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감각이 둔감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처나 상태 불량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답변이 원활하므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각의 질병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 치매노인

- 시간 · 장소 · 사람을 파악하는 데 혼란하는 경우가 있다.
- 식사했다는 사실을 잊고 다시 음식을 요구하는 등 최근에 한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 말을 하지 못하거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주변에 있는 물건의 용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렵다.
- 옷을 잘 갈아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상기 증상은 환경 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쉽다)

○ 임산부

-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으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2. 안전취약계층의 특성별 배려 사항

○ 시각장애인

- 시각에 의한 긴급사태 등의 인지가 불가능하거나 한순간에 인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음성에 의한 정보전달 및 상황설명이 필요하다.
- 일상생활권 밖에서는 간병인이 없으면 대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피유도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
- 중복장애인인 경우, 장애상황에 따른 추가 지원 요청이 있을 수 있다.

○ 청각장애인

- 음성에 의한 대피명령 및 대피유도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수화 · 요약필기 · 문자 · 그림 등을 활용한 정보전달 및 상황설명이 필요하다.

○ 시청각중복장애인

- 시각 또는 음성에 의한 긴급사태 등의 인지가 어려우므로, 점화(點話, finger braille), 촉수화(触手話, tactile signing), 지문자(指文字, fingerspelling), 손바닥에 글씨 쓰기(print-on-palm), 확대문자(large print) 등 개인별 장애상황을 고려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한 정보전달 · 상황설명이 필요하다.
- 일상생활권 밖에서는 간병인이 없으면 대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피유도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
- 혼자 있으면 모든 정보가 차단되는 것을 고려한다.

○ 언어장애인(실어증 등)

- 자신이 처한 상황 등을 말로 전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수화·필담 등을 활용한 상황파악이 필요하다.

○ 지체장애인

- 자력보행이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이 경우, 유지관리도구(공기주입, 펑크수리, 공구)도 필요하다.

○ 내부장애인

- 자력보행이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휠체어 등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휴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료기관 등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 인공배설기구 장착자인 경우에는 인공배설기구용 기구가 필요하다.

○ 지적장애인

- 긴급사태 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환경 변화에 의한 정신적인 동요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짧은 단어나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전달하여 사태의 이해를 도모하는 동시에,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을 진정시키면서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신장애인

- 재난 발생 시 정신적 동요가 격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분을 진

정시키는 배려가 필요하다.

-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평소부터 스스로 약의 종류를 파악하도록 지도하며, 의료기관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 고차뇌기능장애인

- 기억장애 등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전에 본인의 증상을 파악하여 행동요령이 기재된 메모를 전달하고,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발생할 일 등을 여러 번 반복하여 설명하는 등 본인의 증상에 맞는 유도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긴급사태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짧은 단어나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전달하여 사태의 이해를 도모하고,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재난 발생 시에는 정신적 동요가 격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분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 음식 · 물자 배급을 기다리지 못하고 화내거나 소란피우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족 대신에 줄을 서주거나 별도배급 등의 대응을 통해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발달장애인

- 앞으로 일어날 일이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일정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추상적인 단어는 피하고,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전달한다. 귀로 들은 것보다 눈으로 본 것을 잘

이해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본인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실물 · 사진 · 그림이나 단어 등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하면 안 되는 것, 가면 안 되는 장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거나 패닉 등을 일으킨 때에는, 기분이 진정되도록 조용한 장소를 확보하거나 개인실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텐트나 파티션 · 골판지로 주위의 공간과 구별하는 등의 고안이 필요하다. 청각과민인 경우에는 헤드폰 또는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마음에 드는 것을 준비하는 등을 통해 진정된 상태로 지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부상 또는 상태가 좋지 않다는 민원이 없어도, 몸 상태를 대강 확인하거나 식사 · 수면 중인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 지체장애가 있거나 외견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각의 병태나 증상에 따른 대피유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인공호흡기나 인공투석 등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만성질환자가 많고, 의약품을 확보하는 데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치매노인

- 긴급사태 등의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환경 변화에 의한 정신적인 동요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을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안전취약계층의 특성별 정보전달 시의 주요 배려 사항

○ 시각장애인

- 시 · 군 · 구의 홍보, 그 밖에 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온 때에는, 반드시 알린다.
- 알기 쉬운 어조로 전달한다.
- 음성 정보로 여러 번 반복한다.
- 점자나 확대문자 외에, 점화나 촉수화, 지문자, 손바닥에 글씨 쓰기 등 둘 이상의 방법을 조합한 의사소통을 취하여 정보제공에 노력한다.
- 시청각중복장애인통역사 · 보조인을 대피소 등에 파견한다.
- 둘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장애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 청각장애인

- 정면에서 입을 크게 움직이면서 말한다.
- 문자나 그림을 조합한 필담으로 정보를 전달한다(항상 필기구를 준비해둔다).
- 시청각중복장애인통역사 · 보조인, 수화통역자 및 요약필기자를 대피소 등에 파견한다.
- 게시판 · 팩스 및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대피소에 문자다중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 시청각중복장애인

- 생활환경이나 장애상황, 장애발생 시기 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다.

- 의사소통 방법은 점자(점화), 수화(촉수화), 지문자, 필담, 손바닥에 글씨 쓰기, 음성 등이며 둘 이상의 조합으로 의사소통한다.
- 시 · 군 · 구의 홍보, 그 밖에 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온 때에는, 반드시 알린다.
- 점화나 촉수화, 지문자, 손바닥에 글씨 쓰기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전달한다.
- 시청각중복장애인통역사 · 보조인을 대피소 등에 파견한다.

○ 지적장애인

- 구체적이고 짧은 단어로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한다.
- 그림 · 지도 · 문자 등을 조합하여,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를 배려한다.

○ 고차뇌기능장애인

- 행동요령, 중요한 설명 · 예정은 메모로 전달한다.
- 그림 · 지도 · 문자 등을 조합하여,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말을 할 수 없어 곤란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을 추측하여 선택지를 주거나 그림 · 지도를 활용하는 등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를 배려하여, 초조해하는 때에는 조용한 장소로 유도하여 침착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묻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메모를 붙여놓거나, 반복하여 설명한다.

○ 발달장애인

- 추상적인 단어는 피하고,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단어로 확실하게 전달한다. 발달장애인의 이해도에 따라 실물이나 사진, 그림, 단어 등 시각적인 형태로 전달한다.
- 미리 알릴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한 한 사전에 전달한다.
- 큰 목소리를 무서워하는 등의 경우가 있으므로,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건다.
- 한꺼번에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말을 걸어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 하면 안 되는 것, 가면 안 되는 장소, 만지면 안 되는 것 등이 있는 경우, 사전에 그것을 확실히 전달한다. 「×」 등의 표지나 마크를 사용하여,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있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태를 파악하여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치매노인

- 구체적이고 짧은 단어로 천천히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별 대피유도 시 주요 고려 사항

○ 시각장애인

- 안부확인과 대피소로의 대피유도(보행지원)를 누가 할 지를 사전에 결정해둔다.
-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확보한다.

- 일상생활권 내에서도 재난 시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인지 지도(認知地圖)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배려한다.

○ 청각장애인

- 수화 또는 문자정보로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소 등으로 유도한다 (필기구 등을 준비한다)

○ 시청각중복장애인

- 안부확인과 대피소로의 대피유도(보행지원)를 누가 어떻게 할지 사전에 본인에게 전달하여 결정해둔다.
- 점화나 촉수화, 지문자, 손바닥에 글씨 쓰기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소 등으로 유도한다.
- 약간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지원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외톨이가 되었다는 불안을 느낄 수 있으므로,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등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 언어장애자(실어증 등)

- 수화 또는 문자정보로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소 등으로 유도한다 (필기구 등을 준비한다).

○ 지체장애인

- 자력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휠체어나 환자운반카 등의 이동용구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용구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들것 · 리어카를 사용하거나 업어서 대피시킨다.

○ 내부장애인

- 평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확보 및 의약품을 휴대한다.
- 자력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휠체어나 환자운반카 등의 이동

용구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용구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들것 · 리어카를 사용하거나 업어서 대피시킨다.

○ 지적장애인

- 혼자 있을 때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는, 긴급하게 보호한다.
- 피해 상황이나 대피소 등의 위치를 짧은 단어나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유도한다.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이 진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신장애인

- 피해 상황이나 대피소 등의 위치를 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무리가 없는 방식으로 유도한다.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내어 기분이 진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고차뇌기능장애인

- 피해상황이나 대피소 등의 위치, 행동요령이나 중요한 설명 · 예정이 기재된 메모를 전달하고, 그림 · 지도 · 문자 등을 조합하여 유도한다.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이 진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묻더라도, 반복하여 설명한다.
- 길이나 건물 안에서 헤매는 경우가 있으므로, 목적지까지 동반하는 등 필요한 유도를 행한다.
- 부상을 입었으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의 주된 증상

뿐만 아니라, 신체상황 등 주변에서 청취하는 등 잘 확인한다.

○ 발달장애인

- 사전에 대피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행선지, 이동 소요시간, 동행하는 사람 등에 대해 설명한다.
- 앞으로 일어날 일(할 일, 갈 곳 등)이나 행동요령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말로 확실하게 전달한다.
- 한꺼번에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대화한다.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 휠체어나 환자운반카 등의 이동용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확보 및 의약품을 휴대하도록 철저히 주지시킨다.

○ 치매노인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이 진정되도록 유의하며 지원한다.

○ 임산부

- 행동 능력은 떨어지나,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다.
- 대피 중의 생활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피유도가 필요하다.
- **(대피소에서의 유의점)**
  - · 의료보험 서비스의 제공이나 심리지원 대책 등이 필요하다.
  - · 충분한 영양(영양식품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거실의 온도를 조정(신체를 차갑게 하지 않도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 부서

여 수 광 양 항 만 공 사			
연락처	재난안전실	전 화	061-797-4480
		팩 스	061-797-4494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